

研究報告
1988. 12 177

沿岸漁場의 利用·管理에 관한 基礎研究

朴 星 快(首席研究員)

玉 永 秀(研 究 員)

李 希 燦(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연구보고 177

연안어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요 약

오늘날 연안어장은 제도와 관행의 마찰과 어장 이용·관리의 불균형 속에서 자원고갈, 어장황폐, 어장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바탕을 둔 어장이용·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제와 관행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어장 이용·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안어장이란 다수 영세어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배타·독점적 이용의 필요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장을 말한다. 이는 곧 어업형태별로 볼 때 어업권어업의 조업수계를 일컫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수의 地先어민이 과거부터 자기의 전·답처럼 일상 이용하여 왔고, 공동점유·공동이용·공동관리해 온 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권어업이란 면허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는 어업으로서 養殖, 定置, 제 1·2·3종 공동어업 등이 있다. 이 중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경영자 가구의 약 41%가 참여하는 연안어업의 대표적인 어업형태이다. 또한 공동어업은 지선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의 관리형 어업으로서 특이한 제도와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因子분석 결과에 의해 연안어촌을 어장이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크게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해조류양식어업발달도, 2) 패류 및 연근해 어선어업발달도, 3) 포패채조형 공동어업발달도, 4) 연근해어선어업발달도, 5) 소형어선어업발달도. 이들 특성을 종합하여 그 반영도로써 지역을

구분하면 8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 서남해역에 집중 분포된 해조류 양식발달형, 2) 서해 및 서남해역에 넓게 분포된 어선어업미발달형, 3) 제주중심의 제1종 공동어업의존형, 4), 5) 동남해역중심의 패류 및 연근 해어선어업발달형, 6) 동해역 일부의 정치망중심형 어선어업발달형, 7) 동남해역 일부 및 동해역 중심의 연근해어선어업발달형 8) 서남해역을 제외한 비교적 고른 분포의 어선어업발달형. 유형에 따른 지역구분을 공간분포상에 나타내면 각 유형의 분포에 해역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안어장의 이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제는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어업법에 기원을 둔다. 그 후 1953년의 수산업법 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제는 변화된 어촌사회구조, 어업생산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어업계충간, 어업간, 지역간의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주로 수산업법과 관행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를 어장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보면, 법률상擬制로서 경제권 단위로 정비된 어촌계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어촌공동체간의 불일치, 어촌계간, 구성원간, 또는 개인어업권자와 어촌계(또는 어촌공동체) 간에 있어서 어장이용의 마찰 및 무질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대단위화된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간의 업무상 중복에 따른 조직의 약화, 어업조정기능의 부재화 등도 어업분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연안어장에서 행해지는 어업활동은 동일 어업자원에 대하여 이용경합도가 높고 어업그룹간, 그룹내 구성원간의 협동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이른바 “비협동적 내쉬(Nash)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내쉬어업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1) 개별 어가의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상호관련성으로 인해 한 어가의 어업강도는 타어가의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2) 협동조정기능의 취약으로 인해 그룹간, 그룹내 구성원간의 어장분쟁의 소지가 많다. 3) 자원이용의 편의성을 과생시킴으로써 어장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어장의 이용·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장의 총유와 경영의 개별화를 생산구조의 특징으로 하는 해조류양식어업 지역을 사례 분석하였다. 결과

에 따르면, 공동어장의 이용·관리 주체는 민법상 권리능력없이 관행에 의한 입호제도에 근거하는 어촌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어촌계는 아직도 어촌공동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업권 향유·관리기능이나 어장관리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총유어장(공동양식어장)의 일반적 속성인 어장지분의 定期移替制, 사적 처분권의 불인정 등에도 불구하고 사례조사에 의하면 持分의 영구지화, 매매 및 임대현상 등 재산권화 경향이 상당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어업적 성격의 강도 및 어가의 경제적 유인 등과 지분어장의 사점화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상생산물의 가격변동 및 이에 따른 어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의 변화 여하에 따라 공동체적 경영양식의 변질가능성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오늘날 연안어장의 이용·관리의 문제점은 실정법과 관행 간의 마찰로부터 비롯된 것들로서 구체적으로 어촌계와 구성 어촌공동체간의 불일치, 구성원간, 어촌계(어촌공동체)간, 또는 개인어업권자와 어촌계(어촌공동체)간에 있어서 조정기능의 부재화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 복합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총유어장에서 행해지는 어업권어업은 다수 지선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일종의 관리형 어업임을 고려할 때, 어장의 이용은 다수 어민에 대해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촌어민에 의하여 문전옥답으로써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총유어장에 대한 자원조성 및 관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촌계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어촌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촌계기능의 강화는 어촌계가 법률상 擬制로서의 총유어장의 이용·관리주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간의 마찰뿐만 아니라 어촌계(어촌공동체)간 어장분쟁의 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빈

면

머리말

오랜 歷史 속에서 3面의 沿岸漁場은 漁村地域 漁民들의 門前玉奋斗로 서 共生의 터전이 되어 왔다. 1950 年代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漁場利用은 정착된 制度的 틀을 가지지 못한 채 慣行的 漁場支配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50 年代初 體系的 漁場利用制度가 導入되면서 慣行的 漁場利用制度는 法制的 利用制度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漁場利用制度의 變化 속에서 1960 年代初 海藻類養殖을 시발로 漁場利用價值는 크게 증대되었고, 또한 財產權的 性格이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沿岸漁場의 效率的 利用開發을 추구하고자 추진된 1970 年代初와 1980 年代初의 9次 및 10次 水產業法 改正是 實定法과 漁業慣行사이에 심한 摩擦을 야기시킴으로써 오늘날 沿岸漁場이 직면하고 있는 利用과 管理의 不均衡問題를 深化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장차 合理的 沿岸漁場 利用管理와 漁業所得基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現行制度와 慣行의 摩擦要因 파악과 漁場利用의 정확한 實態分析이 긴요한 課題라 하겠다.

本 研究는 이러한 觀點에서 法과 現實 사이의 乖離要因을 分析하고 事例地域의 漁場利用·管理實態를 分析함으로써 政策的 含意를 도출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本 研究의 結果가 制度와 現實을 效果的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政策改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 研究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協調해 주신 長興郡水協의 金昇專務, 莊島郡廳 水產課, 水產廳 沿近海課에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1988.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2章 沿岸漁場의 利用實態	
1 . 沿岸漁場의 概念 및 範圍	3
2 . 沿岸漁業의 生產構造	5
3 . 漁業權 및 漁場利用實態	12
第3章 沿岸漁村의 漁場利用의 特性과 類型	
1 . 沿岸漁村의 漁場分布와 構成	23
2 . 沿岸漁村의 特性分析	30
3 . 沿岸漁村의 類型區分	40
第4章 沿岸漁場利用에 있어서 水產業法과 慣行의 摩擦	
1 . 沿岸漁場利用에 대한 制度變遷	46
2 . 水產制度와 慣行의 摩擦	55
3 . 沿岸漁場의 特徵과 非協同的 利用 · 管理行爲	76
第5章 事例漁村地域의 漁場利用 · 管理實態 分析	
1 . 分析視角과 事例地域의 選定	85
2 . 漁場의 利用 · 管理 및 意思決定 主體	91
3 .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變質 : 共同漁場의 私占化	94
4 . 漁場紛糾의 類型 및 事例	114
第6章 要約 및 結論	
	120

表 目 次

第2章

表 2 - 1	漁業家口 構成，1987	6
表 2 - 2	養殖漁業經營體 構成推移，1980 ~ 87	7
表 2 - 3	養殖漁業經營體 規模別 構成，1987	8
表 2 - 4	漁業別 生產量構成 且 推移，1987	10
表 2 - 5	海區別 漁業生產量現況，1987	11
表 2 - 6	共同漁業의 種類	13
表 2 - 7	共同漁業 免許實態，1987	14
表 2 - 8	共同漁業 生產實態，1987	16
表 2 - 9	定置漁業의 漁場區域 限界	17
表 2 - 10	定置漁業 免許 且 生產實態，1987	19
表 2 - 11	養殖漁業 免許實態，1986	20
表 2 - 12	養殖漁業 生產實態，1986	22

第3章

表 3 - 1	漁村契 且 漁村部落 現況，1987	24
表 3 - 2	漁村契의 立地類型別 現況，1987	25
表 3 - 3	漁村契의 從事類型別 現況，1987	26
表 3 - 4	漁村契의 家口構成，1987	27
表 3 - 5	漁村契의 漁業權 且 漁場現況，1986	29
表 3 - 6	漁村契의 道別 漁場構成，1986	29
表 3 - 7	漁村契의 規模別 漁場構成，1986	30
表 3 - 8	入力變數 一覽	32

表 3 - 9 因子構成과 積載值	34
表 3 - 10 因子別 上位得點地域의 分布	38
表 3 - 11 沿岸漁村의 類型區分	43

第 4 章

表 4 - 1 漁場利用과 관련된 水產制度의 變遷	54
表 4 - 2 第 1 種 및 第 3 種 共同漁業의 漁場管理義務	60
表 4 - 3 道別 第 1 種共同漁業權 有無別 漁村契數 , 1986	61
表 4 - 4 海域別 第 1 種共同漁業 所有主體別 漁場面積 , 1987 ...	62
表 4 - 5 道別 第 2,3 種共同漁業權 有無別 漁村契數 , 1986	64
表 4 - 6 海域別 第 2,3 種共同漁業 所有主體別 漁場面積 , 1987..	65
表 4 - 7 養殖 및 定置漁業 免許者別・品目別 漁場面積 , 1986 ...	67
表 4 - 8 養殖漁業의 名稱・區分・漁場水深・水面限界・漁場間 距離 및 採捕方法	69
表 4 - 9 主要養殖品目別 生產量 및 實質委販價格 變動推移	73
表 4 - 10 地區別 水協數의 變化 , 1962 ~ 87	74

第 5 章

表 5 - 1 莊島의 漁家構成 現況 , 1987	88
表 5 - 2 莊島의 漁村契 總有漁場構成 , 1986	89
表 5 - 3 事例地域의 漁業權 및 漁場構成	89
表 5 - 4 事例地域의 漁村契員 構成	90
表 5 - 5 事例地域의 經營形態別 漁家構成	90
表 5 - 6 事例地域 海苔養殖漁家의 規模別 分布	91
表 5 - 7 事例地域 미역養殖漁家의 規模別 分布	91
表 5 - 8 共同漁場과 관련된 主要方針의 決定	92
表 5 - 9 共同收益金의 運用形態	92
表 5 - 10 非契員의 規模別 總有漁場 入戶	93
表 5 - 11 持場位置의 設定形態(해태 양식)	95

表 5 - 12 持場位置의 設定形態(미역양식)	95
表 5 - 13 轉出時 持場의 處分形態(해태양식).....	96
表 5 - 14 轉出時 持場의 處分形態(미역양식).....	96
表 5 - 15 一時(一年) 操業中斷時 持場의 讓渡形態	97
表 5 - 16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해태양식)	98
表 5 - 17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미역양식)	98
表 5 - 18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漁場規模	99
表 5 - 19 持場의 私占化 項目에 따른 漁村契 分布	107
表 5 - 20 漁家數의 變動類型	109
表 5 - 21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해태양식)	110
表 5 - 22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미역양식)	110
表 5 - 23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漁場規模 및 構成.....	111
表 5 - 24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漁場構成	112
表 5 - 25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持場의 私占化	112

圖 目 次

第 3 章

圖 3 - 1	分類圖	41
圖 3 - 2	類型의 空間分布	45

第 4 章

圖 4 - 1	莞島郡 甫吉面 東南海域의 漁場利用實態	70
圖 4 - 2	莞島郡 신지면 명사포지역의 漁場利用實態	71
圖 4 - 3	Nash 와 Pareto 均衡	80
圖 4 - 4	短期間의 漁業強度, 平均生產, 限界生產의 相互關係 ...	82
圖 4 - 5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과의 關係	83

第 5 章

圖 5 - 1	D 漁村契와 個人漁業權者 金氏間의 漁場紛糾 事例	115
圖 5 - 2	E 漁村契와 K 漁村契間의 漁場紛糾 事例	118
圖 5 - 3	C 漁村契와 G 漁村契間의 漁場紛糾 事例	119

第 1 章

序 論

우리 나라 國土의 3 面을 둘러싸고 있는 200 海里(等距離)內의 面積은 國土面積의 3.2 배이고, 이 중 沿岸地域이라 할 수 있는 3 海里內의 面積만도 52,950㎢에 이른다.

이 沿岸漁場은 全體 漁民의 90 % 이상에 달하는 沿岸漁民의 生存의 터전이 되고 있다. 또한 總 水產物生產의 36 % 이상을 沿岸漁場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沿岸海域이 漁業, 漁村, 漁民을 포함하는 全體 漁業 社會發展에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漁場利用制度는 李朝時代에 접어들면서 體系를 갖추기 시작했고, 일제의 朝鮮漁業令에 의하여 近代的 漁業制度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制度의 인식속에서 國家는 漁場所有의 上位主體가 되어 왔다. 특히, 漁場은 共有財 (Common property)로서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 社會福祉의 次元의 利用政策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沿岸漁場은 法과 儻行의 摩擦과 漁場利用管理의 不均衡 속에서 資源枯竭, 漁場荒廢, 漁場紛爭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效率의in 漁場管理에 바탕을 둔 漁場利用 · 開發政策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漁民의 自律的 協助를 얻어낼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는 것이 진요한 課題이다.

本研究는 이러한 觀點에서 制度와 儻行의 不一致를 파악하고, 漁場利

用管理行爲 및 事例漁村地域의 漁場利用實態를 分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研究內容은 總 6 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第 2 章에서는 沿岸漁場의 全般的인 利用現況을 살펴 보았다. 第 3 章과 第 4 章에서는 각각 沿岸漁村의 漁場利用의 特性 및 類型과 약과 制度 · 執行의 摩擦의 檢討가 이루어졌다. 第 5 章에서는 事例漁村地域의 漁場利用 · 管理實態分析이 이루어졌고, 第 6 章에서는 要約과 結論이 제시되었다.

第 2 章

沿岸漁場의 利用實態

1. 沿岸漁場의 概念 및 範圍

漁場이란 水產動植物을 經濟的으로 採捕할 수 있는 水界를 말한다. 本研究의 主題인 沿岸漁場은 沿岸漁業生產의 기반이 되는 水界를 말한다. 따라서 漁業의 分類를 떠나서 漁場을 구분할 수는 없으며, 沿岸漁業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近海·遠洋漁業과 대별되는 개념인 沿岸漁業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沿岸漁業은 近海·遠洋漁業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서 歷史的 社會經濟的인 배경과 慣行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다. 따라서 그 내용규정에는 다양한 定義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沿岸漁業은 家族勞動中心의 零細經營을 특징으로 하며, 資本制의 經營과의 어업분규 및 대립으로부터 保護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특이한 制度的 形態와 內容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生產力의 發展이 저위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前近代社會에서 漁業은 沿岸零細漁民에 의해 영위되었으며, 이후에 들어와서도 沿岸漁業은 다수영세어민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따라서 沿岸漁業은 近代的 漁業法上의 규정과 經濟的 能率主義를 넘어서 漁村總有의 地先漁場에서 행해지는 漁業이라는

강력한 概念과 傳統意識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概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史實이다.

따라서 沿岸漁業은 漁業의 形態別로 볼 때 排他・獨占의 支配의 菲요성이 다분히 있는 漁場에서 행해지는 漁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沿岸漁業의 근간이 되는 것은 漁業權漁業 즉, 免許에 의해 그 權利를 보장받는 어업과 이에 준하는 漁場을 操業地域으로 하는 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沿岸漁業의 範圍를 규정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水產業法上의 許可漁業중 沿岸漁船漁業의 경우이다.

沿岸漁業의 범위를 距岸거리를 기준으로 한 距離的 개념으로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1日 往復거리에서 操業하는 漁業을 말한다. 水產振興法施行令에 의한 沿岸漁業의 범위 역시 “國內의 漁撈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 귀항할 수 있는 범위안의 海岸에서 하는 漁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론前述한 漁業權漁業이 포함된다.

그러나 漁船漁業의 경우 1日 往復圈內의 범위로 沿岸漁場을 규정했을 때 小型漁船의 高馬力化 경향은 沿岸漁場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漁場利用의 排他・獨占의 支配의 제약성이 漁業權漁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沿岸漁船漁業의 利用水界인 沿岸漁場을 他許可漁業에 의한 漁撈活動과 관련하여 相互關聯性, 流動變易性 등의 특징을 갖는 漁場內에서 그 水界를 區分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經濟發展추세에 따라 유용화되는 漁獲對象物의 종류 및 구성변화, 漁撈技術의 진보, 水產物價格의 상승 등에 따라 漁場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책적 대상으로서 특히 중시되어야 할 沿岸漁場은 구체적으로 다수의 沿岸漁民이 과거부터 자기의 田・畠처럼 日常 이용하여 왔고, 地先漁民에 의한 共同占有(總有)・共同利用・共同管理해온 漁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인위적 資源造成과 養殖技術의 발달에 의하여 擴張될 수 있는 漁場도 포함된다.

요컨대 本研究에서 다루는 沿岸漁場이란 漁業權漁業으로서 1) 일정한 수면에서 區劃, 기타施設을 하여 행하는 養殖漁業 2) 일정한 수면을 專用하여 貝類・海藻類 또는 定着性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1種共同漁業

3) 일정한 수면을 專用하여 지정된 漁具를 사용하여 행하는 第 2 種共同漁業 및 4) 第 3 種 共同漁業 5) 일정한 수면을 區劃하는 漁具를 定置하여 魚類를 포획하는 定置漁業, 그리고 6) 이에 準하는 漁場에서 행해지는 漁業 등의 操業水界를 의미한다.

2. 沿岸漁業의 生產構造

가. 漁業階層別 漁家構成

1987년 현재 總漁業家口는 141千家口에 달한다.〈表 2 - 1〉. 이 중經營者家口는 124千家口로서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被雇傭者家口는 17千家口로서 12.3%를 차지하고 있다. 經營者家口를 다시 從事類型別로 구분하면 動力船使用家口가 31千家口로 전체의 22.0%를 無動力船使用家口가 34千家口로 전체의 2.4%를 漁船非使用家口가 32千家口로 22.6%를 점하고 있으며, 養殖業家口는 58千家口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식업 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동안 양식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서 전체 경영자가구만의 비율로 보면 46.5%를 점하여 전체 경영자가구의 거의 반을 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양식업 가구는 貝類養殖과 海藻類養殖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貝類養殖에는 굴, 바지락, 고막, 피조개 등 貝類와 魚類 및 기타수산동물이 포함되는데 총종사가구수는 14千가구로 전체어가구의 9.7%, 그리고 양식업 가구의 23.8%를 점하고 있다. 또 海藻類養殖은 김, 미역, 튧 등이 포함되는데 총종사가구수는 44千가구로 전체어가의 31.0%, 그리고 양식업 가구의 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조류 양식 가구가 높은 비율을 점하는 것은 김, 미역 등의 品目이 주로 總有型漁業形態로 면허되어 다수의 地先漁民이 共同體의으로 종사하기 때문이다.

어업가구를 道別로 보면 全南이 51千가구로 전체의 36.4%를, 慶南이 30千가구로 전체의 21.3%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2個道의 어업

表2-1 漁業家口構成, 1987

家口 道	計	經營者家口												被雇 傭者 家口	
		經營 者家 口計	動力船	無動 力船	漁船 非使用	養殖業									
						養 殖 計	漁業				海 產 計	漁業			
						小計	굴	주요폐류*	기타**	小計	김	미역	기타		
전국	141,204 (100.0)	123,837 (87.7)	31,034 (22.0)	3,393 (2.4)	31,860 (22.6)	57,550 (40.8)	13,708 (9.7)	7,716 (5.5)	3,294 (2.3)	2,698 (1.9)	43,842 (31.0)	36,577 (25.9)	5,910 (2.1)	1,375 (1.0)	17,367 (12.3)
강원	11,251	11,083	2,626	224	8,192	41	41	-	-	41	-	-	-	-	168
경북	11,400	7,503	2,402	596	4,183	332	309	-	-	309	13	-	13	-	3,897
경남	30,136	21,874	10,456	1,280	1,716	8,422	5,131	3,814	122	1,195	3,291	1,458	1,742	91	8,262
전남	51,384	49,566	7,831	661	3,578	37,496	4,288	1,834	1,378	1,076	33,208	27,769	4,155	1,284	1,818
제주	9,672	8,259	2,219	104	5,936	-	-	-	-	-	-	-	-	-	1,413
경기	9,854	9,289	1,447	205	4,906	2,731	1,952	1,476	440	36	779	779	-	-	565
충남	11,891	11,606	2,680	274	1,425	7,227	1,892	592	1,294	6	5,335	5,335	-	-	285
전북	5,616	4,657	1,373	49	1,924	1,311	95	-	60	35	1,216	1,216	-	-	959

* 주요 폐류는 바지락, 고막 임.

** 어류 및 기타 수산동물 포함.

表 2 - 2 養殖漁業經營體 構成推移, 1980~87

단위 : 개

	計	漁村契	水協	個人
1980	6,218 (100.0)	1,236 (19.9)	1,085 (17.4)	3,897 (62.7)
1981	6,714 (100.0)	3,265 (48.6)	1,082 (16.1)	2,367 (35.3)
1982	6,491 (100.0)	3,334 (51.4)	1,053 (16.2)	2,104 (32.4)
1983	6,760 (100.0)	3,566 (52.8)	1,044 (15.4)	2,150 (31.8)
1984	6,865 (100.0)	3,903 (56.9)	946 (13.8)	2,016 (29.4)
1985	7,304 (100.0)	4,136 (56.6)	1,025 (14.0)	2,143 (29.3)
1986	7,772 (100.0)	4,834 (62.2)	994 (12.8)	1,944 (25.0)
1987	7,888 (100.0)	5,398 (68.4)	847 (10.7)	1,643 (20.8)
연평균증가율	3.5 %	23.4 %	△ 3.5 %	△ 11.6 %

資料 : 水產廳, 年次報告書

가구는 82千여가구가 되어 전체의 57.7%를 점하게 되는데 전남은 양식업가구가 73.0%를 점하는데 비해 경남은 어선어업에 속하는 동력선과 무동력선사용가구 및 피고용자가구가 66.4%를 점하여 서로 다른 어가 구성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漁業經營者家口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양식어업가구의 經營體構成變化는 <表 2 -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1980년에 個人이 총 경영체수 6,218개 중 62.7%인 3,897개를 점해 가장 많은 경영체구성을 보였으나 1987년에는 漁村契가 총경영체수 7,888개의 68.4%인

表 2-3 養殖漁業經營體 規模別 構成, 1987

單位 : 個

	計	5人 이하	6~ 10	11~ 15	16~ 20	21~ 25	26~ 30	31~ 35	36~ 40	41人 이상
計	7,888 (100.0)	4,127 (52.3)	693 (8.8)	415 (5.3)	343 (4.3)	259 (3.3)	238 (3.0)	187 (2.4)	198 (2.5)	1,428 (18.1)
貝類	4,137 (100.0)	2,645 (63.9)	223 (5.4)	90 (2.2)	71 (1.7)	82 (2.0)	106 (2.6)	81 (2.0)	87 (2.1)	752 (18.2)
海藻類	2,898 (100.0)	813 (28.1)	414 (14.3)	304 (10.5)	257 (8.9)	163 (5.6)	119 (4.1)	97 (3.3)	102 (3.5)	698 (21.7)
其 他	853 (100.0)	669 (78.4)	56 (6.6)	21 (2.5)	15 (1.8)	14 (1.6)	13 (1.5)	9 (1.1)	9 (1.1)	47 (5.5)

5,398 개를 점해 가장 많은 경영체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어촌계의 양식어업경영체 수가 年平均 23.4 %의 增加率을 보인 반면 개인 양식어업경영체 수는 年平均 11.6 %의 減少率을 보인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계의 경영체는 증가한 반면 개인경영체는 감소한 것은 김, 미역 등 어촌계에 의해 영위되는 양식업의 기술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地先漁場은 地先漁民에게 돌려주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데 기인되고 있다.

海藻類養殖漁業이 漁村契에 의해 주로 영위되고 있다는 것은 <表 2-3>에 의해 알 수 있다. 즉, 養殖漁業 經營體規模別 構成을 보면 貝類養殖의 경우 5인 이하에 의해 영위되는 경영체 수가 패류양식 경영체 전체의 63.9 %를 차지하는데 비해 海藻類養殖의 경우 5인 이하의 경영체 수 비율이 28.1 %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인 이상의 경영체 수는 패류양식이 30.8 %인데 비해 해조류양식이 57.7 %를 점하여 해조류양식이 다수의 어민에 의하여 경영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패류양식중 41人 이상에 의해 영위되는 경영체 수가 비교적 많은데 이는 패류중 어촌계에 의해 많이 양식되고 있는 撒布式養殖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 漁業別 生產構造

우리 나라 漁業의 生產構造는 漁家構成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가구성에서는 양식어업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나 생산구조에서는 어선어업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즉, <表 2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의 총어업생산량 3,275 千噸 중 41.2%에 해당하는 1,350 千噸이 沿近海漁船漁業에 의해서 어획되는 반면 養殖漁業은 26.4%에 해당하는 866 千噸이 어획되었다. 나머지는 遠洋漁業과 共同漁業에 의해 어획되고 있는데 특히, 원양어업은 883 千噸이 어획되어 전체의 26.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沿近海漁船漁業에 이어 두번째의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서 1980년 이래 연평균 9.8%의 증가율에 힘입어 高成長을 이룬 결과이다. 이에 비해 어획량증가율면으로는 연근해어선어업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이래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다른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근해어업의 증가율 둔화는 外延的漁場擴大, 漁船大型化 및 漁具改良에 비추어 본다면 單位努力當生產量은 오히려 감소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업생산량의 道別 또는 海區別現況은 <表 2 - 5>와 같다. 1987년의 總沿近海漁業生產量 2,392 千噸 중 南海區가 1,860 千噸으로 7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西海區의 345 千噸으로 14.4%, 東海區의 187 千噸 7.8%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남해구에서 이처럼 높은 어획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동지나해역에로의 外延的漁場擴大에 의해 부산, 경남, 전남 등에 많은 沿近海漁船이 몰리고 있을뿐 아니라 경남, 전남 등에는 발달된 양식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즉, 부산의 경우 417 千噸의 생산량 중 연근해어선어업생산량이 373 千噸으로 89.4%를 점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707 千噸의 생산량 중 연근해어선어업생산량이 301 千噸으로 42.6%를 양식어업생산량이 379 千噸으로 53.6%를 점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693 千噸의 생산량 중 연근해어선어업생산량이 296 千噸으로 42.7%를 양식어업생산량이 346 千噸으로 49.9%를 점하고 있다. 東海區는 전체에

表2-4 漁業別 生産量構成 및 推移, 1987

단위 : 百萬公噸, %

	計	遠洋	沿近海	共同	養殖漁業		
		漁業	漁船漁業	漁業	小計	貝類	海藻類
1980	2,371,120 (100.0)	458,209 (19.3)	1,245,060 (52.5)	127,287 (5.4)	540,564 (22.8)	282,684 (11.9)	257,880 (10.9)
1981	2,771,779 (100.0)	542,357 (19.6)	1,404,856 (50.7)	123,501 (4.5)	701,065 (25.3)	318,002 (11.5)	383,063 (13.8)
1982	2,599,522 (100.0)	527,819 (20.3)	1,352,763 (52.0)	122,624 (4.7)	596,316 (22.9)	281,781 (10.8)	314,535 (12.1)
1983	2,746,027 (100.0)	615,141 (22.4)	1,362,262 (49.6)	128,826 (4.7)	643,798 (23.4)	296,571 (10.8)	347,227 (12.6)
1984	2,859,690 (100.0)	658,252 (23.0)	1,390,557 (48.6)	132,560 (4.6)	678,321 (23.7)	294,660 (10.3)	383,661 (13.4)
1985	3,049,541 (100.0)	767,030 (25.2)	1,335,743 (43.8)	159,197 (5.2)	787,571 (25.8)	390,110 (12.8)	397,461 (13.0)
1986	3,602,671 (100.0)	929,886 (25.8)	1,570,937 (43.6)	154,883 (4.3)	946,965 (25.3)	422,438 (11.8)	524,127 (14.5)
1987	3,274,722 (100.0)	882,660 (26.9)	1,349,849 (41.2)	176,150 (5.4)	866,063 (26.4)	467,963 (14.2)	398,100 (12.2)
年平均增加率(87/80)	4.7 %	9.8 %	1.2 %	4.8 %	7.0 %	7.5 %	6.4 %

資料：農林水產部，農林水產統計年報。

表2-5 海區別 漁業生產量現況，1987

單位：公噸，%

		沿近海漁業計	沿近海漁船漁業	共同漁業	養殖漁業
全 國		2,392,062 (100.0)	1,349,849 (56.4)	176,150 (7.4)	866,063 (36.2)
東海區	小 計	187,407 (100.0)	170,939 (91.2)	7,433 (4.0)	9,035 (4.8)
	江 原	92,112 (100.0)	87,143 (94.6)	4,921 (5.3)	48 (0.1)
西海區	京 朴	95,295 (100.0)	83,796 (87.9)	2,512 (2.6)	8,987 (9.4)
	小 計	344,665 (100.0)	189,610 (55.0)	64,684 (18.8)	90,371 (26.2)
南海區	仁 川	78,329 (100.0)	75,671 (96.6)	2,530 (3.2)	128 (0.2)
	京 釜	45,405 (100.0)	22,641 (49.9)	15,009 (33.1)	7,755 (17.1)
	忠 南	80,969 (100.0)	31,604 (39.0)	21,945 (27.1)	27,420 (33.9)
	全 北	140,052 (100.0)	59,784 (42.7)	25,200 (18.0)	55,068 (39.3)
資料：農林水產部，農林水產統計年報，1988。	小 計	1,859,900 (100.0)	989,210 (53.2)	104,033 (5.6)	766,657 (41.2)
	釜 山	417,048 (100.0)	372,839 (89.4)	2,338 (0.6)	41,871 (10.0)
	京 南	706,826 (100.0)	300,797 (42.6)	27,247 (3.9)	378,782 (53.6)
	全 南	693,168 (100.0)	296,281 (42.7)	50,883 (7.3)	346,004 (49.9)
	濟 祖	42,858 (100.0)	19,293 (45.0)	23,565 (55.0)	-

의한 생산량구성비는 낮으나 생산량의 대부분은 연근해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西海區는 연근해어선어업이 55.0 %를 양식어업이 26.2 %를 차지하고 있다. 西海區에서 특기할 것으로는 共同漁業에 의한 생산량구성비가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서해구 총생산량 345 千噸 중 공동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65 %으로 18.8 %를 점하고 있다. 공동어업의 절대 생산량은 남해구의 104 千噸이 가장 많으나 이는 남해구 총생산량의 5.6 %에 불과한 것으로서 서해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漁業權 및 漁場利用實態

가. 共同漁業

① 共同漁業의 種類

共同漁業에는 第 1 種, 第 2 種 및 第 3 種共同漁業의 세 종류가 있다. 第 1 種共同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專用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정착성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어업”(水產業法 第 8 條 1 項)이며, 第 2 種共同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地引網, 地漕網, 船引網, 賴引網, 捕羅網, 犬寄抄網 또는 들網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주로 運用漁具를 사용하는 어업이라고 할 수 있다. 第 3 種共同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定置漁業 및 第 2 種共同漁業에 의해 면허된 이외에 納漁具나 釣漁具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주로 小型 定置漁具에 의하여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第 1 種共同漁業의 免許區域은 당해 어장에 대한 地先漁民의 이용도, 생산실적, 대상자원의 상태 및 어업조정 등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最干潮時の 평균수심 10 m (강원, 경북 및 제주도에 있어서는 15 m) 이내의 범위안에서 수면을 실측구획하고, 어장구획선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物標 등을 연결 명시하여 면허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에 위치한 무인도,

表 2 - 6 共同漁業의 種類

種類	內 容	漁 場 區 域	免許期間
第 1 種 共同漁業	일정수면을 專用하여 貝類, 海藻類 또는 定着性水產動物을 채포하는 어업	最干潮時의 평균수심 10 m (강원, 경북, 제주는 15 m) 이내	10 년
第 2 種 共同漁業	일정수면을 專用하여 주로 運用漁具를 사용하는 어업	最高潮時 해안선으로부터 500 m 이내	5 년
第 3 種 共同漁業	일정수면을 專用하여 주로 小型定置漁具를 사용하는 어업	最高潮時 해안선으로부터 1,000 m (경기, 충남, 전북은 2,000 m) 이내	5 년

낙도 등 실질적으로 共同行使할 수 없는 수면에 대하여는 면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水產業法 施行令 第11條 2項). 한편 면허구역내에서 조업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다른 어업과 조정하여 면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때문에 第 1 種共同漁業 漁場區域內에는 定置 및 養殖漁業이 면허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 1 종 공동어업의 면허기간은 10년이며, 어장에서 채포할 수 있는 생산물의 종류는 수산청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第 2 種共同漁業은 水產業法에서 규정된 어구어법 중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어 제 2 종 공동어업에 의한 어로활동은 그다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없다. 免許區域은 해안선(最高潮時의 육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부터 500 m 이내에서 면허할 수 있으며, 免許期間은 5년이다. 그리고 第 3 種共同漁業의 免許區域은 해안선(最高潮時 육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 m (경기, 충남 및 전북에 있어서는 2,000 m) 이내의 수면에 한하고 있으며, 免許期間은 5년이다. 이 상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表 2 - 6>과 같다.

② 共同漁業의 漁場利用實態

1987년의 共同漁業免許件數는 총 2,770 件이며, 免許面積은 147,353 ha

表 2 - 7 共同漁業 免許實態, 1987

單位 : 件, ha, %

		合計		第1種		第2種		第3種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全 國		2,770 (100.0)	147,353 (100.0)	1,708	99,721	60	3,674	1,002	43,958
東海區	小 計	391 (14.1)	22,711 (15.4)	227	20,529	23	371	141	1,811
	강 원	121 (4.4)	12,629 (8.6)	80	11,464	1	6	40	1,159
西海區	경 북	270 (9.7)	10,082 (6.8)	147	9,065	22	365	101	652
	小 計	430 (15.5)	12,922 (8.8)	256	9,295	-	-	174	3,627
	인 천	3 (0.1)	1,543 (1.0)	3	1,543	-	-	-	-
	경 기	101 (3.6)	4,720 (3.2)	97	4,440	-	-	4	280
	충 남	191 (6.9)	3,775 (2.6)	85	1,622	-	-	106	2,153
南海區	전 북	135 (4.9)	2,884 (2.0)	71	1,690	-	-	64	1,194
	小 計	1,949 (70.4)	111,720 (75.8)	1,225	69,897	37	3,303	687	38,520
	부 산	6 (0.2)	1,226 (0.8)	6	1,226	-	-	-	-
	경 남	703 (25.4)	35,445 (24.1)	459	21,477	31	2,039	213	11,929
	전 남	1,114 (40.2)	59,344 (40.3)	635	31,492	6	1,264	473	26,588
제 주		126 (4.5)	15,705 (10.7)	125	15,702	-	-	1	3

資料：水產廳。

이다(表 2-7). 이 중 제 1종 공동어업은 件數에서 1,708 件으로 전체의 61.7% 面積에서 99,721 ha로 전체의 67.7%를 점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 다음이 제 3종 공동어업으로 免許件數 1,002 件에 面許面積은 43,958 ha이다. 海區別로 보면 南海區에서 가장 많은 전수와 면적을 보이고 있는데 전수면에서는 70.4%에 해당하는 1,949 件, 면적면에서는 75.8%에 해당하는 111,720 ha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수면에서 40.2%, 면적면에서 40.3%를 점하여 대부분의 공동어업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공동어업의 생산실태는 (表 2-8)과 같은데 1987년의 공동어업 총생산량은 176 千t이며, 이 중 제 1종 공동어업이 139 千t으로 전체의 78.7%를 점하고 있다. 이는 제 1종 공동어업이 면허면적에 있어서 가장 넓을 뿐 아니라 單位面積當 生產量도 1.39 t / ha로 제 2종 공동어업이나 제 3종 공동어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 2종 공동어업은 생산량이 0.7 千t으로 가장 작은데 單位面積當 生產量도 0.19 t / ha로 生產性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 공동어업 생산실태를 海區別로 보면 남해구가 104 千t으로 가장 높으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비교적 낮은 0.93 t / ha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해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01 t / ha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해구의 경우 제 1종 공동어장에서 패류 등의 생산이 많기 때문이다.

나. 定置 및 養殖漁業

① 定置 및 養殖漁業의 種類

定置漁業은 어군의 來遊를 기다려서 어획하는 消極的 漁法으로 그 종류에는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大敷網, 大謀網, 改良式大謀網, 落網, 角網, 八角網, 小臺網 또는 竹防簾이 있다. 정치어업은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어구를 定置하여서 하는 어업인데 定置라는 것은 일정한 수면에 支柱, 土砂 등으로써 網 또는 기타어구를 부설하여 이동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어업은 어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면허하는데 그 漁場區域 限界는 (表 2-9)와 같으며 免許期間은 일률적으로 10년이다.

表2-8 共同漁業 生産實態, 1987

單位 : M_T, M_T/ha, %

		全 體		第 1 種		第 2 種		第 3 種	
		生產量	單位面積 當生產量	生產量	單位面積 當生產量	生產量	單位面積 當生產量	生產量	單位面積 當生產量
全 國		176,150 (100.0)	1.20	138,659 (100.0)	1.39	702 (100.0)	0.19	36,789 (100.0)	0.84
東海區	小 計	7,433 (4.2)	0.33	6,464 (4.7)	0.31	111 (15.8)	0.30	858 (2.3)	0.47
	江 原	4,921 (2.8)	0.39	4,858 (3.5)	0.42	-	-	63 (0.2)	0.05
	經 北	2,512 (1.4)	0.25	1,606 (1.2)	0.18	111 (15.8)	0.30	795 (2.2)	1.22
西海區	小 計	64,684 (36.7)	5.01	51,097 (36.9)	5.50	490 (69.8)	...	13,097 (35.6)	3.61
	仁 潤	2,530 (1.4)	1.64	2,530 (1.8)	1.64	-	-	-	-
	經 基	15,009 (8.5)	3.18	15,009 (10.8)	3.38	-	-	-	-
	忠 南	21,945 (12.5)	5.84	10,746 (7.7)	6.63	-	-	11,199 (30.4)	5.20
	全 北	25,200 (14.3)	8.74	22,812 (16.5)	13.50	490 (69.8)	...	1,898 (5.2)	1.59
南海區	小 計	104,033 (59.1)	0.93	81,098 (58.5)	1.16	101 (14.4)	0.03	22,834 (62.1)	0.60
	부 산	2,338 (1.3)	1.91	2,338 (1.7)	1.91	-	-	-	-
	경 南	27,247 (15.5)	0.77	27,213 (19.6)	1.27	21 (3.0)	0.01	13 (0.0)	0.00
	전 남	50,883 (28.9)	1.17	27,982 (20.2)	0.89	80 (11.4)	0.06	22,821 (62.0)	0.86
	제 주	23,565 (13.4)	1.50	23,565 (17.0)	1.50	-	-	-	-

資料：農林水產部，農林水產統計年報，1988。

表 2-9 定置漁業의 漁場區域 限界

漁具의 名稱	漁 場 區 域
대 부 망	폭…신망부자부의 바다측 길이(200m)의 2배이내
대 모 망	장…중출선과 중출연장선(신망부자부의 바다측 길이의 10분의 3 이내를 합한 길이)
개량대모망	
낙 망	기점…좌우 2개로 설치
각 망	
팔 각 망	
소 대 망	
죽 방 염	폭…원망의 양측 첨단으로부터 신망의 최광부 외측을 연장한선 장…원망의 양측 첨단을 연결한 선의 중앙으로부터 신망의 최후단에 이르는 선

한편 養殖漁業은 일정한 수면에서 區劃, 기타시설을 하여 養殖하는 어업을 말하는데(水產業法 第8條 1項 1號) 양식품종에 따라 어류, 패류, 해조류 및 기타수산동물양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養殖方法에 따라 撒布式, 投石式, 建築式, 垂下式, 가두리, 築提式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水產業法施行令에 규정된 것으로서 水深, 養植物의 種類에 따라 다시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撒布式은 간석지에서는 백합, 꼬막, 바지락 등이 양식되고 있으며, 천해에서는 피조개, 새꼬막등이 양식되고 있다. 投石式은 간석지에서는 굴이 주로 양식되고 있으며, 천해에서는 전복, 소라 등이 양식되고 있고, 建築式은 주로 김이 양식되는데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서 一本築, 簾築, 浮築, 網築, 浮流網築으로 구분된다. 垂下式은 簡易垂下式, 延繩垂下式, 뗏목식으로 구분되는데 簡易垂下式에서는 굴이, 延繩垂下式에서는 굴, 홍합, 미역, 명게 등이, 뗏목식에서는 굴이 양식되나 최근에는 주로 延繩垂下式이 사용되고 있다. 가두리는 魚類가 주로 양식되는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築提式은 새우 등 甲殼類가 주로 양식되고 있다. 免許期間은 두 종류가 있는데 撒布式, 投石

式 및 築堤式은 10년이며, 建築式, 垂下式, 가두리養殖은 7년이다.

② 定置 및 養殖漁業의 漁場利用實態

定置漁業의 漁場利用實態는 〈表 2 - 10〉과 같다. 이에 의하면 總免許件數는 705 件이며, 總面許面積은 10,539 ha로서 해구별로 볼 때 건수면에서는 남해구가 제일 많으나 면적면으로는 동해구가 가장 넓다. 즉, 남해구는 면허건수가 378 건으로 전체의 53.6 %를 점하는데 비해 동해구는 면허면적이 7,581 ha로 전체의 71.9 %를 점하고 있다. 이는 동해구의 경우 수심이 깊어 정치어구 한통을 설치하더라도 규모가 커지지만 남해구는 주로 내만에 설치하기 때문에 정치어구당 면적은 작아지게 된다.

1987년 현재 定置漁業生產量은 54 千t인데 해구별생산량은 동해구가 27 千t으로 49.8 %를 점하고 있고, 남해구는 23 千t으로 42.3 %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單位漁場面積當 生產量은 남해구가 9.43t / ha로 동해구의 3.54t / ha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서해구의 경우 生產實績은 있는데, 免許面積이 없다. 이는 免許없이 불법어업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정된다.

한편 養殖漁業의 免許實態는 〈表 2 - 11〉과 같은데 이는 1986년의 養殖品種別 海區別 免許實態이다. 총면허건수는 7,772 件이며 총면허면적은 101 千ha로 養殖品種別로는 패류와 해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즉, 양식건수면으로 패류는 4,133 건인 전체의 53.2 %를, 해조류는 2,961 건인 전체의 38.1 %를 점하고 있으며 양식면적면으로 패류는 45 千ha로 전체의 44.0 %를, 해조류는 54 千ha로 전체의 53.4 %를 점하고 있다.

해구별로는 건수, 면적 모든 면에서 남해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남해구의 경우 건수면에서 5,817 건으로 전체의 74.8 %를, 면적면에서 77 千ha로 전체의 76.0 % 점하고 있는데 남해구 중 특히, 전남의 비율이 높다. 전남만을 보더라도 건수면에서 3,970 건으로 전체의 51.1 %를 점하고 있고, 면적면에서도 61 千ha로 전체의 60.2 %를 점하고 있다.

表 2-10 定置漁業 免許 및 生産實態, 1987

單位 : 件, ha, %/ha, %

		免 許 質 態		生 產 實 態	
		件 數	面 積	生 產 量	單位面積當生 產 量
全 國		705 (100.0)	10,539 (100.0)	53,929 (100.0)	5.12
東海區	小 計	277 (39.3)	7,581 (71.9)	26,861 (49.8)	3.54
	강 원	139 (19.7)	4,466 (42.4)	11,497 (21.3)	2.57
	경 복	138 (19.6)	3,115 (29.6)	15,364 (28.5)	4.93
	小 計	50 (7.1)	541 (5.9)	4,269 (7.9)	7.89
西海區	인 천	-	-	523 (1.0)	...
	경 기	-	-	1,836 (3.4)	...
	충 남	11 (1.6)	83 (0.8)	1,751 (3.2)	21.10
	전 북	39 (3.5)	458 (4.3)	159 (0.3)	0.35
南海區	小 計	378 (53.6)	2,417 (22.9)	22,799 (42.3)	9.43
	부 산	-	-	2,155 (4.0)	...
	경 남	235 (33.3)	1,050 (10.0)	10,255 (19.0)	9.77
	전 남	76 (10.8)	1,198 (11.4)	10,020 (18.6)	8.36
	제 주	67 (9.5)	169 (1.6)	369 (0.7)	2.18

註 : 1) ()내는 構成比임.

2) '.....'는 生產實績은 있는데 免許實績이 없어 計算不能.

資料 : 1) 水產廳.

2) 農林水產部, 農林水產統計年報, 1988.

表 2 - 11 養殖漁業 免許實態, 1986

單位 : 件 , ha , %

		合 計		魚 類		貝 類		海 藻 類		其他水產動物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全 國		7,772 (100.0)	101,189 (100.0)	195	358	4,133	44,564	2,961	54,008	483	2,259
	小 計	349 (4.5)	1,221 (1.2)	27	28	45	179	70	254	207	760
東海區	강 원	66 (0.8)	264 (0.3)	7	6	12	37	3	14	44	207
	경 북	283 (3.6)	957 (0.9)	20	22	33	142	67	240	163	553
	小 計	1,606 (20.7)	23,057 (22.8)	22	93	1,036	10,702	527	11,629	21	633
인 천		16 (0.2)	294 (0.3)	-	-	16	294	-	-	-	-
西海區	경 기	252 (3.2)	3,432 (3.4)	8	64	173	2,372	68	866	3	130
	충 남	615 (7.9)	10,772 (10.6)	11	21	399	3,658	187	6,590	18	503
	전 북	723 (9.3)	8,559 (8.5)	3	8	448	4,378	272	4,173	-	-
	小 計	5,817 (74.8)	76,911 (76.0)	146	237	3,052	33,683	2,364	42,125	255	866
부 산		29 (0.4)	1,616 (1.6)	-	-	1	10	25	1,576	3	30
南海區	경 남	1,802 (23.2)	14,365 (14.2)	82	120	1,324	12,063	204	1,527	192	655
	전 남	3,970 (51.1)	60,914 (60.2)	53	109	1,722	21,602	2,135	39,022	60	181
	제 주	16 (0.2)	16 (0.0)	11	8	5	8	-	-	-	-

資料 : 水產廳。

양식어업의 生產實態는 〈表 2-12〉와 같은데 免許實態와 같이 패류와 해조류의 생산량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해구별로도 남해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의 91.0%에 해당하는 862 千噸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單位面積當 生產量도 가장 높은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로 海藻類의 生產量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해조류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남해구가 $11.61 \text{ 吨} / \text{ha}$ 로 동해구나 서해구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패류의 경우 서해구가 $55.21 \text{ 吨} / \text{ha}$ 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해구에서의 단위면적당 생산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서해구의 패류양식이 주로 撒布式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남해구는 굴 등 垂下式에 의해 양식되는 패류가 많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양식어업생산실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生產實績은 있는데 免許實績이 없거나 면허실적이 있는데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定置漁業의 경우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양식어업에서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원인을 찾는다면 우선 생산실적은 있으나 면허실적이 없는 경우는 문란해진 양식질서를 생각할 수 있다. 制度와 慣行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서 無免許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不法漁業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第4章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면허실적은 있는데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는 漁業權이 점차 財產權的性格을 강하게 지니게 됨에 따라 非適地에도 우선 면허를 받아 既得權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허 이후 低生產性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면허실적은 있어도 생산실적이 없게 되는데, 이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장정리의 대상이 된다.

表 2-12 養殖漁業 生産實態, 1986

單位 : %, %/ha, %

		全體		魚類		貝類		海藻類		其他水產動物	
		生産量	單位面積當生産量	生産量	單位面積當生産量	生産量	單位面積當生産量	生産量	單位面積當生産量	生産量	單位面積當生産量
全國		946,965 (100.0)	9.36	2,915 (100.0)	2.56	398,994 (100.0)	8.95	524,127 (100.0)	9.70	20,929 (100.0)	9.26
	小計	12,618 (1.3)	10.33	14 (0.5)	0.50	1 (0.0)	0.00	1,795 (0.3)	7.07	10,808 (51.6)	14.22
東海區	江原	1 (0.0)	0.00	-	...	-	...	-	...	1 (0.0)	0.00
	경북	12,617 (1.3)	13.18	14 (0.5)	0.18	1 (0.0)	0.00	1,795 (0.3)	7.48	10,807 (51.6)	19.54
	小計	72,233 (7.6)	3.13	-	...	38,757 (9.7)	55.21	33,343 (6.4)	2.87	133 (0.6)	0.21
西海區	仁川	303 (0.0)	1.03	-	-	303 (0.1)	1.03	-	-	-	-
	경기	6,549 (0.7)	1.91	-	...	6,220 (1.6)	2.62	329 (0.1)	0.38	-	...
	충남	36,574 (3.9)	3.40	-	...	8,224 (2.1)	2.25	28,217 (5.4)	4.28	133 (0.6)	0.26
	전북	28,807 (3.0)	3.37	-	...	24,010 (6.0)	5.48	4,797 (0.9)	1.15	-	-
	小計	862,114 (91.0)	11.21	2,901 (99.5)	12.24	360,236 (90.3)	10.70	488,989 (93.3)	11.61	9,988 (47.7)	11.53
南海區	부산	38,928 (4.1)	24.09	-	-	19,656 (4.9)	1965.6	16,276 (3.1)	10.33	2,996 (14.3)	99.87
	경남	396,158 (41.8)	27.58	1,235 (42.4)	10.30	290,387 (72.8)	24.07	97,544 (18.6)	63.88	6,992 (33.4)	10.67
	전남	427,028 (45.1)	7.01	1,666 (57.2)	15.28	50,193 (12.6)	2.32	375,169 (71.6)	9.61	-	...
	제주	-	-	-	...	-	...	-	-	-	-

資料：農林水產部. 農林水產統計年報, 1987.

第 3 章

沿岸漁村의 漁場利用의 特性과 類型

1. 沿岸漁村의 漁場分布와 構成

가. 漁村의 概念 및 範圍

一般的으로 漁村에 대한 定義는 “漁業生產과 漁民들의 生活이 同시에 이루어지는 곳 또는 漁業生產에 적합한 自然條件을 가진 地域에서 漁民들이 村落을 형성하고 있는 곳”(日本 漁業白書)으로 概念化 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은 定義에 따라 漁村을 설정할 때 漁村自然部落, 漁村行政部落, 그리고 漁村契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중 어떠한 單位를 漁村地域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研究目的에 따라 區分될 수 있다.

예컨대 自然的, 海洋地理的 조건에 의한 漁業의 自然發生的 狀況과 이에 따른 自體團束的 特性을 중요시 한다면 漁村自然部落 또는 이를 행정상의 幾의로 區劃한 行政部落을 漁村地域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國家的 次元에서 중요한 政策對象으로서 漁業을 상정하고, 漁村契가 그 施策에 대한 最終收斂集團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漁村의 範圍를 漁村契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漁業은 일종의 資源베이스

產業이며, 그 근간이 되는 漁場에 대한 利用 및 管理에 대한 사항이 法律上의 摺制로서 政策的으로 漁村契에 일임되어 왔다. 따라서 漁場利用과 관련된 漁村의 特성을 파악코자하는 本章의 研究目的을 고려할 때 漁村契는 漁村地域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單位라 판단된다.

漁村契는 水協法에 의해 조직된 水協系統組織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서 기존의 漁村共同體를 經濟團單位로 편성한 제도적 조직이다. 1987년 말 전국의 漁村契는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 1,528 個에 이르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部落(里)은 3,217 個로서 漁村契當 평균 2.14개에 해당한다. 漁村契의 海域別 分布를 보면 全南 753 개(49.3%) 慶南 295 개(19.3%), 濟州 88 개(5.8%)로서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南海域이 전체 漁村契數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京畿, 忠南, 全北을 포함하는 西海域과 江原, 慶北의 東海域이 각각 196 個로서 合計 12.8%를 점하고 있다.

表 3-1 漁村契 및 漁村部落 現況, 1987

單位 : 個, %

道 區 分	漁村契 (A)	漁村(里)部落 (B)	B / A
京 錢	76 (5.0)	295 (9.0)	3.9
江 原	61 (4.0)	135 (4.1)	2.2
忠 南	68 (4.5)	318 (9.7)	4.7
全 北	52 (3.4)	98 (3.0)	1.9
全 南	753 (49.3)	1,337 (40.9)	1.8
慶 北	135 (8.8)	205 (6.3)	1.5
慶 南	295 (19.3)	753 (23.0)	2.6
濟 州	88 (5.8)	130 (4.0)	1.5
合計	1,528 (100.0)	3,217 (100.0)	2.1

資料 : 水協中央會, 漁村契現況, 1988.

나. 沿岸漁村의 立地 및 從事類型

전국의 漁村契를 立地形態에 따라 區分하면 〈表 3-2〉와 같다. 沿岸村落型 漁村契가 1,034 個(67.7%)로서 가장 많이 分布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島嶼立地型 239 個(15.6%), 沿岸都市近郊型 192 個(12.6%)僻地漁村契 63 個(4.1%)의 順을 보이고 있다. 海域別로는 西海域 및 西南海域에 島嶼漁村契가, 그리고 東海域에는 沿岸村落型 漁村契가 상대적으로 많이 分포되어 있다.

漁村契를 主要漁業의 從事類型別로 分류하면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貝·海藻類養殖 또는 捕貝採藻 등 增·養殖漁業에 주로 의존하는 漁村契는 803 個로서 전체의 52.6%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漁船漁業 및 增·養殖漁業을 複合的으로 경영하는 漁村契와 漁船漁業에 주로 의존하는 漁村契는 378 個(24.7%), 347 個(22.7%)로서 비슷한 수준을 각각 보이고 있다. 地域別로 볼 때 京畿, 忠南, 全南, 濟州 등 西海와 西南海域에 위치한 漁村契는 增·養殖依存型이 많은 반면, 江原 등 東海域에 위치한 漁村契는 漁船漁業依存度가 높아 대조를 보인다. 또한

表 3-2 漁村契의 立地類型別 現況, 1987

單位 : 個, %

道	立地	計	都市近郊	沿岸村落	脆弱地區	
					僻地	島嶼
京畿	76(100.0)	8(10.5)	27(35.5)	5	36	
江原	61(100.0)	21(34.4)	39(63.9)	1(1.6)	0(0.0)	
忠南	68(100.0)	8(11.8)	33(48.5)	12(17.6)	15(22.1)	
全北	52(100.0)	4(7.7)	21(40.4)	12(23.1)	15(28.8)	
全南	753(100.0)	56(7.4)	523(69.5)	29(3.9)	145(19.3)	
慶北	135(100.0)	9(6.7)	122(90.3)	4(3.0)	0(0.0)	
慶南	295(100.0)	62(21.0)	212(71.9)	1(0.3)	20(6.8)	
濟州	88(100.0)	24(27.3)	57(64.8)	0(0.0)	7(8.0)	
計	1,528(100.0)	192(12.6)	1,034(67.7)	63(4.1)	239(15.6)	

資料 : 水協中央會, 漁村契現況, 1988.

表3-3 漁村契의 從事類型別 現況, 1987

單位 : 個 , %

	計	漁船漁業型	增養殖漁業型	複合漁業型
京畿	76 (100.0)	17 (22.4)	43 (56.6)	16 (21.1)
江原	61 (100.0)	48 (78.7)	0 (0.0)	13 (21.3)
忠南	68 (100.0)	15 (22.1)	34 (50.0)	19 (27.9)
全北	52 (100.0)	19 (36.5)	9 (17.3)	24 (46.2)
全南	753 (100.0)	63 (8.4)	594 (78.9)	96 (12.7)
慶北	135 (100.0)	60 (44.4)	0 (0.0)	75 (55.6)
慶南	295 (100.0)	120 (40.7)	48 (16.3)	127 (43.1)
濟州	88 (100.0)	5 (5.7)	75 (85.2)	8 (9.1)
計	1,528 (100.0)	347 (22.7)	803 (52.6)	378 (24.7)

資料 : 水協中央會 , 漁村契現況 , 1988.

慶北, 慶南 및 全南 등은 漁船漁業型과 複合型 漁村契가 비교적 고르게 分布되어 있다.

다. 沿岸漁村의 家口構成

沿岸漁村(漁村契)에 거주하고 있는 漁業家口는 <表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말 170,334 戶에 이른다. 이 중 地區別水協에 소속된 組合員으로서 漁村契에 가입된 漁村契員家口는 136,686 戶로서 80.2 %를 점하고 있다. 漁村契員을 다시 經營形態別로 區分하면 兼業漁家가 89,535 戶로서 65.5 %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專業漁家 38,859(28.4 %), 被傭者漁家 8,292 戶(6.1 %)의 順이다.

여기서 漁業家口 중 契員과 非契員은 표면적인 차격상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뿐 독자적인 意思決定에 따라 행동하는 개별적 漁業經營體임에는 다를 바 없다. 더욱이 慣行이 우선시 되는 漁村契 總有의 共同漁場에 대한 入戶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들 在村漁家의 일반적인 특징은 零細經營과 斷續的, 不規則的 漁業生產으로 인해 그 經營形態도 주로 兼業的 性格을 보인다는 점이다.

表 3-4 漁村契의 家口構成, 1987

單位 : 戶 , %

家口 道	漁業 家口(A)	漁村契員家口				B / A
		計(B)	專業	兼業	被傭	
京畿	10,548	9,896 (100.0)	3,939 (39.8)	5,655 (57.1)	302 (3.1)	93.8
江原	12,305	5,967 (100.0)	3,871 (64.9)	1,584 (26.5)	512 (8.6)	48.5
忠南	15,181	12,572 (100.0)	3,491 (27.8)	8,906 (70.8)	175 (1.4)	82.8
全北	6,547	5,480 (100.0)	3,016 (55.0)	1,790 (32.7)	674 (12.3)	83.7
全南	58,708	51,882 (100.0)	7,086 (13.7)	43,775 (84.4)	1,021 (2.0)	88.4
慶北	13,451	10,047 (100.0)	2,936 (29.2)	4,591 (45.7)	2,520 (25.1)	74.7
慶南	37,640	25,972 (100.0)	11,096 (42.7)	12,035 (46.3)	2,841 (10.9)	69.0
濟州	15,954	14,870 (100.0)	3,424 (23.0)	11,199 (75.3)	247 (1.7)	93.2
計	170,334	136,686 (100.0)	38,859 (28.4)	89,535 (65.5)	8,292 (6.1)	80.2

資料 : 水協中央會, 漁村契現況, 1988.

그러나 이와 같은 漁業經營形態의 特징은 주요 從事漁業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節에서 詳述하겠지만 이를 代案의 으로 살펴 보면 沿近海漁船漁業勢 또는 이와의 複合型漁業勢가 비교적 강한 江原, 全北, 慶南 등에서는 專業漁家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養殖漁業이 주로 分布되어 있는 忠南, 全南과 捕貝採藻型共同漁業이 발달한 濟州 등에 있어서는 兼業漁家의 比重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沿岸의 海域別 特性이 각각의 漁業形態와 그에 따른 漁家의 經營構造에 적절히 반영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 沿岸漁村의 漁場分布 및 構成

전국의 漁村契가 總有, 共同管理하고 있는 漁業權 및 漁場規模는 〈表 3-5〉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86년 말 각각 6,276 件, 180,088 ha로 나타났다. 따라서 漁業權當 평균 漁場面積은 28.7 ha이다. 漁村契 평균으로 환산하면 漁業權은 4.1 件, 漁場은 118.5 ha에 이른다. 漁場의 分布를 地域別로 보면 全南과 慶南이 각각 81,282 ha(45.1%), 31,723 ha(17.6%)로서 濟州의 15,057 ha(8.4%)를 포함하면 南海域이 전체의 71.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각 漁村契가 平均的으로 總有하고 있는 漁場을 보면 江原이 214.6 ha로서 가장 높은 반면 全南과 慶南은 平均值 이하의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兩地域의 漁村集中度가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全國의 漁村契가 總有하고 있는 漁場의 構成은 〈表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種共同漁場이 92,679 ha로서 전체의 51.5%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共同養殖漁場 55,237 ha(30.7%)의 順이다. 地域別로 보면 1種共同漁場의 比重은 濟州, 江原, 慶北, 慶南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共同養殖漁場은 全南을 中心으로 忠南, 全北 등에서 높은 比重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總有漁場의 構成에 있어서도 海域別 特性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漁村契가 總有하고 있는 漁場을 구성별로 보면 〈表 3-7〉에서와 같이 1種共同漁場 61.0 ha, 共同養殖漁場 36.4 ha, 그리고 2,3種共同漁場과 共同定置漁場이 각각 19.7 ha, 1.5 ha로 나타났다. 이를 規模別로 보면 全體漁場面積이 100 ha 미만인 漁村契는 927 個로서 61.0%를 점하고 있다. 100 ~ 200 ha 規模의 漁場과 200 ha 이상의 大規模漁場을 總有하고 있는 漁村契는 각각 350 個(23.0%), 243 個(16.0%)로 나타났다.

表3-5 漁村契의 漁業權 및 漁場現況, 1986

단위 : 件, ha

	漁業權 (A)	漁場 (B)	A / 漁村契	B / 漁村契	B / A
京畿	317 (5.1)	9,887 (5.5)	4.2	130.1	31.2
江原	176 (2.8)	13,092 (7.3)	2.9	214.6	74.4
忠南	606 (9.7)	11,379 (6.3)	8.8	164.9	18.8
全北	366 (5.8)	6,304 (3.5)	7.0	121.2	17.2
全南	3,376 (53.8)	81,282 (45.1)	4.5	108.7	24.1
慶北	300 (4.8)	11,364 (6.3)	2.2	84.8	37.9
慶南	946 (15.1)	31,723 (17.6)	3.2	107.5	33.5
濟州	189 (3.0)	15,057 (8.4)	2.2	177.1	79.7
計	6,276 (100.0)	180,088 (100.0)	4.1	118.5	28.7

資料 : 水協中央會, 漁村契名簿, 1987.

表3-6 漁村契의 道別 漁場構成, 1986

單位 : ha, %

	計	1種共同	2,3種共同	養殖	定置
京畿	9,887 (100.0)	6,761 (68.4)	310 (3.1)	2,816 (28.5)	0 (0.0)
江原	13,092 (100.0)	11,427 (87.3)	943 (7.2)	107 (0.8)	615 (4.7)
忠南	11,379 (100.0)	1,606 (14.1)	2,139 (18.8)	7,498 (65.9)	136 (1.2)
全北	6,304 (100.0)	1,761 (27.9)	1,282 (20.3)	2,784 (44.2)	477 (7.6)
全南	81,282 (100.0)	21,790 (26.8)	21,015 (25.9)	38,296 (47.1)	181 (0.2)
慶北	11,364 (100.0)	9,586 (84.4)	1,065 (9.4)	62 (0.5)	651 (5.7)
慶南	31,723 (100.0)	24,880 (78.4)	3,154 (9.9)	3,674 (11.6)	15 (0.1)
濟州	15,057 (100.0)	14,868 (98.7)	15 (0.1)	0 (0.0)	174 (1.2)
計	180,088 (100.0)	92,679 (51.5)	29,923 (16.6)	55,237 (30.7)	2,249 (1.2)

表 3-7 漁村契의 規模別 漁場構成, 1986

單位: 個, %

區分 漁場(ha)	全體漁場	1種共同	2,3種共同	養殖	定置
0~5	186 (12.2)	628 (41.3)	1,151 (75.7)	658 (43.3)	1,454 (95.7)
5~10	44 (2.9)	21 (1.4)	61 (4.0)	102 (6.7)	9 (0.6)
10~30	182 (12.0)	193 (12.7)	93 (6.1)	270 (17.8)	34 (2.2)
30~50	175 (11.5)	153 (10.1)	55 (3.6)	139 (9.1)	11 (0.7)
50~100	340 (22.4)	238 (15.7)	81 (5.3)	192 (12.6)	10 (0.7)
100~150	219 (14.4)	104 (6.8)	33 (2.2)	81 (5.3)	1 (0.0)
150~200	131 (8.6)	68 (4.5)	16 (1.1)	29 (1.9)	1 (0.0)
200~300	121 (8.0)	58 (3.8)	18 (1.2)	29 (1.9)	0 (0.0)
300 이상	122 (8.0)	112 (7.6)	12 (0.8)	20 (1.3)	0 (0.0)
計	1,520 (100.0)	1,520 (100.0)	1,520 (100.0)	1,520 (100.0)	1,520 (100.0)
平均面積	118.5	61.0	19.7	36.4	1.5

2. 沿岸漁村의 特性分析

가. 分析方法 및 指標設定

本章의 研究目的은 漁場利用에 따른 沿岸漁村의 特性을 漁業經營的 要素와 관계하여 파악하고, 그 特性的 綜合的인 反映度에 의해 漁村地域을 類型化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多數의 變量을 대상으로 하는 多變量分析 중 因子分析方法을 적용하였다. 因子分析 (Factor Analysis)는 여러 變數들을 좀 더 基本的인 몇 개의 假想變數 (Hypothetical Variables)로 재배열하는 分析方法으로서 1) 諸變數間의 상호관계로부터 共通變量을 구하고 2) 測定值의 중복성을 찾아내어 3) 몇 개의 기본적인 變數 즉, 變數群 (共通因子)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技法 (吳澤燮, 1985, p303)이다.

分析體系는 다음과 같다. 1) 선정된 變數를 標準化하여 相關行列을 구한 후 2) 因子分析에서 얻어진 共通因子(Common Factors)와 變數間의 構載值(Factor Loadings)를 통해 각 因子의 特성을 규명한다. 3) 共通因子와 分析單位間의 因子得點(Factor Scores)을 구한 후 共通因子別 因子得點에 따른 分析單位의 分類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4) 因子得點을 變數로 하는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통해 적정수의 그룹을 설정하여 각 分析單位(地域)를 類型化한다.

因子分析에 사용된 分析指標로서 漁業은 기본적으로 資源베이스產業이라는 인식하에 漁場利用上의 特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變數를 漁業形態 및 特化度, 漁場構成, 渔村 및 漁家構成, 그리고 得得構成 등 4개 分類群으로 區分하여 18個의 變數를 선정하였다. 각 漁業形態 및 漁場과 관련된 이용주체는 전국의 56개 地區別水協에 소속된 在村漁民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近海漁業중심의 企業型漁業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 조직된 業種別水協을 배제함으로써 沿岸漁場資源의 海域的 特性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각 變數에 대한 一覽을 보면 <表 3-8>과 같다. 變數分類群 중 漁業形態 및 特化度는 沿近海漁船漁業, 無動力型沿岸漁船漁業, 海藻類 및貝類養殖漁業, 第1種 및 3種共同漁業 등 6개와 그에 대한 特化係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第2種共同漁業은 件數가 微微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第3種共同漁業도 어업형태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特化係數로 표현될 만큼 지역적 특성을 반영치 못한다는 점, 그리고 相關行列의 特異性(Singularity)을 고려하여 特化係數項目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漁場構成分類群 중에서 共同定置漁場은 渔村契 總有漁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적으며 分析結果의 說明力を 높이기 위해 배제하였다.

漁業의 形態에 대한 定義에 있어서 각 漁業을 단순히 行政處分에 의한 許可件數 및 漁業權 件數로 표시할 경우 1個 漁業權에 다수의 地先漁民이 참여하고 있는 共同養殖漁業이나 共同漁業 등이 過少評價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漁業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件數를 재조

表 3-8 入力變數 一覽

區 分	變 數 名	定 義
漁業形態契 特化度	沿近海漁船漁業(動力型)	行政處分 件數
	沿岸漁船漁業 ^b (無動力型)	"
	海藻類 養殖漁業	基準單位에 의한 件數
	貝類養殖漁業	"
	第 1 種共同漁業 ²⁾	"
	第 3 種共同漁業	行政處分 件數
	沿近海漁船漁業特化係數	$X_{ij} \cdot \frac{\sum x_{ij}}{\sum x_{ij}}$
	沿岸漁船漁業特化係數	$\frac{\sum x_{ij}}{\sum x_{ij}}$
	海藻類養殖漁業特化係數	$\frac{\sum x_{ij}}{\sum x_{ij}}$
	貝類養殖漁業特化係數	$\frac{\sum x_{ij}}{\sum x_{ij}}$
	第 1 種共同漁業特化係數	$\frac{\sum x_{ij}}{\sum x_{ij}}$ 단, x : 漁業權數 i : 分析單位 j : 漁業形態
漁場構成	第 1 種共同漁場	面積 (ha)
	第 2,3 種共同漁場	"
	共同養殖漁場	"
漁村構成	漁村部落數	漁村部落(個)數
漁家構成	兼業漁家構成比	兼業漁家數 / 漁家數
所得構成	漁業所得依存度	漁業所得 / 漁家所得
	所 得 率	(漁家收入 - 支出) / 漁家收入

1) 小型定置網漁業 包含

2) 申告漁業包含

정하였다. 그 分類는 營漁資金所要額調查(水協中央會, 1988年)의 基準을 참조하였다.

分析單位로서 沿岸 市·郡地域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產業이 혼재되어 있는 市·郡地域을 漁場利用의 特性과 관련하여 類型區分할 때 다소의 무리는 있으나 沿岸漁村(漁村契)에 대한 資料를 郡單位로 뮤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特性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데 실제로 이용된 資料는 菲集 및 利用上의 편의를 위해 漁業勢가 비교적 강한 沿岸 市·郡에 위치한 56個 地區別水協 資料이다. 이들 水協은 전국의 77個 沿岸 市·郡의 漁村에서 漁業에 종사하고 있는 漁民들을 組合員으로 해서 구성된 組織이다. 따라서 1個 水協이 2~3個의 市·郡을 관할하는 경우, 또는 한 郡에 2個의 水協이 위치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類型化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나. 沿岸漁村의 漁場利用的 特性

分析單位인 56個 地域別水協(市·郡)의 漁場利用과 관련된 特性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18個의 變數로써 因子分析을 하였다. 因子의 추출은 경형론적 準據에 의해 固有值(Eigen Values)가 1.0 이상인 共通因子 5個를 선택하였으며, 直角回轉(Varimax Rotation)을 통해 나타난 因子積載值(Factor Loadings)를 설명에 이용하였다.

第5因子까지의 累積說明變動量은 <表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6%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因子積載值의 제곱의 합인 固有值을 다시 因子別로 합한 수치가 13.6으로서 全體變量 18중 75.6%를 점한다는 의미이며, 結果의 說明力を 나타낸다. 한편, 각 變數別 因子積載值의 제곱의 합인 共通度(Communality)는 2개 變數를 제외하고 모두 0.5以上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각 變數의 情報가 因子의 特性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

因子別 特性은 각 因子에 積載된 값이 通常的 判斷基準인 |0.30| 以上인 數值를 중심으로 變數와 因子間의 相關關係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러나 積載值가 낮더라도 符號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變數도 설명에 이용하였다. 因子積載值가 높을수록 각 因子와 變數間에는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 變數에 의해 因子의 特性이 규명된다.

① 第1因子(海藻類 養殖漁業發達度)

第1因子(F_1)의 變動說明量은 26.2%로서 5個 因子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正의 積載值로서 共同養殖漁場과 海藻類養殖漁業, 兼

表 3-9 因子構成과 積載值

變 數 名	因 子	F ₁	F ₂	F ₃	F ₄	F ₅	Commu-nality
沿近海漁船漁業(動力型)		0.25	0.82	0.13	0.30	0.00	0.83
沿岸漁船漁業(無動力型)		0.14	0.09	-0.08	0.13	0.80	0.69
海藻類養殖漁業		0.89	-0.21	-0.22	-0.15	-0.10	0.90
貝類養殖漁業		0.18	0.90	0.04	0.00	-0.01	0.84
第1種共同漁業		0.08	-0.03	0.89	-0.18	-0.10	0.84
第3種共同漁業		0.69	0.10	0.03	-0.16	0.04	0.51
沿近海漁船漁業特化度		-0.32	0.22	0.04	0.81	-0.07	0.81
沿岸漁船漁業特化度		-0.25	-0.09	-0.09	0.12	0.89	0.88
海藻類養殖漁業特化度		0.54	-0.24	-0.52	-0.46	-0.21	0.88
貝類養殖漁業特化度		-0.20	0.82	-0.14	-0.19	0.10	0.77
第1種共同漁業特化度		-0.28	-0.19	0.88	0.06	-0.11	0.92
第1種共同漁場		0.38	0.34	0.63	0.05	-0.04	0.66
第2,3種共同漁場		0.61	0.27	0.01	-0.13	0.04	0.47
共同養殖漁場		0.93	-0.05	-0.14	-0.12	-0.05	0.91
漁村部落數		0.76	0.45	-0.03	-0.06	-0.08	0.79
兼業漁家構成比		0.88	0.04	0.23	-0.25	-0.05	0.90
漁業所得依存度		-0.15	0.05	-0.09	0.71	0.25	0.60
所 得 率		0.12	0.20	0.02	-0.59	-0.08	0.41
固有值(Eigen Value)		4.71	2.80	2.44	2.05	1.60	
寄 輸 率 (%)		26.2	15.6	13.6	11.4	8.9	
累積寄與率 (%)		26.2	41.8	55.4	66.8	75.6	

業漁家構成比, 漁村部落數가 각각 0.93, 0.89, 0.88, 0.76으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그밖에 3種共同漁業, 2, 3種共同漁業, 海藻類養殖漁業特化度 등이 0.5 以上的 높은 積載值를 보이고 있으며, 1種共同漁場도 비교적 높은 數值로 나타났다. 반면에 負의 積載值는 沿近海漁船漁業特化度가 -0.32로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뚜렷한 相關性을 보이지 않

는다.

沿岸漁村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第 1 因子의 漁場利用的 特性은 漁村契의 總有漁場이 豐富히 분포한 곳으로 共同養殖漁場을 이용한 海藻類養殖漁業依存度가 매우 높으며, 이와 병행해서 소극적 漁法의 小型定置網으로 운영되는 3 種共同漁業이 성행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漁船漁業依存度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된 특징으로 多數의 地先漁民이 집중하고 있으며 兼業型漁家의 比重이 높은 전형적인 沿岸漁村地域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을 통해 第 1 因子의 특징은 「海藻類養殖漁業發達度」라고 요약할 수 있다.

② 第 2 因子(貝類養殖 및 沿近海漁船漁業의 複合發達度)

第 2 因子(F_2)의 變動說明量은 15.6 %로서 5 個 因子 중 두번째의 높은 比重을 점하고 있다. 正의 積載值로서 貝類養殖漁業 및 그 特化度, 動力型의 沿近海漁船漁業이 각각 0.90, 0.82, 0.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1 種共同漁場과 漁村部落에 대한 積載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負의 積載值로서 유의성을 보일 만큼 뚜렷한 수치는 없다. 따라서 漁業勢가 전반적으로 강한 漁業先進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인자의 특징은 貝類養殖漁業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規模의 沿近海漁船漁業이 複合的으로 병행되고 있는 形態라고 할 수 있다. 漁場構成에 있어서 1 種共同漁場의 規模가 큰 것으로 보아 이를 漁場의 상당부분이 貝類養殖漁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以上의 第 2 因子의 特성을 「貝類養殖漁業과 沿近海漁船漁業의 複合發達度」로 해석하기로 한다.

③ 第 3 因子(捕貝採藻型 共同漁業發達度)

第 3 因子(F_3)의 變動說明量은 13.6 %이다. 正의 積載值로서 1 種共同漁業 및 그 特化度, 1 種共同漁場 등이 각각 0.89, 0.88, 0.63 등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兼業漁家構成比도 다른 因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負의 積載值에 있어서 海藻類養殖漁業特化度가 -0.52 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밖의 積載值는 특별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第 3 因子의 특성은 주로 兼業型漁家에 의해 運營되는 捕貝採藻型의 1種共同漁業이 뚜렷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漁場의 性格上 海藻類를 비롯한 養殖漁業의 發達可能性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第 3 因子에 대한 해석으로서 「捕貝採藻型의 共同漁業發達度」라 命名하기로 한다.

④ 第 4 因子(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

第 4 因子의 變動說明量은 11.4 %이다. 正의 積載值로서 沿近海漁船漁業特化度와 漁業所得依存度가 각각 $0.81, 0.71$ 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沿近海漁船漁業이 0.30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無動力型漁船漁業도 일부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다. 負의 積載值로서 所得率과 海藻類養殖漁業特化度가 각각 $-0.59, -0.46$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兼業漁家構成比가 다른 因子에 비해 낮은 數値를 보이고 있다.

沿近海漁船漁業特化度가 그 件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無動力型漁船漁業을 제외하고 다른 漁業形態는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所得率이 낮은 이유는 經營費의 支出規模가 他漁業에 비해 큰 動力型漁船漁業의 特性에 기인된 것으로 특히, 積載值의 절대값이 높은 것으로 보아 漁船規模도 大型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第 4 因子의 特性은 漁業所得依存度가 높은 專業型漁家에 의해서 주로 영위되는 漁業形態로서 「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⑤ 第 5 因子(小型漁船漁業發達度)

第 5 因子의 變動說明量은 8.9 %로서 5 個 因子 중 가장 낮다. 正의 積載值로서 無動力船依存型의 漁船漁業特化度와 그 件數가 각각 $0.89, 0.80$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負의 積載值로서 뚜렷하게 낮은 相關性을 보이는 값은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積載值의 絶對값이 낮으며 또한 負

의 符號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漁業勢가 비교적 낮은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第5因子에 대한 해석으로서 「小型漁船漁業發達度」라고 命名하기로 한다.

以上에서 5個因子의 性格糾明을 통해 沿岸漁村의 漁場利用과 관련된 特性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각 變數의 因子積載值를 통해 沿岸漁村의 전반적인 特性을 綜合해보기로 한다. 먼저 漁業形態에 있어서 動力型 沿近海漁船漁業은 그 規模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는 하나 海域全般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漁業形態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小規模의 沿岸漁船漁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貝類養殖漁業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海藻類養殖漁業과 採取型共同漁業은 特定海域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前者の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

漁場資源에 있어서 각 共同漁場은 全體海域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分布하고 있는데 특히, 養殖業이 발달한 지역에서 큰 規模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共同養殖漁場은 特定海域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전체적으로 볼 때 兼業漁家構成比가 높고 海域別로 漁村의 集中度가 비교적 뚜렷하게 區分된다.

다. 因子特性의 地域別 反映度

因子別로 각 地域에 대한 認知度를 標準點數(Z一點數)로 指數化하여 平均值로 나타낸 因子得點(Factor Scores)을 통해 因子의 地域別 反映度를 파악할 수 있다. <表 3-10>은 因子點數가 0.50 以上으로 높게 나타난 地域을 因子別로 정리한 것이다.

第1因子(海藻類養殖漁業發達度)의 특성이 높게 반영된 地域에는 全南의 완도, 고흥, 진도, 신안, 해남, 여수·여천, 목포·무안, 장흥, 그리고 忠南의 대천·보령, 서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第1因子의 海域別 分布를 보면 西海域 일부 및 西南海域에 집중되어 있어 뚜렷한 海域別

表 3-10 因子別 上位得點地域의 分布

因 子	地 域 區 分
第 1 因子 (海藻類養殖漁業發達度)	全南 : 완도 (5.27), 고흥 (1.77), 진도 (1.71), 신안 (1.59), 해남 (1.32), 여수·여천 (1.08), 목포·무안 (0.66), 장흥 (0.53) 忠南 : 서산 (1.42), 대천·보령 (0.73)
第 2 因子 (貝類養殖 및 沿近海漁船漁業複合發達度)	慶南 : 충무·통영 (5.14), 고성 (1.62), 거제 (1.43), 남해 (0.69), 마산 (0.53) 全南 : 여수·여천 (3.27), 보성 (1.05), 고흥 (0.54) 忠南 : 대천·보령 (0.66)
第 3 因子 (捕貝採藻型共 同漁業發達度)	濟州 : 제주·북제주 (3.86), 서귀포·남제주 (3.03) 慶南 : 울산·울주 (1.25), 남해 (0.73) 全南 : 여수·사천 (0.70), 완도 (0.57) 江原 : 고성 (0.51)
第 4 因子 (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	江原 : 속초 (2.06), 강릉·명주 (1.41), 고성 (1.32), 동해 (1.24) 慶南 : 삼천포·사천 (1.04), 부산 (1.01), 마산 (0.92), 진해 (0.92), 거제 (0.92) 慶北 : 울릉 (2.10), 월성 (0.70), 포항·영일 (0.69) 京畿 : 인천 (1.23), 강화 (0.98) 全北 : 군산·옥구 (0.68)
第 5 因子 (無動力漁船漁業依存度)	慶北 : 포항·영일 (2.94), 영덕 (2.64), 월성 (0.62) 忠南 : 대천·보령 (0.78), 서천 (0.68) 慶南 : 부산 (0.98) 京畿 : 강화 (0.72) 全南 : 신안 (0.61) 江原 : 양양 (0.68)

註 : () 内는 地域別 因子得點임.

特性을 반영하고 있다.

第 2 因子 (貝類養殖漁業 및 沿近海漁船漁業 複合發達度)의 特性이 뚜

렷하게 반영된 地域은 慶南의 총무·통영, 고성, 거제, 남해, 마산, 全南의 여수·여천, 보성, 고흥, 그리고 忠南 대천·보령 등이다. 地域의 으로 볼 때 東南海域을 중심으로 南海域 전반에 고르게 分布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들 地域은 水產業의 歷史나 規模면에서 우리 나라의 先進漁業地域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第3因子(捕貝採藻型 共同漁業發達度)의 特性이 높게 반영된 地域은 濟州道 전체와 慶南의 울산·울주, 남해 全南의 여수·여천, 완도 그리고 江原 고성 등이다. 濟州道에 대한 因子의 반영치가 특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海女에 의한 徒手, 裸潛 등의 採取型 漁業이 이 地域에서 발달 해 왔기 때문이다. 地域의 으로 볼 때 주로 南海域에 分布되어 있다.

第4因子(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의 因子點數가 0.50 以上으로서 비교적 높게 반영되어 있는 地域은 江原의 속초, 강릉·명주, 고성, 동해, 慶北의 울릉, 포항·영일, 월성, 慶南의 삼천포·사천, 부산, 마산, 진해, 거제, 京畿의 인천, 강화, 그리고 全北의 군산·옥구 등이다. 특히 東海北部地域에서 그 特性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地域의 으로 볼 때 東海域 및 東南海域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게 펴져 있으며, 또한 沿岸都市에 집중적 으로 分布된 것이 특징이다.

第5因子(小型漁船漁業發達度)의 特성이 비교적 높게 반영된 地域은 慶北의 영덕, 포항·영일, 월성, 忠南의 대천·보령, 서천, 京畿 강화, 江原 양양, 全南 신안, 그리고 부산 등이다. 특히 東海域 일부 地域에서 因子의 特성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地域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分布되어 있다. 因子得點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이들 地域에 대한 因子의 反映度는 낮은 편이다.

以上에서 因子積載值 및 因子得點을 통해 沿岸漁村의 漁場利用과 관련된 特성을 파악하였으며, 각 因子의 特성이 높게 반영된 地域의 分布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因子別 地域分布에 있어서 得點傾向値가 높은 몇개 地域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地域은 어느 因子에 도 속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地域의 特성이란 이들 因子가 綜合的으로 연관되어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節을 달

리하여 相異한 因子로 구성된 각 地域의 一般的 特性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類似한 성격의 地域들을 共通된 型으로 그룹화하는 類型區分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3. 沿岸漁村의 類型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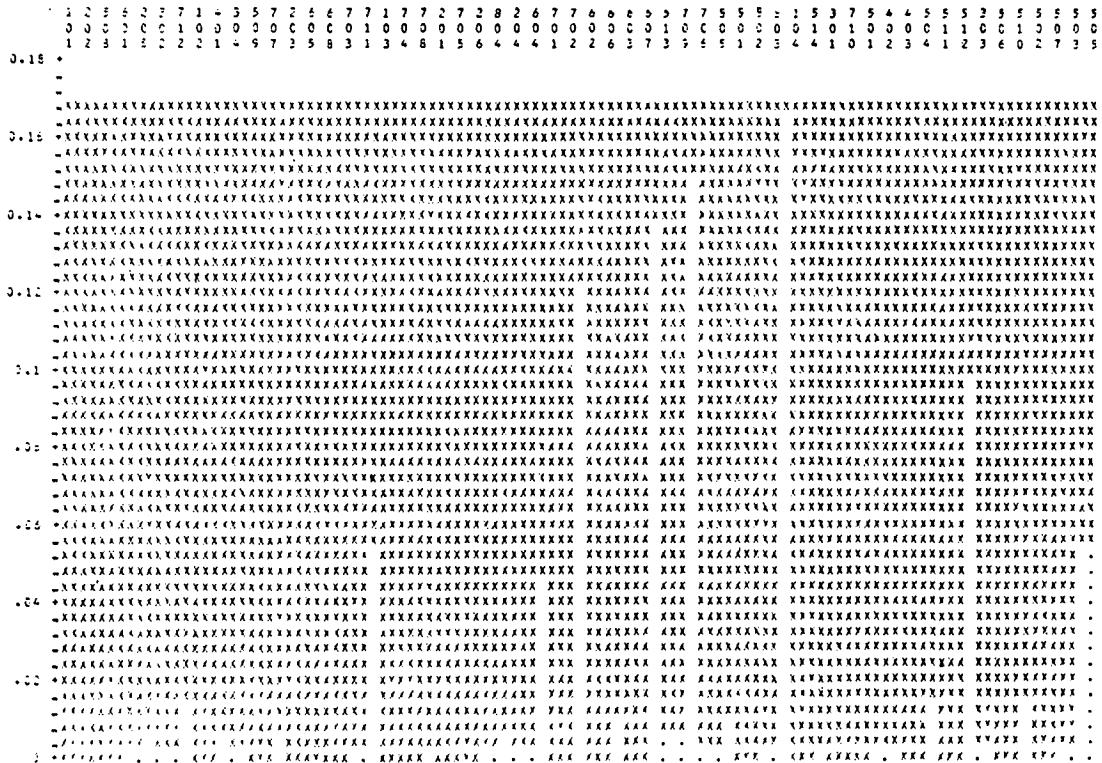
가. 類型化의 意義와 方法

沿岸漁村地域의 類型化란 다른 성격을 갖는 각각의 漁村들을 특정의 指標 및 方法을 통해 유사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類型區分을 통해 漁場利用과 관련된 상이한 특성들이 地域間에 어떻게 分布하고 있는 가를 봄으로써 沿岸漁村에 걸친 海域別特性의 反映度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類型區分은 각 漁村地域의 특성을 살린 開發·利用計劃을 수립하고 추진시키기 위해 필요시 되는 先行條件이라는 점에 그 意義가 있다.

方法으로서 因子分析에서 얻어진 5個共通因子의 地域別因子得點을 分析指標로 하여 이들 諸變數에 의해 종합적으로 파악되는 類似性에 의하여 적절한 數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 때 그룹內의 分散은 극소화되고 그룹間의 分散은 극 대화되는 方向에서 類似性을 파악하게 된다. 각 地域의 綜合的인 類似性 또는 相違性은 地域間의 거리를 나타내는 因子得點의 差異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다. 즉, 地域間의 거리가 측정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두 地域을 우선 하나로 묶어 그룹화하고, 이어 두번째로 가까운 두 地域을 그룹화하는 절차를 통해 順次的으로 그룹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地域間의 結合過程을 나타낸 것이 <圖3-1>에서 보는 分類圖(Tree Diagram)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그룹으로부터 출발하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이 때 무리하게 그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에서 분류절차를 마치면 分析對象地域이 類似性을 지닌 몇 개의 類型으로 구분되어 진다. 요컨대 分類

圖3-1 分類圖



圖에 의한 區分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9 個의 小類型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마지막 8 段階에서 완도郡(505 番)만이 9 번째 類型에 속하게 되므로 類型區分의 經濟性을 위해, 그리고 主要 漁業形態면에서 8 번째 類型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포함하는 8 個의 小分類單位로 類型數를 결정하였다.

나. 沿岸漁村의 類型區分

類型化에 따른 地域分布 및 이들 地域의 平均因子得點을 보면 <表 3-11>과 같다. 類型 1 은 海藻類養殖漁業의 發達度 (F_1) 가 특히 높은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 因子에 대한 平均因子得點의 變動係數 (Coefficient of Variance) 가 매우 낮아 이를 중심으로 한 類似性의 程度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밖의 因子는 평균적으로 볼 때 中間水準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分布度面에 있어서 地域間에 異質的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地域分布는 西海域 일부 및 西南海域에 집중되어 있다.

類型 2 는 海藻類養殖漁業 또는 貝類養殖漁業이 일부 地域에 分布하고는 있으나 그룹의 類似性으로 볼 때 沿近海漁船漁業 및 捕貝採藻型 共同漁業의 發達度가 특히 낮은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類型의 특성은 일부 養殖漁業을 제외한 全般的인 漁業勢의 弱勢型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的으로 볼 때 西海域 및 西南海域에 걸쳐 비교적 넓게 分布되어 있다.

類型 3 은 共同漁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捕貝採藻型 漁業의 發達度 (F_3) 는 매우 높으나 貝類養殖漁業과 沿近海漁船漁業의 發達度 (F_2) 는 낮은 수준에 있는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變動係數를 볼 때 이들 3個因子에 대한 同質性도 높게 나타나 있다. 地域的으로 濟州道 全域과 慶南의 울산·울주가 이 類型에 포함된다.

類型 4 는 漁業形態 중 특히 貝類養殖 및 沿近海漁船漁業의 複合發達度 (F_2) 가 두드러진 先進漁業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發達度면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나 類型 5 역시 第 2 因子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表 3-11 沿岸漁村의 類型區分

類 型		地 域 區 分	平 均 因 子 得 點				
大分類	小分類		F ₁	F ₂	F ₃	F ₄	F ₅
A	1	충남 : 서산	2.00	-0.47	0.44	-0.32	-0.20
		전남 : 목포 · 무안, 해남, 진 도, 장흥, 신안, 고흥, 완도	(28.9)	(-16.5)	(-101.9)	(-128.6)	(-115.7)
B	2	경기 : 화성	-0.20	-0.36	-0.84	-1.25	-0.51
		충남 : 당진	(-15.2)	(-36.7)	(-37.9)	(-41.8)	(-54.9)
		전북 : 김제, 부안 · 고창					
		전남 : 영광, 강진, 광양, 보 성					
C	3	경남 : 울산 · 울주	-0.35	-0.59	2.39	-0.80	-0.30
		제주 :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2.7)	(-25.4)	(40.8)	(-31.8)	(-123.0)
D	4	전남 : 여수 · 여천	-0.77	4.20	0.53	-0.03	0.16
		경남 : 충무 · 통영	(57.8)	(31.5)	(44.3)	(-23.3)	(198.2)
	5	경남 : 거제, 고성	-0.56	1.53	-0.19	0.53	-0.75
			(-55.8)	(8.8)	(-77.0)	(106.7)	(-1.7)
E	6	경북 : 영덕, 영일, 포항	-0.47	-0.13	-0.11	-0.01	2.75
			(-77.4)	(-24.7)	(-200.2)	(-644.8)	(9.2)
	7	경기 : 인천	-0.37	-0.17	0.12	1.32	-0.76
		강원 : 고성, 속초, 강릉 · 명주	(-36.5)	(-133.5)	(36.3)	(39.3)	(-59.3)
	8	경북 : 울릉					
		경남 : 마산, 진해, 삼천포 · 사천					
		경기 : 강화, 용진	-0.21	-0.07	-0.14	0.43	0.34
		강원 : 양양, 동해, 삼척	(-204.1)	(-46.7)	(-292.6)	(120.9)	(100.7)
		충남 : 대천 · 보령, 서천					
		전북 : 군산 · 옥구					
		경북 : 월성, 울진					
		경남 : 부산, 양산, 의창, 남해					

註 : () 内는 變動係數 ($CV = \text{標準偏差} \div \text{平均} \times 100$) 임.

는 점에서 크게 보아 같은 類型으로 분류될 수 있다. 地域의 으로 東南海域과 여기에 인접된 일부 西南海域에 집중 分布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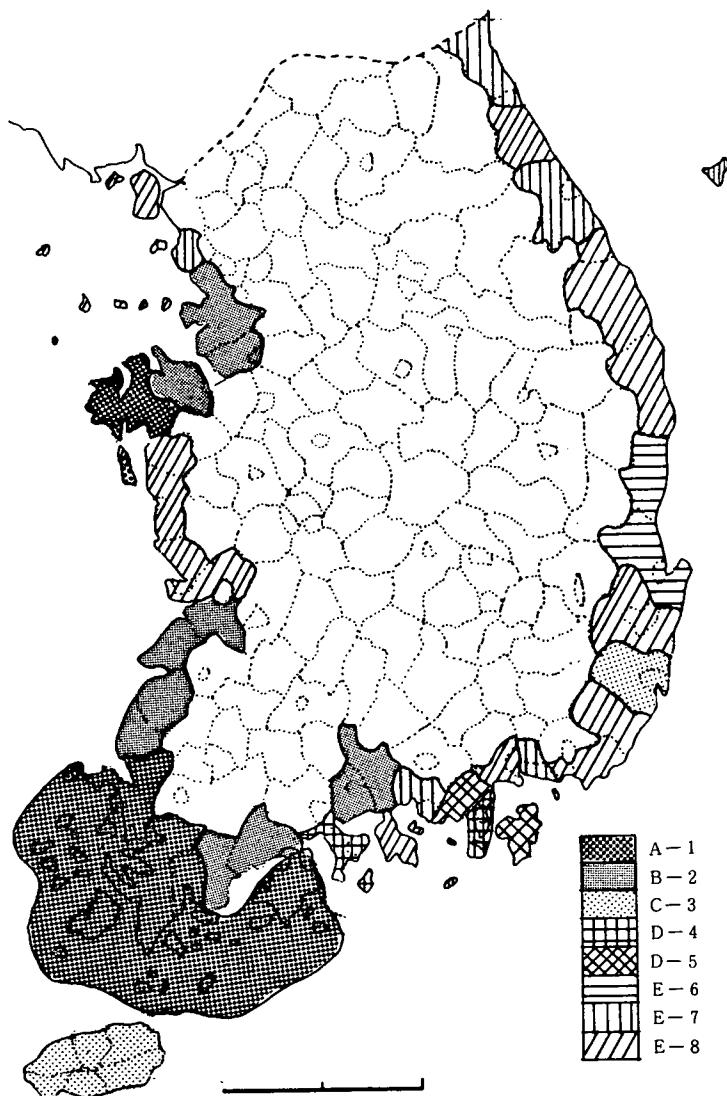
類型 6 은 小型漁船漁業勢가 두드러진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漁業形態에 대해서는 海藻類養殖漁業의 發達度가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類似性은 없다. 이들 地域의 漁業形態는 漁船漁業 중 특히 定置網漁業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地域의 으로 東海域 중부에 분포되어 있다.

類型 7 은 비교적 큰 規模의 沿近海漁船漁業勢가 강한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海藻類養殖 및 小型漁船漁業의 발달도는 낮은 수준에 있다. 그밖에 일부 地域에서 貝類養殖 또는 捕貝採藻型漁業이 발달되어 있으나 그룹의 同質性에서 볼 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地域分布는 東海域에 집중되어 있으며, 東南海域 일부에도 나타나고 있다.

類型 8 은 두드러진 漁業形態는 없으나 漁船漁業勢가 비교적 발달한 地域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룹내 地域間의 類似性의 程度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地域分布에 있어서 西南海域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漁船漁業이 海域別 特性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6,7,8 類型은 海藻類養殖漁業의 發達度가 낮고, 漁船漁業勢가 비교적 강하다는 類似性에 의해 하나의 큰 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以上의 類似區分에 따른 地域을 空間分布上에 나타내면 <圖 3-2> 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을 통해 각 類型의 分布에 海域別 特性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圖 3-2 類型의 空間分布



第 4 章

沿岸漁場利用에 있어서 水產業法과 慣行의 摩擦

1. 沿岸漁場利用에 대한 制度變遷

가. 解放以前

조선시대의 연안어장은 대체로 國有가 원칙이었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문란해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장은 대부분 왕족 또는 사대부들에 의해 私占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즉, 定置漁業, 방어刺網, 김養殖場 등의 어업은 私占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어장소유주에게 비싼 사용료를 내어야했다. 반면 地引網, 貝類採取漁場, 미역·가사리 등의 海藻類 採取漁場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작은 어장은 인근 부락민들의 共有形態가 많아 부락민의 합의에 의해 어획시기·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장이용 제도는 명확한 법제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채 단순히 慣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연안어장이용형태에 대해 명확한 法制的根據를 부여한 최초의 시도가 1908년에 제정된 「漁業法」이다. 이 법은 일본의 舊漁業法을 모

방하여 전문 14 조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일본에 의해 세워졌던 통감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어업의 종류를 免許 · 許可 · 屈出漁業(오늘날의 申告漁業에 해당)으로 명확히 구분하였는데 이것이 이 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이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난 다음 植民地水產政策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정비된 수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기본작업으로서 1911년 6월에 「漁業令」을 제정, 공포하였다. 즉, 「漁業法」은 법조가 너무 간단하여 다양한 어업구조를 수용하기 힘들어 장래의 어업발전에 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일본에서도 「明治漁業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여 식민지통치정책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漁業令」의 「漁業法」과의 차이점은 크게 보아 入漁制度의 창설, 保護區域의 설정, 漁業組合 또는 水產組合制度의 창설, 專用漁業權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專用漁業權의 창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전용어업은 地先漁民의 생업보장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한편 그 어장은 자원보호상 地先部落民의 자치적공동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團體的支配를 인정한 오늘날의 共同漁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용어업은 「漁業法」중의 第2種免許漁業이 양식어업과 전용어업으로 분리된 것으로서 양식어업은 第2種免許漁業에 그대로 존속하고 전용어업은 第6種免許漁業으로 신설되었다. 전용어업의 종류에는 捕介專用, 採藻專用, 網漁專用의 셋이 있었는데 捕介專用이란 패류 및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대상으로 삼는 전용어업이었으며, 採藻專用은 모든 해조류를, 網漁專用은 網漁業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전용어업이었다. 전용어업의 특징은 일체의 어업대상을 독점하는 漁場主義가 아니라 어획대상이 제한되는 制限主義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끌게 한다.

1929년 1월 朝鮮總督府는 어업의 급격한 발달,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업령을 제정하였는데, 「朝鮮漁業令」이 그것이다. 「朝鮮漁業令」은 일제말기까지 뿐 아니라 해방후 상당한 기간까지 그대

로 사용되었다. 朝鮮漁業令은 漁業令에 비해 많은 부분이 정비, 보강 또는 신설개정되었다. 면허어업의 종류는 漁業令과 다른 것이 없으나 名稱이 모두 바뀌어 되어 漁業令에서 第6種免許漁業으로 되어 있던 전용어업도 비로소 「專用漁業」으로 그 명칭이 조문상에 명시되었다.

朝鮮漁業令의 또 다른 특징은 어업권어업에 있어서 物權的, 財產權的性格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어업의 발전과 함께 漁業權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어 質權에 관한 규정외에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케 하였으며, 漁業權分割制度의 창설, 어업권공유자의 보호규정의 신설 및 漁業權과 入漁와의 관계조정 등도 포함되었으며, 면허기간도 종전의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제말기로 접어들면서 專用漁業權의 면허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용어업권에 의하여 수많은 한국영세어민을 저생산성의 지선어장에 묶어 두고 저렴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어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함이었던 때문이다.

나. 解放以後

① 水產業法의 制定

해방 이후의 혼란기와 6·25를 거치는 동안 朝鮮漁業令의 틀을 벗지 못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수산업에 새롭고 건전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수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53년 9월에 「水產業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해방후 8년만에 비로소 우리 손으로 제정된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朝鮮漁業令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朝鮮漁業令과 전후 일본의 新「漁業法」을 일부 모방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어업의 종류, 내용 등에 있어서 종전의 朝鮮漁業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으며, 면허취득의 우선순위 등은 1949년에 공포된 일본의 新漁業法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장이용과 관련하여 朝鮮漁業令과의 차이는 전용어업을 共同漁業으로 명칭변경하고, 어업권의 면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지역어민이 조

직하는 법인에 어업권의 우선순위를 주고 어업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불 인정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된 정도였다.

한편 수산제도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본법은 그 목적을 ‘수면의 綜合的 利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에 두므로써 수산업을 產業的側面에서의 생산력 제고와 福祉的側面에서의 민주화 도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법취지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업구조를 包括的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방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사회전반의 신선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條文으로만 명시되어 민주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 즉 농업의 토지개혁과 같은 조치를 수반하지 못한 채 구질서를 그대로 수용함으로 훗날 연안어장이 용 이해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마찰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던 수산업법은 그 이후 12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이슈로 등장한 제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갔는데 일관된 법철학없이 시류에 편승함으로 연안어장이 용관련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도 있었다. 연안어장 이용과 관련된 수산업법의 주요개정은 3次, 7次, 8次, 9次, 10次 등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즉, 1963년의 3次改正은 공동어업과 관련하여, 1971년의 7次改正과 1972년의 8次改正은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 등과 관련하여, 1975년의 9次改正과 1981년의 10次改正은 어촌계의 어업권 향유 등과 관련하여 각각 개정되었다. 이하에서 이런 改正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第3次改正

1963년 4월의 水產業法 第3次改正은 공동어업의 種類와 어업권의 擔保에 관한 개정이 주된 내용이었다. 즉, 이 때부터 공동어업은 비로소 오늘날의 第1種共同漁業, 第2種共同漁業, 第3種共同漁業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는 수산업법 제정 당시 면허어업이었으나 공동어업에는 미포함되었던 定所引網漁業, 定所敷網漁業, 定所集魚漁業이 삭제되고 대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第2種共同漁業 및 第3種共同漁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어업권의 擔保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정 당시 移轉・擔保를 행정관청의 인가없이 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을 移轉에 대해서만 제한함으로 擔保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어업이 第1種, 第2種, 第3種共同漁業으로 분리된 것은 1962년의 水產業協同組合法이 공포된 후의 일로서 이에 따라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共同漁業權의 범위안에서 각자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어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地先漁業에 대한 생계보장측면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어업권의 자유로운 擔保가 가능하게 된 것은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인의 어업권집중금지조항을 廢止한 것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연안어장에 있어서 차본에 의한 지배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③ 第7次改正

1971년 1월의 第7次改正은 어업권의 財產權的性格變化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들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부분적으로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는 10년 이내로 규정되었던 免許有效期間을 20년으로 고정시킨 것을 들 수 있고,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으로는 종래 어업면허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후 일단 어업권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再免許를 내게 하였다. 또 어업권의 移轉・擔保를 제한적으로 가능케 한 것도 재산권적 성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업권의 移轉은 3次改正時와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의 인가후 가능토록 하였으므로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어업권의 擔保는 3次改正時 자유롭도록 한 것을 공동어업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시키고 양식 및 정치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취득 1년후가 되어야 가능케 하였다.

한편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再免許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에 경합이 붙더라도 종전의 어업권자에 우선적으로 면

허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다소나마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중요한 개정내용으로 새로이 内水面漁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당시 對日輸出品으로 채취가 성행하던 淡水藻類採取漁業을 면허어업에 포함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内水面에서 행해지는 공동어업을 第4種共同漁業으로 정하여 역시 면허어업에 포함시켰다.

그 외의 개정으로 양식어업에 있어서 品目別養殖方法이 이 때 고시되었다. 또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하부기관에서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法施行令 第1條 2項이 신설되어 어업면허는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이 되었다.

④ 第8次改正

1972년 10월의 第8次改正도 第7次改正과 마찬가지로 어업권의 財產權的 性格變化가 주된 내용이었으나 第7次改正이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다소 제한한데 반해 여기서는 다소 강화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즉,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에 대해 취득 1년 후라야 擔保가 가능하던 것이 언제든지 擔保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업권 소멸 후의 再免許制度도 10년 연장 후 단순한 再免許制度로 하였다. 이와 같이 어업권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의 잦은 변화는 일관된 정책의지 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므로 연안어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한편 8次改正時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本考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漁業協同組合(현재의 水產業協同組合)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法條文上으로는 漁村契도 漁協과 마찬가지로 최우선순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非法人인 어촌계에 면허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法人格이 부여된 漁協이 실제적인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法은 만들어 놓고도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촌계를 免許取得主體로 하는데 자신을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어쨌든 이러한 개

정은 어민단체에 대해 漁場管理的 機能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第 9 次改正

1975년의 第 9 次改正은 수산업법제정 이후 가장 개정폭이 커졌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부속법령개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1970년대 漁業制度整備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은 당초 연근해어업의 발전, 변천에 따른 어업간의 秩序確立을 꾀하고, 어장의 한계성에 따른 지속적 어업생산력 확보를 위해 자원 및 어장의 綜合的 利用管理對策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地先漁場에 대해서는 당시 전국으로 확산되던 어촌의 새마을사업운동과 연계하여 어촌부락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協業漁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주된 취지였다.

이 결과 第 8 次改正時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다하여 어업권취득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非法人漁村契가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4條 4項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總有로 한다’고 하여 종래 漁協 또는 法人漁村契만 취득하던 어업권을 非法人漁村契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總有概念의 도입은 어촌계를 지선어장의 면허주체로서 등장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주로 공동어업, 해조류양식어업 등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면허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종전 漁協(水協)이 면허주체일 때와 어업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제적으로 漁場行使를 하고 있던 漁村共同體(또는 自然部落)의 구성원으로서는 그다지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어촌계가 점차 廣域化, 經濟團體化됨에 따라 어촌 공동체와 어촌계의 관리는 심해지고 연안어장행사를 둘러싼 마찰도 심해지게 되었다. 또 비법인어촌계의 어업권취득과 아울러 地先漁場에 대해서는 地先漁村契에 우선 면허한다고 하여 어촌계의 권리를 대폭 강화시킨 반면 공동어업에 대한 資源造成義務條項을 삽입하므로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때부터 地先漁場의 概念을 둘러싼 論爭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의 동개정의 내용으로는 第7次改正에서一律的으로 10년으로 된漁業免許有效期間이 다시 5~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내수면어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수면에 관련된 어업규정이 「內水面開發促進法」에 포함되므로 어업권의 종류가 변경되었다. 또 水產業法施行令에서는 「漁場利用開發承認制度」를 신설하였다.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어업의 특성에 따라 5~10년으로 다르게 규정된 것은 어장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漁場利用開發承認制度의 신설은 당초 어업면허의 무질서한 남발을 막고 지역별어장이용관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연안어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취지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시행과정상 第7次改正에서 하부기관으로 위임된 면허업무와의 모순점으로 점차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⑥ 第10次改正

1981년 第10次改正의 주된 내용은 第9次改正 이후 논란이 되어 왔던 地先漁場의 概念을 법제화하였다. 즉, 어촌계에 우선 면허하는 어장을 第1種共同漁業漁場內로 한정하여 제1종공동어장내의 개인면허 양식 또는 정치어업은 면허기간 만료시 어촌계에 우선 면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地先漁民들의 반발을 가중시켜 地先漁場의 概念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論爭은 끝이나지 않고 있다.

그외의 개정내용으로는 第3種共同漁業의 어장면허가능구역을 서해구(경기, 충남, 전북)에 한해 2,000m로 확장하였으며, 共同漁場에 대한 入漁料 징수를 시장·군수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안어장이용과 관련한 水產業法의 改正過程을 요약해 보면〈表4-1〉과 같다. 이를 개괄해서 보면 1970년대 이후의 수산업법 개정은 지선어민에 대한 社會福祉의側面에서의 고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분적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업권의 어촌계집중을 유도하여 연안어장은 다수지선어민이 주체가 되도록

第 4 - 1 漁場利用과 관련된 水產制度의 變遷

연 도	주 요 내 용
～ 1908 解 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漁業法」제정 (최초의 어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확립 (1~5종 면허어업)
1911 以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漁業令」제정 (식민지 어업제도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專用漁業權 제도 신설 - 어업조합제도 마련 (전용어업권의 취득 및 관리주체)
～ 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漁業令」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어업권제도 강화
-----	-----
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어업권을 공동어업권으로 명칭변경 - 어업면허 우선순위 신설
1963 （ 解 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 3次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어업을 1, 2, 3종으로 구분 - 공동어업의 수심한계를 각령으로 지정 - 어업권의 담보를 자유롭게 함
1971 以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 7次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어업의 종류 변경 (내수면 어업추가) -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고정 - 어업권의 이전 담보를 제한 (공동어업: 금지, 기타: 1년후 가능) - 양식어업의 품종별 양식 방법을 고시
1972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 8次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어업 이외 어업권의 담보를 자유롭게 함 (재산권 성격강조)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 9次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어업규정 삭제 - 법인격 없는 어촌계도 총유형태로 어업권 향유 - 지선어장은 지선어촌계에 우선면허 - 공동어업의 자원조성 의무화 - 「어장이용 개발 승인제도」의 신설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產業法 10次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우선면허어장을 제1종 공동어장 내로 한정 (지선어장의 개념축소)

록 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업법의 개정이 전체적인 漁業構造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대외적으로 新海洋秩序時代의 개막과 沿近海漁業資源의 減少가 국내 漁撈漁業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養殖漁業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체적인 漁業構造는 수산업법 제정 당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수산업법은 잣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골격에서는 제정 당시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다양화된 漁業階層間, 漁業種類間, 地域間 등의 마찰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산업적으로 한단계 레벨업 (level up) 된 業種이 있는가 하면 법제정 당시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前近代的인 어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오히려 극단적인 과리현상조차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자본제적인 生產效率性의側面과 다수어민에 대한 社會福祉的인側面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양측면을 동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법제도로 전개되어 양측면의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어촌계와 수협이 廣域化됨으로 인해 어장의 所有·利用關係의 變化는 지선어민들의 내부적인 마찰을 야기시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2. 水產制度와 慣行의 摩擦

가. 漁村契의 漁場利用

1975년 第9次 水產業法改正에 의해 非法人漁村契도 모든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법인어촌계는 그 자체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민법에 의한 物權의 所有主體가 되지 못해 그 취득형태는 總有라는 概念下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법인격이 있던 水協 또는 法人漁村契에 면허된 어업권을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가 행사료를 납부하고行使하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1975년 이전부터도

沿岸漁場利用의 主體는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 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地先漁場에 대해서는 어촌공동체가 慣行에 따른 行使의 既得權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면허취득 주체여부에 불구하고 어촌공동체가 연안어장이 용의 實際的 主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부터 어촌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던 비법인 어촌계가 면허취득주체로 등장하므로 그 때부터 漁村契가 명실상부한 연안어장이 용의 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共同漁業權은 당초 법으로 제정될 때부터 漁村契 또는 漁村共同體의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공동어업은 물론이거나와 공동어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시대의 專用漁業조차도 그 설정목적을 연안다수어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두었다. 다만 이후 공동어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어촌계조직이 法定組織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용주체는 어촌공동체에서 자연히 어촌계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가 공동어업의 면허 또는 이용주체로 설정된 데에는 크게 다수지선어민에 대한 國家의 社會福利的 機能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어촌계(1962년 이전에는 어촌공동체)에 대한 經濟的인 與件造成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연안어촌의 어업구조는 大規模資本制漁業과 零細漁家漁業의 2종구조로 構造的인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어민이 독자적재생산을 영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공동어업은 이러한 영세어가들에게 지선어장을 공동으로 독점이용케 하여 그들에게 物的生活ter전을 부여함으로써 漁村의 近代化와漁業構造의 2重性을 완화하며, 그로 말미암아 國民生活의 均衡的 發展을 이루하려는立法政策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國家의 社會福利的 機能側面이 라면 어촌계에 대한 經濟的인 與件造成側面은 우리 나라 수협운동이 전통적인 契의 일종인 어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契가 가지고 있는 自助的인 協同精神, 곧 契의 殖活性이란 본질적 기능과 자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촌계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것이다.

공동어업 이외에 어촌계에 이용되고 있는 연안어업에는 總有型養殖漁

業이 있다. 總有型養殖漁業이란 수산업법상에는 양식어업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1975년 수산업법개정시 어촌계의 면허취득어업은 그 취득형태를 總有로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漁業共同體의 生產方式에 의해 주로 영위되는 양식어업을 말한다. 定置漁業도 과거에는 총유형태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점차 어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촌구조가 근대화됨에 따라 私的 利用形態와 總有形態로 분화되어 總有形態는 1963년 第3次 水產業法改正時 많은 부분이 第3種共同漁業에 포함되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私的 利用形態로 존립하고 있다.

원래 總有(Gesamteigentum)라는 용어는 共同體의 계르만的 形態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경지·삼림·초지 등의 소유형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단체적 색채가 강한 소유관계라고 할 수 있다. 총유에서 경지·삼림 또는 초지 등의 관리는 共同體가 담당하는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은 사용·수익의 권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使用·收益權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 있을 때만 부여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사용·수익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구성원들간 동등한 使用·收益權은 있지만 소유에 대한 持分權은 없는 것으로서 지분 자체가 양도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共有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이러한 總有型養殖漁業의 대상이 되는 養殖品目은 김, 미역 등 海藻類의 대부분과 撒布式 및 投石式 貝類養殖의 일부가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완만한 간사지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해 양식어업의 역사가 오래된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나. 漁業權行使를 둘러싼 現實問題

연안어업은 다양한 歷史的 展開形態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기준에 의해 '연안어업을 명확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안어업을 형태별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漁業共同體의 歷史的 展開정도, 漁撈學의 方法, 制度의 方法 등이 있으나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制度의 分類方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제도적인 분류는 수산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정책집행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는 漁村社會構造를 수용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형태로 존속할 경우 어업 또는 어촌현실과 어업제도는 괴리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당초의 정책 목표수행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비단 수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어업 또는 어촌현실과 제도와의 마찰이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어 중대한 漁村問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연안어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免許漁業은 그 실체가 어업권으로서 社會福利的 機能과 生產的・產業的 機能을 수행하려는 것이 그 본래적 정책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리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共同漁業이 있고 생산적・산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養殖 또는 定置漁業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11년 일제 하의 「漁業令」 또는 1927년의 「朝鮮漁業令」을 그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1953년에 수산업법이 창설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본적인 형태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構造變化 및 意識變化를 수용하지 못한 채 현실과 제도가 괴리되어 당초의 사회복리적 기능과 생산적・산업적 기능은 충분히 發揮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변화된 漁村社會構造와 水產制度가 어떤 점에서 마찰을 야기시키는 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① 第1種共同漁業

共同漁業의 주된 의의는 어업권의 사회복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지 만 그 외에 어촌공동체에 대한 경제적인 예전조성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앞절에서 살펴 보았다. 이 두 기능은 의관상으로는 상호분리적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상호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豐富한 生產潛在力を 가진 공동어장이 존재한다면 공동체 구

성원은 공동어장에서 많은 어업소득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경제적인 여건조성을 위한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반면 공동어장의 生產潛在力이 미비하다면 공동체구성원의 어업소득은 물론 공동체자체의 경제적 여건조성의 여지도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生產潛在力의 공동어장이라 할지라도 共同體構成員의 個別漁業所得에 치중해 버리면 共同體自體의 경제적 여건은 작아지는 반면, 共同體自體의 경제적 여건강화에 치중해 버리면 共同體構成員의 個別所得效果는 작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양면의 기능을 가지는 共同漁業은 어촌공동체의 오랜 역사성과 지역간의 다양성에 따라 제도가 가지는 당초의 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형태로 歪曲・變質 運營되므로 마찰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를 類型別로 보면 생산방법의 변천에 따른 문제, 어장 소유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생산방법의 변천에 따른 문제는 契約生產의 문제로서 극단적일 경우 濱賣의 형태로까지 나타나게 되며, 漁場所有問題는 어촌공동체에 공동어업권이 全無하거나 있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장을 둘러싼 분쟁이 야기되는 문제이다.

공동어업의 概念에서 볼 때 第1種共同漁業의 생산방법은 공동체구성원들이 직접생산에 참여하여 어업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발달로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됨에 따라 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의 채포에 의존하는 제1종공동어장에서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자 공동어장에의 참여를 점차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또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採捕方法이 존재하고, 수심이 깊은 곳은 단순한 徒手, 裸潛으로는 채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특수한 장비와 기술을 지닌 소수의 專業行使者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때 공동어장에 참여하는 자는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에 일정한 行使料를 내게 된다.

전문화된 소수의 行使者가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하거나 심할 경우 濱賣에 의한 行使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總有에 의한 共同生產 또는 共同經營을 포기하는 것

으로서 다수지선어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설정되었던 共同漁業의 본래의 意義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 契約生產의 契約條件이 행사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나 濱賣의 경우, 採捕權者는 채포계약 기간중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採捕禁止體長, 採捕禁止動植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채취하여 연안어장의 資源減少原因이 되고 있다.

한편 共同漁業免許權者는 어장관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水產業法施行令 第 14 條 1 項에 의하면 第 1 種 내지 第 3 種共同漁業權者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장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磯洗(바위닦기) · 築磯(경운, 갭토) 와 投石(돌멩기), 魚付林의 조성, 種苗의 投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다(表 4-2)。이는 공동어장의 행사에 대한 의무조항으로서 원래 국가의 總括所有下에 있는 어장을 設權處分으로 그 利用權을 위임한 대신 반대급부로서 管理라는 의무조항도 함께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면허권자는 면허어장의 행사에 대해 성실히 의무조항을 이행해야 하나 계약생산, 濱賣 등과 같이 행사권을 일부 채취권자에게 넘겨버린 공동체는 의무조항에도 자연 등한시하여 利用(權利)과 管理(義務)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된다.

第 1 種共同漁業의 漁場所有問題는 명확한 事例類型別로 구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개 어촌공동체 또는 어촌계에 제 1 종공동어업권이

表 4 - 2 第 1 種 및 第 3 種共同漁業의 漁場管理 義務

種類	漁場面積에 대한 造成比率		造成回數	
바위닦기	1 % 이상		毎年 1回 以上	
돌멩기	"	"	"	
나무심기				
경운·갭토	"		"	
種苗 撒布	底質別	種苗의 種類	施設基準	
			施設規模	漁場面積에 대한 施設比率
	干潟地	고막, 바지락, 가무락, 기타 피조개, 전복, 가리비	1 ha當 種苗撒布量 50 ~ 100 kg	30 % 以上
	淺海		1 ha當 種苗撒布量 50 ~ 100 kg	30 % 以上

表4-3 道別 第1種共同漁業權 有無別 漁村契數, 1986

單位：個，%

	總漁村契數 (A)	無 (B)	有			B/A	D/C
			小計 (C)	1 件	2件以上(D)		
全國	1,518	629	889	601	288	41.4	32.4
京畿	76	24	52	24	28	31.6	53.8
江原	61	4	57	42	15	6.6	26.3
忠南	69	43	26	10	16	62.3	61.5
全北	52	23	29	14	15	44.2	51.7
全南	746	456	290	182	108	61.1	37.2
慶北	134	4	130	121	9	3.0	6.9
慶南	295	72	223	143	80	24.4	35.9
濟州	85	3	82	65	17	3.5	20.7

資料：水協中央會，漁村契名簿，1987。

없는 문제, 어촌계간 또는 어촌계내 어촌 공동체 간의 경계선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수협보유어업권의 漁村契未移讓問題 등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 첫번째 문제는 많은 어촌계에 제1종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으므로써 제1종 공동어업권이 없는 어촌계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서 社會福利增進이라는 공동어업설정의의에 비추어 볼 때 어촌계간 또는 지역간 不平等 내지 不均衡의 문제가 된다. 즉, 〈表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어촌계 1,518 個 중 41.4 %에 해당하는 629 個 어촌계에 제1종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제1종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58.6 %의 어촌계와의 사이에 不平等要因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地域別로 보면 脆弱地區型 漁村契가 40~50 %에 달했던 西海域 또는 西南海域에 제1종 공동어업이 없는 어촌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 전남의 경우는 60 % 이상, 경기, 전북의 경우는 30~40 % 이상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東海域 또는 東南海域의 3~20 %에 비해 심한 地域間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 지역 중 제1종 공동어업권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2件 이상 있는 어촌계비율(表에서 D/C)이 37.2~61.5 %로 다른 여타지역의 6.9~35.9

%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지역 내부적으로도 漁村契間의 不平等要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인 어촌계간 또는 어촌계내 어촌 공동체 간의 경계선으로 인한 漁場紛爭은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야기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양식어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어촌계에 어업권면허취득이 가능해지게 되자 어촌계의 빈번한 新設, 分割, 統合 등의 과정에서 經濟性이 높은 어장에 대해 서로 다른 地先을 주장하므로서 다툼이 야기되었다. 이런 사례는 특히 서해안의 바지락, 백합 등 撒布式貝類가 많이 채포되는 어장과 동해안의 전복어장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같은 漁村契內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漁村共同體가 존재할 경우 法上의 免許區域과 行使慣行과의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이런 사례는 연안어업의 역사가 깊어 다양한 漁村共同體가 많이 존재하는 南海岸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漁村紛爭問題에서 뺄 수 없는 문제가 漁業權의 水協保有問題이다.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이후의 일로써 그 이전은 비법인어촌계가 어업권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 비법인어촌계도 어업권을 보유할 수 있게됨에 따라 점차 수협과 어촌계의 대립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第1種共同漁業 뿐만 아니라 第2, 3種共同漁業, 總有養殖 및 定置漁業도 같이 해당되는 문제가 되었다. 다만 第1種共同漁業의 경우에는 地先漁民들의 所得效果가 크기 때문에 점차 어촌계로 이양을 시도하여 현재는 부분적인 곳을 제외하고 모두 어촌계로 이양되었다(表 4-4). 제외된 곳으로는 어촌계이 양시 다수어촌계의 경합이 벌어져 紛爭이 야기될 우려

表 4-4 海域別 第1種共同漁業 所有主體別 漁場面積, 1987

單位 : ha, %

	全 國	東 海 區	西 海 區	南 海 區
計	99,721(100.0)	20,529 (100.0)	9,295(100.0)	69,897(100.0)
漁村契 水 協	95,965 (95.8)	20,529 (100.0)	8,199(88.2)	67,237 (96.2)
	3,756(4.2)	-	1,096(11.8)	2,660(3.8)

資料 : 水產廳.

가 있거나 埋立豫定地域, 關係法規에 저촉되는 지역 등이다.

② 第 2 , 3 種共同漁業

제 1 종공동어업과 마찬가지로 第 2 , 3 種共同漁業의 現實問題도 공동 어업의 生産방법변화에 따른 共同漁業의 意義喪失과 漁場所有問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공동어업의 의의상실문제는 第 2 , 3 種共同漁業生產方法의 특성에 따라 漁場利用形態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漁場所有問題는 제 1 종공동어업에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

第 2 , 3 種共同漁業의 操業形態는 前近代的인 漁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小型漁具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生產性이 낮은 상태에 있으며, 어업자원 특히, 沿岸洄遊性漁業資源이 감소함에 따라 生產性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제 2 , 3 종공동어업은 수산업법제 정당시에는 定所引網漁業, 定所數網漁業, 定所集魚漁業으로서 공동어업에는 미포함되었던 면허어업이었다. 따라서 조업성격상 주로 個別經營形態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63년 제 3 차수산업법개정시 제 2종 및 제 3 종공동어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선어민들의 共同生產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共同漁業으로서의 存立可能性은 산업화가 덜 이루어졌을 때의 일로서 점차 산업화가 진행되어 소득기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共同生產, 共同分配의 生產方式은 곧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第 2 , 3 種共同漁業의 열악한 生產성과 더불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제 2 , 3 종공동어업은 個別經營形態로 변화되어 몇몇 行使者가 어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존립하고 있다. 즉, 행사자들은 면허권자인 어촌계 또는 수협에 行使料를 납부하는 대신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행사자에 의한 독점적어장이용은 共同漁業의 意義를 상실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사자간에 심한 생산경쟁을 유발시켜 不法統數增大, 網目크기違反, 禁漁期違反 등과 같은 不法漁業을 만연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다. 다음으로 漁場所有問題는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에 第 2 , 3 種共同漁

表 4 - 5 道別 第2, 3種共同漁業權 有無別 漁村契數, 1986

單位 : 個 , %

	合 計	保有 漁村契數	未保有 漁村契數
全 國	1,518 (100.0)	446 (29.4)	1,072 (70.6)
京 畿	76 (100.0)	5 (6.6)	71 (93.4)
江 原	61 (100.0)	23 (37.7)	38 (62.3)
忠 南	69 (100.0)	30 (43.5)	39 (56.5)
全 北	52 (100.0)	30 (57.7)	22 (42.3)
全 南	746 (100.0)	213 (28.6)	533 (71.4)
慶 北	134 (100.0)	80 (59.7)	54 (40.3)
慶 南	295 (100.0)	64 (21.7)	231 (78.3)
濟 州	85 (100.0)	1 (1.2)	84 (98.8)

資料 : 水協中央會 , 漁村契名簿 , 1987

業이 없는 問題와 과대한 水協免許問題가 있다. 이 중 前者는 제 1종공동어업과 마찬가지의 문제이나 後者는 그 정도와 형태가 제 1종공동어업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에 第 2, 3種共同漁業이 없는 것은 <表 4 - 5>의 道別 第 2, 3種共同漁業 有無別 漁村契數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전체 어촌계의 70.6 %가 第 2, 3種共同漁業이 없으며, 29.4 %만이 보유하고 있다. 제 2, 3종공동어업이 제 1종공동어업보다 漁村契保有比率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제 1종공동어업이 주로 海藻類 또는 定着性水產動物을 생산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제 2, 3종공동어업은 沿岸洄遊性魚種을 주생산대상으로 하여 地形的制約要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록 지형적으로 適地라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아 지선어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第 2, 3種共同漁業權의 水協免許問題는 제 1종공동어업권과 마찬가지로 당초 비법인어촌계에는 어업권이 면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제 1종공동어업과 달리 비법인어촌계가 면허취득주체가 될 수 있었던 1975년 이후에도 수협은 어촌계에 이양하지 않고 그대로 어업권을 보유하여 1987년 현재 第 2, 3種共同漁業의 39.6 %를 보유하

表 4-6 海域別 第2, 3種共同漁業 所有主體別 漁場面積, 1987

單位 : ha , %

		全 國	東 海 區	西 海 區	南 海 區
合 計	計	47,632 (100.0)	2,182 (100.0)	3,627 (100.0)	41,823 (100.0)
	漁村契	28,785 (60.4)	2,182 (100.0)	3,387 (93.4)	23,216 (55.5)
	水 協	18,847 (39.6)	-	240 (6.6)	18,607 (44.5)
第 2 種 共同漁業	小 計	3,674 (100.0)	371 (100.0)	-	3,303 (100.0)
	漁村契	2,571 (74.9)	371 (100.0)	-	2,380 (72.1)
	水 協	923 (25.1)	-	-	923 (27.9)
第 3 種 共同漁業	小 計	43,958 (100.0)	1,811 (100.0)	3,627 (100.0)	38,520 (100.0)
	漁村契	26,034 (59.2)	1,811 (100.0)	3,387 (93.4)	20,836 (54.1)
	水 協	17,924 (40.8)	-	240 (6.6)	17,684 (45.9)

資料 : 水產廳 .

게 되었다. 즉, <表 4-6>에 의하면 第 2 種共同漁業의 경우 25.1%를 第 3 種共同漁業의 경우는 40.8%를 水協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역별로 볼 때 第 2, 3 種共同漁業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南海區에 수협 보유면적이 많다.

이와 같이 第 2, 3 種共同漁業의 경우 많은 부분이 어촌계에 이양되지 못하고 수협면허로 남아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즉, 제 2, 3 종 공동어업이 지구별수협의 收入源이 되고 있는 점과 면허는 났지만 未行使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전자는 목이 좋은 最適地의 第 3 種共同漁業에서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共同漁業의 本質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또 후자는 당해 공동어업권의 經済性이 너무 낮을 경우 행사자가 없어 어촌계에 이양하더라도 행사료 수입이 없게 되고 이양에 따른 절차만 복잡한 뿐만 아니라 이양에 따른 管理問題가 수반되므로 어촌계가 이양받기를 꺼리게 된다. 이것은 第 2 種共同漁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③ 總有養殖 및 總有定置漁業

현행 수산업법에 總有(型)養殖漁業 또는 總有(型)定置漁業이라는 概念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概念에 의한 水產政策은 엄밀하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산업법상에는 水產學的인 관점의 생 산형태분류방법인 共同漁業, 養殖漁業 및 定置漁業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으므로 연안어업정책은 주로 이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식 및 정치어업은 비록 수산학적인 측면에서는 생산형태가 유사한 종류끼리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社會經濟的인 측면에서의 漁場利用形態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면허취득형태가 근대자본주의의 기본 구성원리인 私有形態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존재하였던 總有形態를 취하는 것이 있어 養殖 또는 定置漁業으로 통일된 어업형태속에 서로 다른 經濟原理가 적용되어 있다.

이 중 前者는 비록 수산업법의 잣은 개정으로 지배력에 다소 변화는 있었지만 漁業權의 財產權의 性格이 꾸준히 유지되므로 면허주체는 주로個人이나 法人이 되어 왔다. 그 결과 生產效率性이 향상되어 양식 및 정치어업이 경제적·산업적으로 발전되는 기초가 될 수 있었다. 後者 즉, 양식 또는 정치어업에 總有形態를 취하는 것은 어업공동체의 다양한 歷史性에 기인하고 있다. 原始漁業共同體가 사회의 분화,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어촌에 實存하였는데 이를 제도의 틀로 뮤는 과정에서 共同體의 分化程度는 고려되지 않고 生產方法側面에서만 고려됨으로 利用方法面에서는 오히려 공동어업에 속할 성질의 것이 양식 또는 정치어업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非法人漁村契의 漁業權所有로서 그 소유형태는 總有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어업권면허상으로는 漁村契가 면허주체가 될 수 있고, 이용형태상으로는 總有에 의해 어촌계원 또는 어촌공동체구성원 모두가 平等性에 입각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여전히 養殖漁業 또는 定置漁業으로 분류되어 어장이용과 정책시행과의 사이에는 항상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양식어업이 발달할수록 經營體當 生

產規模는 커져 資本制的 또는 企業的 性格이 뚜렷해지는 品種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양형태의 괴리는 커져만 갔다.

한편 양식 및 정치어업이 總有型인가 아니면 個人型인가 하는 것은 양식 및 정치어업의 다양한 역사성으로 인해 品目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表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미역 등 海藻類에 있어서는 어촌계 또는 수협이 전체면허면적의 90% 가까이 면허취득하여 주로 總有型으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굴, 피조개 등貝類와 定置漁業은 전체면허면적의 60~90%를 개인이 면허취득하여 주로 個人型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總有養殖 및 總有定置漁業은 실제로 海藻類의 경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總有型漁業의 현실과 제도마찰문제는 海藻類養殖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總有養殖漁業의 제도와 현실마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法上의 免許地와 實際利用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실제어장이용은 면허된 어장구역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면허된 어장구역이 현실적인 漁場適地와 상이하거나 면허취득 이전부터 儻行으로 어장을 이용해 왔던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無免許地養殖으로 不法漁業에 해당하나 儻行이 뿌리깊게 지켜져 오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表 4-7 養殖 및 定置漁業 免許者別·品目別 漁場面積, 1986

單位 : ha, %

		合計	漁村契	水協	個人
養殖	計	101,189(100.0)	36,882(36.4)	25,315(25.0)	38,992(38.5)
	김	44,451(100.0)	20,016(45.0)	18,237(41.0)	6,198(13.9)
漁業	미역	9,009(100.0)	7,210(80.0)	660(7.3)	1,139(12.6)
	굴	10,736(100.0)	2,199(20.5)	1,733(16.1)	6,804(63.4)
	피조개	8,831(100.0)	199(2.3)	382(4.3)	8,250(93.4)
	기타	28,162(100.0)	7,258(25.8)	4,303(15.3)	16,601(58.9)
定置漁業		10,644(100.0)	1,816(17.1)	123(1.2)	8,705(81.8)

資料 : 水產廳 .

이와 같은 사례의 원인은 總有型養殖漁業을 個人免許漁業과 구분하지 않고一律的으로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즉, <表 4-8>에서와 같이 양식어업은 免許件當 일정한 면적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거나 면허 어장간 법정거리를 두게되어 있는데 이는 양식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特定個人의 漁場獨占을 막거나 원활한 潮流疎通 또는 漁場紛爭防止등을 피하기 위함이다. 表에 의하면 굴이나 미역을 주로 양식하는 延繩垂下式의 경우 免許水面限界는 20ha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漁場間距離는 100 ~ 300m로 되어 있다. 또 김을 주로 양식하는 建築式의 경우 면허수면한계는 규정이 없으나 어장간거리는 100 ~ 500m 이상을 두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網簾이나 浮流網簾은 300 ~ 500m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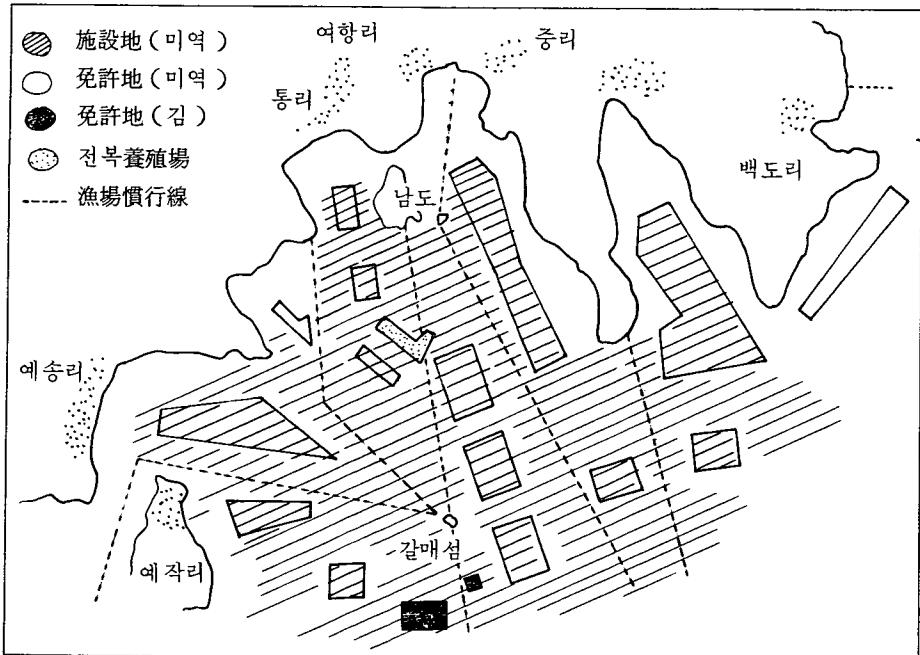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個人養殖일 경우에 양식자와 양식자 또는 양식자와 지선어민간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全體地先漁場을 모두 이용하는 總有型養殖에서는 이런 규정이 오히려 毒素條項이 되고 있다. 어촌체 또는 어촌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行使方法과 行使面積을 결정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거리제한 규정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오히려 違法의 當爲性이란 묘한 인식만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김, 미역 등 總有型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이 널리 행해지는 西南海域에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實例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圖 4-1>은 莊島郡 甫吉面 東南海域의 地先漁場利用實態이다. 이 지선어장을 이용하는 자연부락(漁村共同體)은 총 6개로서 法定漁村契로 조직된 것은 4개이다. 예송리·예작리가 禮松漁村契를, 통리·여항리가 餘項漁村契를, 중리는 中里漁村契를, 백도리는 白道漁村契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4개 어촌체(6개 어촌공동체)의 지선어장인 동남해역은 평균 수심이 20m 내외로 얕고 비교적 외해에 접해 있어 조류소통이 양호하므로 좋은 漁場條件을 구비하고 있다. 6개 어촌공동체는 예로부터 어업에 종사해 왔으나 주로 어선어업 및 공동어업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양식어업이 보

表 4 - 8 養殖漁業의 名稱·區分·漁場水深·水面限界·漁場間距離 및 採捕方法

名 称		養殖物의 種類	漁 場 水 深 (m)	水 面 限 界 (ha)	漁 場 間 距 離 (m)	採 捕 方 法(免 許 時 指 定)
1. 撒布式	간사지	백합, 꼬막, 바지락등	0	100 이상	100 이상	도수, 기타 채취기
	천 해	피조개, 새꼬막등	40 이내	30 이내	100 ~ 200	도수, 나잡, 형망, 잡수기
2. 投石式	간사지	굴	0	20 이내	100 이상	도수
	천 해	전복 등	30 이내	30 이내	200 이상	도수, 나잡, 채취기, 잡수기
3. 建築式	일본홍	김, 파래	0	-	100 이상	도수
	염 홍	김, 파래	0		200 "	도수, 선상도수
	부 홍	김, 파래	5		300 "	"
	망 홍	김, 파래	7 이내		300 "	선상도수, 선상채취기
	부류망홍	김	10 이내		500 "	"
4. 垂下式	간 이	굴	2 이내	5 이상	100 이상	도수, 선상도수
	연 승	굴, 미역, 멍게	20 이내	20 이내	100 ~ 300	선상권양기
	뗏 목	굴	30 이내	30 이내	100 ~ 500	"
5. 가두리		어 류	30 이내	10 이내	300 이상	선상채취기, 초망
6. 築提式		새우 등	10 이내	-	-	초망, 인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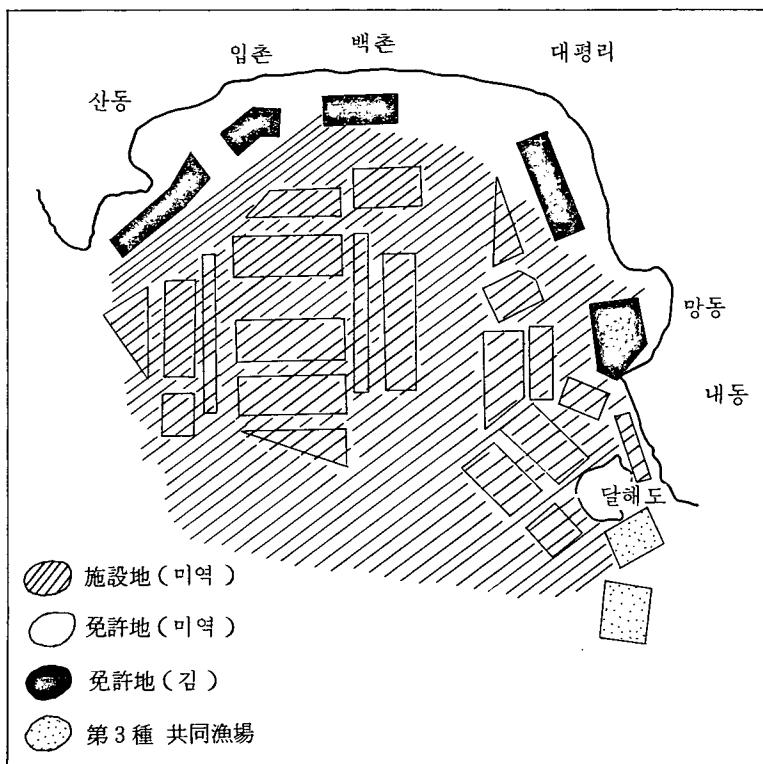
圖 4-1 莊島郡 甫吉面 東南海域의 漁場利用實態



급된 이후로 서로 경쟁적으로 어장을 개발한 결과 漁場紛爭이 야기되자 과거 공동어업에서 지켜지던 漁場慣行線이 양식어장에도 연장되어 지켜지게 되었다. 이 해역에 면허된 養殖漁業件數는 1987년 현재 미역양식이 15건, 김양식 3건, 전복양식 1건으로 모두 19건이 있는데, 그림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구역이다. 그러나 6개 어촌공동체에서 실제 양식장으로 개발한 곳은 그림에서 빚금친 부분으로 全地先漁場이 한정어리가 되어 미역양식어장으로 행사되고 있다. 물론 행사어장을 보다 세분해서 보면 구성원들간 行使地가 구분되어 있고 行使面積, 行使區域, 行使方法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행사기간에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莊島郡 新智面 明沙浦地域의 경우를 들어 보면 <圖 4-2>와 같다(金昇, 1987). 여기에는 7개 어촌공동체에 미역양식 20건, 김양식 5건, 바지락양식 1건 등 26건의 양식면허어업권이 있으나

圖 4-2 莊島郡 신지면 명사포지역의 漁場利用實態



(사각형 부분) 실제로는 빗금친 부분이 모두 한덩어리가 되어 미역어장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상의 예는 모두 미역의 경우이나 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김양식의 경우 件當 免許面積에는 제한이 없고 漁場間距離만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다소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와 같이 總有型養殖漁業이 個人型養殖漁業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免許地와 行使地의 相異는 다음과 같은 2次的인 問題를 야기시키게 된다. 첫째, 정확한 行使面積을 알 수 없으므로 행정당국의 生產政策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 이러한 어장 이용방법이 엄밀하게는 不法漁業에 속하게 되므로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는

정확한 행사면적을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서 매년 實測調查를 해야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선 행정담당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따라서 정책의 지침이 되는 生產豫測은 면허면적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정확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행정적인 漁場管理, 指導 등에 어려움을 안게 된다. 즉, 어촌계간 또는 어촌공동체간의 어업조정기능이 상실되어 항로나 수로의 합리적 연결, 구간정리지도 등이 불가능해지며 어촌계 또는 어촌 공동체간의 무질서한 어장개발경쟁으로 漁場老化現象을 촉진하게 된다. 세째, 어촌계간 또는 어촌공동체간 紛爭의 要因이 되고 있다. 즉, 면허어장이 漁場慣行線에 의해 구분될 때 면허권과 관행이 마찰을 일으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는 거의 어장분쟁은 야기되지 않고 있으나 <圖 4-1>의 경우 통리와 여항리의 어촌공동체간 (여항리어촌계) 전복양식장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서 과거 다소 분쟁이 있었다.

總有養殖漁業에 있어서 제도와 현실의 마찰문제중 두번째 것으로는 免許에 의하여 養殖品目이 制限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總有型養殖 뿐만 아니라 個人型養殖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당초 이 제도는 品目間의 양식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生產調整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즉, 品目間 적정한 생산을 유지하고 가격안정을 꾀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면허면적과 실제행사면적이 차이를 보이는 總有型養殖漁業에 있어서 이 같은 品種別養殖方法에 의한 生產調整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품목별신규면허면적을 행정적으로 아무리 조정해도 관행에 의해 실제 행사되고 있는 면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총유형양식어업은 개인형양식어업보다 생산량의 변동이 훨씬 심해 당초의 意義가 무색하게 되었다. 즉, <表 4- 9>에 의하면 주로 총유형양식어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과 미역의 生產量 및 價格變動이 주로 개인형양식어업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굴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變異係數(C.V)가 굴의 경우 生產量이 0.2330, 實質委販價格이 0.1512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김은 0.4567

表 4 - 9 主要 養殖品目別 生產量 및 實質委販價格 變動推移

單位 : % , 원 / kg

	굴		김		미역	
	生産量	實質委販價格*	生産量	實質委販價格*	生産量	實質委販價格*
1976	154,596	113.4	44,234	778.4	136,659	92.8
1977	151,325	132.4	57,718	815.6	173,978	85.1
1978	143,324	162.8	28,748	1,807.6	144,601	80.3
1979	157,591	169.3	43,787	1,673.8	143,305	69.5
1980	173,052	117.9	56,274	1,367.9	196,147	92.3
1981	199,233	96.9	80,490	1,009.6	294,622	76.7
1982	181,349	123.2	79,784	954.2	225,045	77.4
1983	203,945	124.0	87,963	1,177.8	237,128	81.3
1984	203,312	130.2	136,484	802.2	230,188	81.7
1985	242,847	131.0	109,819	966.0	256,436	85.0
1986	255,006	127.9	143,369	757.4	346,434	98.5
1987	288,078	137.4	83,287	1,279.8	285,085	111.1
變異係數**	0.2330	0.1512	0.4567	0.3168	0.2990	0.1303

* 委數價格 / WPI

** SD / 平均

과 0.3168, 미역은 0.2990과 0.1303을 나타내어 미역 실질위판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미역 實質價格의 變異係數가 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은 미역가격이 對日輸出價格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총유형 양식어업에서의 품목지정은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구성원 간의 紛爭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養殖可能品目이 다양해지고 養殖技術이 보편화됨에 따라 같은 어촌계 또는 같은 어촌공동체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양식품종의 선택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서 구성원들간 마찰이 야기되는 것이다. 흔히 산업의 발전과정은 安全價值와 自由價值의 선택에 따라 左右된다(劉忠烈, 1985). 양식어업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회피하고

보다 안전한 형태를 꾀하는 보수적인 입장은 安全價值를 택하는가 아니면 적자 생존의 결과도 초래하는 치열한 경쟁하의 自由價值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속도와 발전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 구성원들 간 품목선택에 의한 内部摩擦은 이러한 안전가치와 자유가치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어업이 산업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게 되면 그 선택문제는 더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다. 水產制度와 水產組織의 不合理

1970년대 이후 漁村契 및 地區別水協은 대대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즉, 어촌계의 경우 앞절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1972년 이후 합併·統合의 사례를 통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되어 1987년에는 1972년의 67.7% 수준인 1,528개가 되었다. 또 지구별수협의 경우는 <表 4-10>에서와 같이 1969년의 105개를 정점으로 하고, 그 이후 수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1969년의 53.3% 수준인 56개가 되었는데 이는 1972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친 地區別水協整備作業의 결과이다. 지구별수협의 정비작업은 부실화된 수협의 經濟機能活性化를 위해 수개의 지구별수협이 합병 또는 통합의 과정을 거쳐 규모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表 4-10 地區別水協數의 變化, 1962~87

單位 : 個

	計	京畿	江原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1962	88	9	8	6	4	28	9	19	5
1968	105	10	10	6	5	37	10	22	5
1972	70	6	8	6	4	18	8	15	5
1977	70	6	8	5	4	19	8	15	5
1982	56	4	6	4	3	14	8	12	5
1987	56	4	6	4	3	14	8	12	5
漁村契數	1,528	76	61	68	52	753	135	295	88
87平均漁村契數	27.3	19.0	10.2	17.0	17.3	53.8	16.9	24.6	17.6

資料 : 水協中央會 .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어촌계 또는 수협의 대대적 정비는 協同組織과 漁業調整機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즉, 지구별수협의 漁場管理協力機構로서 법정 조직되었던 자연부락단위의 어촌계는 1987년 현재 漁村契當 自然部落數(漁村共同體數)가 평균 2·3개에 달하게 되었으며 漁業權管理機能과 經濟事業機能을 동시에 수행했던 지구별수협은 경제사업위주의 廣域的單位(시·군단위 혹은 수개의 시·군단위)로 정비되어 1987년 현재 地區別水協當 漁村契數가 27.3개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자연부락단위를 토대로 하여 설립되었던 어촌계는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1975년부터의 비법인어촌계 어업권향유를 계기로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촌공동체와 어촌계의 대립이 야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지구별수협으로서도 비법인어촌계의 어업권향유로 인해 당초의 漁業權管理機能은 상실된 채 經濟事業機能만을 수행하므로 명실공히 廣域化된 經濟團體組織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總有型養殖漁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南海域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남해역은 어업의 오랜 歷史性과 地理的特性으로 인해 다양한 어업형태가 영위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어촌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漁業團體가 설립되어 활발한 協同運動이 전개되어 왔으며 1962년 이후의 水協運動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1969년에는 전남, 경남 2개 도의 지구별수협수가 전국지구별수협의 56.2%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곳은 1972년 水協整備作業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정비가 이루어져 1987년 현재 전남은 14개, 경남은 12개의 지구별 수협이 존속하게 되었다. 이는 1969년에 비해 전남은 37.8%, 경남은 54.5%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서 1개 수협당사업범위는 전남이 약 3배, 경남이 약 2배의 규모로 廣域化되었으며 그 결과 지구별수협당 평균어촌계수는 전남이 53.8개, 경남이 24.6개가 되어 다른 道의 20개 미만과 큰 차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어촌계 또는 수협의 기능은 수협 설립 당시의 기능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어 특히 많은 現實問題가 야

기되었다.

이러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機能變化는 效率的인 沿岸漁場利用政策을 수행하려 했던 당초의 의도를 퇴색시킨 대신 연안어장이용의 混亂과 無秩序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어촌계에는 연안어장의 利用機能을, 지구별수협에는 연안어장의 管理機能을 부여하는 2元性을 유지함으로써 相互牽制·調整을 꾀하려 하였으나 어촌계에 이 두 기능이 모두 부여되어 앞결에서 본 바와 같은 제도와 현실의 여러 摩擦問題가 야기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결국 종래 지구별 수협에 어장관리기능이 부여됨으로 이에 더불어 부여되어 왔던 漁業調整機能이 상실되어 야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沿岸漁場의 特徵과 非協同的 利用·管理行爲

가. 沿岸漁場의 物理的, 社會經濟的 特徵

漁場은 農業에 있어서 耕地, 林業에 있어서 林野와 마찬가지로 土地의 한 형태로서 所有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農耕地나 林野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중요한 物理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

(i) 流動變易性 : 漁場은 끊임없이 流動하는 水界의 실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海流, 氣象 등과 같은 自然的 제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ii) 相互關聯性 : 漁場은 一體不可分의 水界를 실체로 하고 있고, 이 水界를 매체로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面積과 位置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어장과 이웃 어장은 相互不可分의 一體로서 關聯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所有權의 집행이 가능한 漁場區劃이 어렵다.

(iii) 立體的 多岐利用性 : 水界는 上·中·下층으로 나뉘어 지고 그 층에 따라 分布되어 있는 水產動植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漁業에 의하여 동시에 立體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漁場의 뚜렷한 物理的 特徵 때문에 排他・獨占的 支配와 市場 成立에는 높은 去來費用 (Transaction costs)이 수반되고, 복잡한 法律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市場機能을 주축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營體制는 財貨에 대한 私有 財產權의 확립이라는 大前題下에서 출발한다. 私有權을 기반으로 하는 市場機能이 效率的 資源配分 機能을 충분히 發揮하기 위해서는 所有權의 排他・獨占性, 移轉性, 行使의 容易性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漁場은 앞에서 언급한 物理的 特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經濟的인 所有權 확립이 매우 어렵고, 資源配分의 市場失敗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따라서 漁業資源은 市場의 成立이 가능한 일반 商品과는 달리 市場成立이 어려운 公有財 (Common Property)의 特徵을 갖는다. 世界의 모든 沿岸國家들이 漁場을 公有財로 인식하고, 그 所有를 國家의 獨占下에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漁場이 갖는 物理的 特徵에 기인되고 있다.

이러한 公有財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漁場과 거기에 서식하는 水產動植物을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利用・管理하기 위하여, 정도를 달리하는 排他的 漁場利用權을 限時的으로 부여함으로써 資源utilization의 效率性 (Efficiency)와 衡平性 (Equity)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沿岸漁村地域은 오랜 歷史를 가진 沿岸漁業資源의 준적 지역이고, 이 漁業資源은 절대 다수의 소규모 沿岸漁民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國家는 排他的 利用・管理가 가능한 沿岸漁場에 대하여 特定人 (法人 포함)에게 漁業權을 주어 專用토록 하고 있다. 沿岸漁場의 대부분은 養殖漁場, 定置漁場, 第 1・2・3 種共同漁業權漁場으로 나뉘어져 있고, 道知事의 免許를 얻어 專用토록 되어 있다. 이를 漁場에 대한 漁業權 중 定置漁業權과 養殖漁業權의 일부 (굴, 피조개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養殖漁業權, 그리고 모든 共同漁業權은 그 漁場을 포함하고 있는 地先漁村의 漁村契總有專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大資本의 漁業이 요구되는 近海漁業과는 달리 沿岸漁業은 다양한 소규모 어업그룹 즉, 漁村共同體 (혹은 漁村契), 定置漁業

業者, 許可漁業者, 個人養殖漁業者 등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고, 다수의 상이한 漁業그룹과 그룹내 영세한 다수 漁業멤버들이同一資源을 競合的으로 이용하며, 陸地에서 漁場에 대한 接近性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漁民들의 自律的 漁業協力과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法的規制에 의한 漁業資源의 效率的 利用·管理는 사실상 不可能하다.

나. 沿岸漁場 利用·管理行爲의 理論的 考察

이상의 物理的, 經濟社會的 特徵을 갖는 沿岸漁場을 상정하고, 일정하게 주어진 漁場에 入漁하는 漁家들은 漁撈 및 養殖漁業을 통하여 漁業所得을 극대화한다고 假定하면 총 漁獲努力(또는 養殖施設), R 에 대하여 收穫遞減의 法則(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이 작용하는 生產函數 (H)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quad H = F(R)$$

(단, $F(0) = 0$, $F'(R) > 0$, $F''(R) < 0$)

이러한 假定下에서 개별어가의 生產函數 (H_i)는 어가 i 의 漁獲努力(養殖施設) (r)과 나머지 전체 어가의 漁場利用强度 (\tilde{R})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quad H_i = f(r, \tilde{R})$$

(단, $\tilde{R} = R - r$)

式(2)는 어가 i 의 生產量이 어가 i 가 投入하는 漁獲努力(養殖施設) (r)과 어가 i 를 제외한 나머지 어가들의 漁場利用强度 (\tilde{R})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결정되어짐을 의미한다.

주어진 漁場에서 생산된 總生產量 중 어가 i 의 生產要素 投入量 (r)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한다고 假定하면 H_i 는

$$(3) \quad f(r, \tilde{R}) = [r/(r + \tilde{R})] F(r + \tilde{R}) \\ = (r/R) F(R)$$

이다. 入漁하는 모든 어가들이 마치 하나의 어가가 漁業行爲를 하는 것처럼 制限된 資源의 利用管理에 있어서 合理的 協同調整機能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체 漁家의 所得極大化를 위한 目標函數는 다음과 같다.

$$(4) \quad \Pi(R) = F(R) - WR$$

여기서 生產物 價格과 投入要素 단위당 價格이 外生的으로 고정되어 있고, 生產物 價格을 1.0, 投入要素 단위당 價格을 W라면 所得極大化를 (Π)를 위한 1차 미분조건은

$$(5) \quad F'(R^*) = W$$

이기 때문에 R^* 는 곧 Pareto 적정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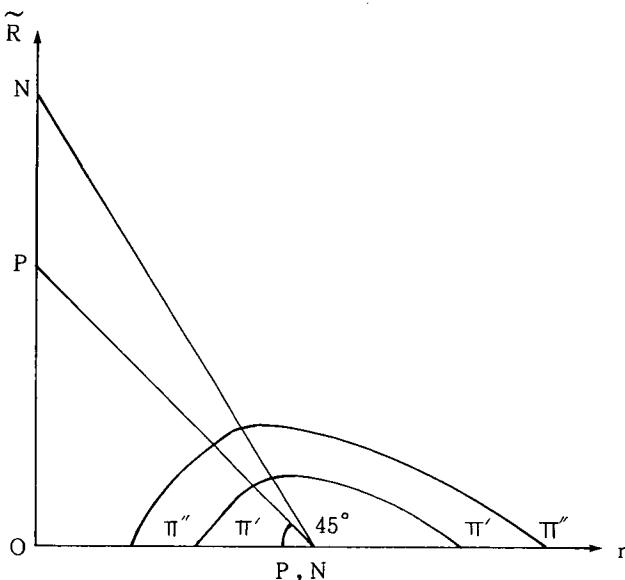
<圖 4-3>에서 2개의 다른 等所得曲線(Iso-profit curve)을 $\pi' \pi'$ 와 $\pi'' \pi''$ 라면, 일정 소득수준에 대하여 r 과 \tilde{R} 의 組合을 나타내는 曲線이다.

等所得曲線이 r 축에 가까울수록 어가 i 의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pi' \pi' > \pi'' \pi''$ 이다. 45도 직선 pp는 r 과 \tilde{R} 의 組合이 R^* 가 되는 모든 Pareto 적정조합(r, \tilde{R})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沿岸漁場이 갖는 제특징 때문에同一漁業資源에 대하여 이용상 競合度가 높고, 어업그룹간, 어업그룹내 멤버간의 協同調整機能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非協同的 Nash 行爲(Noncooperative Nash Behavior)는 沿岸漁場 利用管理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沿岸漁撈漁業資源의 枯竭과 養殖漁場 老化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非協同的 Nash 行爲는 그룹간, 그룹내 멤버들간의 치팅(Cheating)에 기인되는 것으로, 카르텔이 가지는 취약성과 매우 흡사한 점을 가진다. 非協同的 Nash 行爲의 特徵은 다른 어가들의 漁獲努力이 일정하다

圖 4-3 Nash와 Pareto 均衡



고假定하고 어가 i 가 자신의 소득 π_i 를极大化하기 위하여 r 을 결정하는 데 있다.

주어진 R 하에서 어가 i 가 π_i 를极大化하기 위하여 r 을 결정한다고 하면, 어가 i 의目的函數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6) \quad \max_{(r)} [f(r, \tilde{R}) - wr]$$

개별어가 i 가 π_i 를极大化할 경우 어가 i 는 $f_r(r, \tilde{R}) = wi$ 되는 수준까지 r 을投入하게 된다. <圖 4-3>에서 Nash 均衡點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데, 이均衡點들은等所得曲線상의极大點을 따라 이어진 NN曲線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Nash反應曲線(Reaction Curve)의 기울기는 $d\tilde{R}/dr = -f_{rr}/f_{r\tilde{R}}$ 이고 절대값에 있어서 Pareto適正組合을 나타내는 직선 PP의 기울기 1.0보다 크다.

어가 i 의所得(π_i)의极大化條件은식(3)을식(4)에 대입하고 r 에 대하여 1차 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7) \quad \frac{F(R^o)}{R^o} - \frac{r^o}{R^o} [\frac{F(R^o)}{R^o} - F_r(R^o)] = W$$

식(7)에서 원편의 첫번째항 $F(R^o)/R^o$ 는 平均生產(AP)이고, 팔호 항은 平均生產(AP)과 限界生產(MP)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번째 항에서 R^o 이 크게 증가하면

$$(8) \quad F(R^o)/R^o = W$$

i] 되어, 平均生產(AP)과 限界生產要素費用이 같게 된다.

식(8)은 共有資源利用에 있어서 否定的 外部效果(Negative Externalities)에 의한 資源地代 消滅(Resource Rent Dissipation) 조건이다(Corns and Sandler, 1983). 그러나 $\widetilde{R} = 0$ 일 경우, 주어진 渔場은 단일 어가에 의하여 獨占利用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所得極大化 조건은 平均条件이 아닌 限界条件을 가지게 된다. 즉,

$$(9) \quad F_r(R^o) = W, \text{ 단 } R^o = r^o$$

그러나 대부분의 共有資源 利用은 양극단 ($\widetilde{R} = 0$ 과 $R \rightarrow \infty$)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7)은

$$(10) \quad \frac{F(R^o)}{R^o} \cdot \frac{\widetilde{R}^o}{R^o} + \frac{1}{R^o} F_r(R^o) = W$$

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AP와 MP의 加重平均(Weighted Mean)은 限界費用과 같다. 여기서 $\frac{1}{R^o} F_r(R^o)$ 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는 어가 i 가 渔業強度를 1단위 증가시킴으로서 다른 모든 어가에게 전가하는 費用上昇效果 또는 渔場環境惡化에 의한 渔場淨化 費用上昇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가 i 가 발생시키는 總外部效果 費用을

$$\int_0^{R^o} \frac{1}{R} F_r(R) dR$$

으로 나타낼 수 있다. 社會全體의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싼 價格

으로 너무 많은 水產物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生產函數 $F(R)$ 이 위로 불특하다는 가정 하에서 AP 는 MP 보다 크기 때문에 非協同的 Nash 行爲는 限界條件의 R_1 보다 큰 R_2 를 유발하게 된다. <圖 4-4>에서 보듯이 資源地代 (Resource Rent) AB 가 W (기회비용과 같다고 가정함) 를 초과할 경우 이는 漁業強度 R 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私的 費用 (Private Cost) 과 社會的 費用 (Social Cost) 의 관점에서 보면 外部效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漁業 生產量이 H_1 을 초과할 경우, 漁場利用 競合이 가중되어 限界 均衡條件이 깨어지고,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의 갭이 발생하게 된다. <圖 4-5> 非協同的 Nash 漁業行爲 모델에서 개별어가는 자신의 漁業生産活動이 다른 어가들에게 부과시키는 추가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總漁業生産量은 H_2 를 向해서 증가하게 된다.

H_1 에서는 單位生産量當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H_2 에서는 私的費用이 CH_2 이고 社會的 費用이 DH_2 이기 때문에 CD 만큼 갭이 발생한다. R_1 이 R_2 로 증가함으로써 H_1 이 H_2 로 증가할 경우, R_2 에서 平均生產費와 生產物價格 (P) 이 같게 되어 資源

圖 4-4 短期間의 漁業強度, 平均生產,
限界生產의 相互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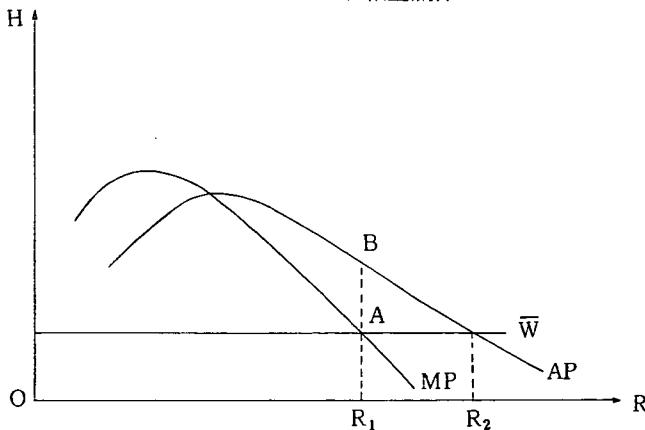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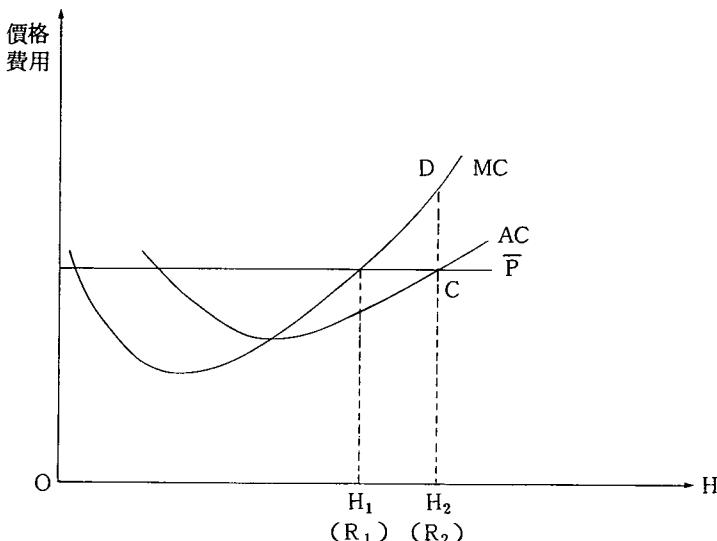


圖 4-5 私的 費用과 社會的 費用과의 關係



地代는 완전히 消滅되고 外部效果에 의한 전체어가의 추가적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自然成長率이 H_1 과 H_2 사이에 있을 경우 자원스톡 (Stock)이 最少 生存可能 母集團水準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養殖漁場은 그 自淨機能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어업그룹간, 어업그룹내 멤버간 漁場 利用管理의 協同調整機能이 약하면 약할수록 R 의 증가는 加速化되고, 그 결과 共有資源의 悲劇 (Tragedy on Commons)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요컨대 非協同的 Nash 漁業行爲에 의한 한 漁家の 漁場 利用强度의 변화는同一 資源 (漁場)을 이용하는 나머지 모든 어가의 經營收支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어가의 生產活動 또한 特定 漁家에 대하여 같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相互依存的 生產活動에 의한 否定的 外部效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Gordon 1954, Dorfman 1974).

이상의 理論的 展開로부터 다음과 같은 含意를 도출할 수 있다.

(i) 漁業資源의 利用 · 管理에 있어서 資源이 갖는 生物學的, 物理的 특징은 어업행위의 相互依存性을 유발하는 주된 原因이다. 이러한 相互依

存的 漁業行爲는 개별어 가의 生產函數와 費用函數가 分離 獨立的일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한 어가의 漁業強度 결정이 다른 모든 어가들의 生產 및 費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 共同漁場의 경우, 그룹 멤버들간에 自發的 漁業協力과 調整機能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외부적 어업조정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어장이 용·관리가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自發的 漁業調整機能이 不安定할 경우에는 치팅 (Cheating)과 無賃乘車 (Free-Ride) 문제에 의해 협동조정기능이 와해되어, 어업그룹간, 어업그룹내 멤버들간에 漁業 紛爭이 발생할 수 있고 어장이용 관리의 均衡이 쉽게 깨어질 수 있다.

(iii) 또한 치팅과 無賃乘車 문제는 上向的 資源利用의 偏倚性 (Bias)을 파생시킴으로써 한정된 어장의 과다이용 및 관리소홀 뿐만 아니라 資源分配의 偏倚된 情報에 의해 動態的으로 전반적인 漁場與件惡化를 加速화시킬 수 있다.

第 5 章

事例漁村地域의 漁場利用·管理實態 分析

1. 分析視角과 事例地域의 選定

가. 分析視角 및 方法

排他的 利用·管理가 가능한 沿岸漁場은 養殖漁業權, 定置漁業權, 第 1 · 2 · 3 種共同漁業權으로 구분되어 專用되고 있다. 免許에 의해 그 權利를 인정받는 이들 다섯 가지 漁業權漁業 중 定置漁業權과 養殖漁業權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養殖漁業權과 共同漁業權은 그 漁場에 접해 있는 地先村落의 漁村契에 의해 利用·管理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漁業經濟는 構造的 취약성으로 인해 漁民의 상당수가 독자적인 再生産을 영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地先漁場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漁業權漁業에 대한 沿岸漁民의 依存度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漁業權漁業中 品目別로 볼 때 海藻類養殖漁業은 단일 漁業形態로는 가장 많은 漁家를 포용하고 있다. 海藻類養殖漁業의 生產樣態의 특징은 入戶制度에 기초한 共同體的 經營樣式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共同體存立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養殖場이 村落共同體(漁村契)에 의하여 共同으로 占取되고 있다는 이른바 漁場의 總有이다. 總有漁場은 그 漁場의 일부가 각 構成員에게 持分으로 나누어 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固定된 것이 아니라 매

년 추첨에 의해 정기적으로 割替되며, 자신의 持場이나 그에 대한 權利를 寶渡하거나 賃貸할 수 없다고 하는 즉, 私的 處分權의 불인정 등을 그 屬性으로 갖는다(朴光淳, 1981, p. 225).

總有漁場의 이러한 속성과는 별도로 海藻類養殖漁業의 經營은 採取型漁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共同生產 및 共同販賣라는 原始的 유형과는 달리 資本投下 및 技術的 條件, 商品性 등으로 인해 個別化의 方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 海藻類養殖 특히,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海苔養殖의 경우 建築과 같은 養殖施設이 필요하며, 따라서 상당액의 資本이 소요된다. 또한 漁村이 專用하는 漁場全體를 하나로 포괄하기에는 技術的으로 불가능하므로 分割하여 個別的으로 발을 設置해야 하며, 대상 養植物이 嗜好食品으로서 상당한 經濟的 價值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海藻類養殖漁業의 生產構造는 이른바 漁場의 總有와 個別經營이라는 特徵을 띤다.

問題는 漁場의 總有와 經營의 個別化가 어떻게 兩立・展開될 수 있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個別經營은 私的 利潤의 極大化를 전제로 하며 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자신에게 일시적 持分으로 할당된 漁場의 利用・管理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經營의 個別化는 漁場의 利用・管理에 있어서 私占化 傾向 즉, 共同體的 經營樣式의弛緩 또는 變質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展開될 것이라는 假說의 설정을 가능케 한다.

本章의 研究目的은 이상의 假說에 대한 立證이 곧 總有漁場의 利用・管理實態의 把握이라는 인식하에 1) 法律上의 擯制로서 總有漁場의 利用・管理主體인 漁村契가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변질을 團束할 수 있는 실제적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어 2) 個人持分漁場의 固定化여부, 個人持分漁場의 賣買 및 賃貸可能여부 등을 통해 漁村共同體의 존립기반인 總有漁場에 대한 利用・management實態를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데 있다.

研究方法으로서 漁場의 總有와 經營의 個別化를 生產構造의 特징으로 하는 海藻類養殖漁業地域에 대한 事例分析을 실시하였다. 또한 漁場의

利用·管理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村規를 유형별로 예시하여 그 구체적인 狀況을 설명하였다. 分析對象地域으로서 莊島郡 管內의 전체 漁村契를 선정하였다. 완도는 海苔의 최대 主產地로서 漁家經濟에서 海苔生產 비중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한 漁村共同體 또한 전형적인 樣態를 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도는 海苔養殖漁業의 歷史가 가장 오래된 곳으로서 이 地域의 漁場利用·management 實態 分析은 後發地域의 효과적인 漁場利用·management에 관한 政策的 含意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일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漁村契를 보유하고 있어 漁場利用의 다양한 樣態와 함께 分析結果에 대한 信憑性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莊島地域 漁村契의 漁家 및 漁場概況

莊島郡의 漁村契數는 1987年末 總198個로서 全國漁村契의 13.0%를 점하고 있다. 管內 漁村契에 거주하고 있는 漁家는 總 17,146戶로서 전국 漁家의 10.1%를 점하고 있다. 이들 漁家중 漁村契에 가입된 契員은 79.6%로서 全南의 평균치보다 낮으나 全國值에는 近似하다. 漁村契當 평균 漁家戶數는 86.6戶로서 全南 平均에 비해 높으나 全國 平均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契員漁家를 經營形態別로 보면 兼業漁家가 90.9%를 점하는 반면, 專業漁家는 9.1%에 지나지 않는다. 莊島地域의 兼業漁家比率은 전국 平均值 65.5% 보다는 물론 全南의 84.4%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海藻類養殖漁業에 의존하는 漁村地域의 전형적인 特징으로서 經營規模의 零細性과 生產의 季節性으로 인한 漁閑期의 遊休勞動力を 漁業外活動에 投入하고 있음에 비롯된 것이다(表 5-1)。

管內 漁村契가 總有·共同管理하고 있는 漁場面積은 1986년말 總 20,667 ha로서 全國 漁村契 總有漁場의 11.5%를 점하고 있다. 漁場構成을 보면 共同養殖漁場 構成比가 60.1%로서 월등히 높으며, 다음이 1種共同漁場 23.8%, 3種共同漁場 15.8%의 順이다. 漁村契當 평균 漁場面積은 103.9 ha로서 全南 및 全國의 평균치보다 낮으나 共同養殖漁場規模에 있어서는 兩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表 5-2)。

表 5 - 1 莞島의 漁家構成 現況, 1987

단위: 戶, %

		漁 家					契員比率
		計	非契員	契 員			
莞島	(A)			小計	專業	兼業	被傭
	全體	17,146	3,495 (100.0)	13,651 (9.1)	1,244 (90.9)	12,402 5 (-)	
全南	平均	86.6	17.7	68.9	6.3	62.6	- 79.6
	全體	58,708	6,826 .	51,882 (100.0)	7,086 (13.7)	43,775 (84.4)	1,021 (2.0)
(B)	平均	78.0	9.1	68.9	9.4	58.1	1.4 88.4
全國	全體	170,334	33,648 .	136,686 (100.0)	38,859 (28.4)	89,535 (65.5)	8,292 (6.1)
	平均	111.5	22.0	89.5	25.4	58.6	5.4 80.2
	A/B	29.2	58.8	26.3	17.6	28.3	0.5
	A/C	10.1	11.3	10.0	3.2	13.9	-

註 : 漁村契平均 戶數임.

한편 分析對象漁村契중 總有養殖漁場을 보유하지 못한 3 個를 제외한 195 個 漁村契가 標本漁村契로 선정되었다. 基準年度는 1987 年末이다. 이들 標本漁村契의 總有漁場에 대한 漁業權은 總 1,010 件으로서 漁村契當 평균 5.2 件이며, 이 중 70 %가 養殖漁業權이다. 漁業權當 average 漁場面積은 20.4 ha이며, 구성별로는 3 種共同漁場 34.8 ha, 1 種共同漁場 24.1 ha, 그리고 共同養殖漁場이 17.6 ha의 順이다. 養殖漁場에 있어서 漁業權構成度에 비해 漁場構成度가 낮은 이유는 그만큼 養殖漁場에 대한 利用度가 集約的임을 뜻하는 것이다(表 5-3).

表 5 - 2 莞島의 漁村契 總有漁場構成, 1986

단위 : ha, %

		계	1종공동어장	2, 3 종 공동어장	양식어장	정치어장
완도	전체	20,667 (100.0)	4,918 (23.8)	3,267 (15.8)	12,426 (60.1)	56 (0.3)
	어촌계평균	103.9	24.7	16.4	62.4	0.3
전남	전체	81,282 (100.0)	21,790 (26.8)	21,015 (25.9)	38,296 (47.1)	181 (0.2)
	어촌계평균	108.7	17.1	28.1	51.2	0.2
전국	전체	180,088 (100.0)	92,679 (51.5)	29,923 (16.6)	55,237 (30.7)	2,249 (1.2)
	어촌계평균	118.5	60.9	19.7	36.4	1.5
A/B		25.4	22.6	15.5	32.4	30.9
A/C		11.5	5.3	10.9	22.5	2.5

註 : 莞島의 2種共同漁場은 없음.

表 5 - 3 事例地域의 漁業權 및 漁場構成

단위 : 件, ha, %

		계	1종어장	3종어장	양식어장	정치어장
어업권 (A)	전체 ⑨	1,010 (100.0)	200 (19.8)	94 (9.3)	708 (70.1)	8 (0.8)
	어촌계평균	5.18	1.03	0.48	3.63	0.04
어장 (B)	전체 ⑨	20,574 (100.0)	4,825 (23.5)	3,267 (15.9)	12,426 (62.4)	56 (0.3)
	어촌계평균	105.5	24.7	16.8	63.7	0.3
B / A		20.4	24.1	34.8	17.6	7.0

標本漁村契의 漁家現況으로서 전체漁村契에 거주하는 總 家口數는 19,766 戶이며, 이 중 漁家率은 85.3% (16,853 戶)이다. 漁村契當 평균 漁家數는 86.4 戶이며, 69.1 戶의 漁村契員과 17.3 戶의 非契員으로 구분된다(表 5-4). 經營形態로서 專業漁家는 9.4%, 兼業漁家는 90.6% 를 각각 점하고 있다. 兼業漁家가 經營하고 있는 耕地는 대부분 田으로서 規模는 영세하나 他漁村地域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表 5-5).

海苔養殖에 參與하는 漁家는 總 12,460 戶로서 參與率은 73.9%이다. 規模別 構成을 보면 대부분이 20畝 미만의 小規模 經營漁家이다(表 5-6). 한편 미역養殖漁家는 9,411 戶로서 參與率은 海苔養殖參與度에 비해 낮은 55.8%이다. 規模別로 볼 때 海苔養殖漁家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다(表 5-7).

表 5-4 事例地域의 漁村契員 構成

단위: 戶, %

	총 가 구	어 가			비 어 가
		소 계	어촌계원	비 계 원	
전체어촌계(호)	19,766 (100.0)	16,853 (85.3)	13,483 (68.2)	3,370 (17.1)	2,875 (14.5)
어촌계평균(호)	101.4	86.4	69.1	17.3	14.8

表 5-5 事例地域의 經營形態別 漁家構成

단위: 戶, %

	총 어 가	전 업 어 가	겸 업 어 가			기 타	
			소 계	경 지 규 모 별			
				1.0ha 이상	1.0~0.5ha	0.5ha 미만	
전 체	16,853 (100.0)	15,584 (9.4)	15,269 (90.6)	632 (3.8)	3,758 (22.3)	10,034 (59.5)	845 (5.0)
어촌계평균	86.4	8.1	78.3	3.2	19.3	51.5	4.3

表 5 - 6 事例地域 海苔養殖漁家의 規模別 分布

단위: 戶, %

	계	200 책 이 上	200 ~ 100	100 ~ 50	50 ~ 20	20 ~ 10	10책 미 만
전 체	12,460 (100.0)	1 -	17 (0.1)	202 (1.6)	3,017 (24.2)	3,479 (27.9)	5.744 (46.0)
어촌계 평균	63.9	-	0.1	1.0	15.5	17.8	29.5

表 5 - 7 事例地域 미역養殖漁家의 規模別 分布

단위, 戶, %

	계	100 대이상	100 ~ 50	50 ~ 20	20 ~ 10	10 대미만
전 체	9,411 (100.0)	235 (2.5)	803 (8.5)	4,218 (44.8)	2,450 (26.0)	1,705 (18.1)
어촌계평균	48.3	1.2	4.1	21.6	12.6	8.7

2. 漁場의 利用 · 管理 및 意思決定 主體

가. 漁場管理 및 共同收益金의 運用形態

共同(總有)漁場에 대한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化를 살펴보기 전에 共同漁場의 利用 · 管理主體인 漁村契가 이러한 變質을 團束할 만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漁村契의 이러한機能에 대한 强弱이 곧 共同漁場利用形態 變化 및 그 可能性의前提條件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共同漁場의 利用 · 管理와 관련된 主要方針의 實際的 決定主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表 5-8).

表 5 - 8 共同漁場과 관련된 主要方針의 決定

	계	수협법 규정에 의거, 총대회를 구성하여 운영	관행에 의거, 부락개 발위원회를 구성	부락단위로 개발위 원회를 구성하여운 영(어촌계가 수개의 부락으로 구성된 경 우)
빈도	195	2	174	19
%	100.0	1.0	89.2	9.7

莞島地域의 195 個 標本漁村契中 共同漁場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事案의 決定에 있어서 그 主體가 漁村契인 경우는 단 2 件에 불과하였다. 전 체의 99 %인 193 個 漁村契가 漁村契總會와 별도로 部落(漁村共同體) 단 위의 회의를 통해 主要方針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2 個 以上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된 漁村契中 19 個는 經濟圈單位로 정비된 漁村契와 관계없이 각각의 部落會議를 통해 漁場을 관리함으로써 동일 漁村契內에서도 조정기능 없이 서로 다른 樣態의 漁場管理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漁村契구성원의 共同漁場 入戶에 따른 行使料 및 入漁料 등 共同收益金의 運用形態에 대해 알아 보았다 <表 5-9>.

共同漁業權은 漁民團體에 의한 漁場管理를 그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共同漁業權者인 漁村契가 마땅히 漁場管理의 義務를 지며 (水產業法施行令

表 5 - 9 共同收益金의 運用形態

	계	수협관계법령에 의거, 어촌계수익으로 이관 하여 어장관리비로 활용	관행에 따라 어촌공 동체수익으로 이관하 여 부락 운영비로활 용	각 부락 단위로 이 관, 부락운영비로 활용(어촌계가 수 개의 부락으로 구 성된 경우)
빈도	195	25	158	12
%	100.0	12.3	81.0	6.2

14條), 行使規定에서 책정된 行使料 및 入漁料는 共同漁業權의 관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水產業法施行令 60條의 3). 참고로 法令에 의한 共同漁業權者의 漁場管理內容은 1) 年1회 이상 磯洗·築磯와 投石 2) 魚附林 조성, 3) 種苗投入, 4) 기타 필요한 施設 등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共同收益金을 漁村契에 이관하여 본래의 취지에 따라 漁場管理費로 활용하고 있는 漁村契는 25個로 12.8%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70個 漁村契는 傳來의 償行에 의거해서 部落(漁村共同體)의 收益金으로 이관하여 부탁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부탁운영비가 漁場管理費로 投入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部落運營費로 轉用된 共同收益金이 漁場管理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수개의 自然部落이 하나의 漁村契를 구성하는 경우, 漁村契의 公益的 事業機能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非契員의 入戶

漁村契의 제한적 機能은 다음의 非契員의 入戶事例를 통해서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表 5-10).

共同漁場은 漁村契의 總有로서 그 利用에 대해 地先漁民의 排他·獨占的 關係를 권리로 인정한 것이며, 또한 地先部落 内部로 볼 때 漁村契員과 非契員間의 用益機能上の 구분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완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漁村契에 있어서 共同漁場의 利用에 대해 兩者間에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실제로 共同漁場에 入戶하여 漁業權을 행사하고 있는 漁家數가 契員의 數를 초과하고 있는 漁村契는 전체의 84.6%로서 165個에 이르고 있다. 초과된 家口의 數도 漁

表 5-10 非契員의 規模別 總有漁場 入戶

	계	1~5	6~10	11~15	16~20	21~30	31~50	50호 이상
반도	165	48	29	15	20	21	17	15
%	84.6	24.6	14.9	7.7	10.3	10.8	8.7	7.7

家의 規模에 따라 적게는 1~3戶에서 많게는 50戶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당해 漁村에 이전부터 入戶하고 있는 漁民은 漁村契 加入여부에 관계없이 慣行에 의해 共同漁業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 상 地先漁場을 專用하고 있는 주체는 漁村共同體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共同漁場과 관련된 意思決定의 主體, 漁場利用에 따른 共同收益金의 전용여부 및 운용주체, 그리고 非契員의 入戶에 대한 漁村契의 통제기능여부 등을 통해 共同漁場의 利用·管理에 대한 漁村契機能의 제한성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共同漁場에 대한 利用·management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民法上의 권리능력 없이 惯行에 의한 入戶制度에 근거하는 漁村共同體라고 할 수 있다. 法律的 撫制로서 경제권단위로 정비된 漁村契는 아직도 漁村共同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漁業權 享有·management機能이나 漁場管理機能 등에 있어서 제한적 수행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는 곧 漁村契자체가 본래立法과정에서 入戶관행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機構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3.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共同養殖漁場의 私占化

가. 個人持分漁場의 財產權化

海藻類養殖漁業의 生產過程에 있어서 建築(海苔의 경우), 採取, 製造 등 거의 전과정이 個別化되어 있으며, 流通過程도 水協을 통한 일부 系統出荷量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個別化의 進展이 總有漁場인 共同養殖漁場의 利用·management에 영향을 미친다는前提下에 個人持分漁場의 固定化 여부, 그것의 讓渡可能여부 등에 초점을 두어 漁場의 利用·management 實態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總有漁場의 屬性인 定期移替制의 변화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表 5-11 持場位置의 設定形態 (해태양식)

	계	전체가 영 구지로 고정	일정지역은 영 구지 로 고정, 이외부분 은 매년 추첨하여 교체	전체를 3~5 년마다 추첨하 여 교체	매년 전체를 추 첨하여 교체
빈도 %	171 100.0	2 1.2	5 2.9	10 5.8	154 90.1

表 5-12 持場位置의 設定形態 (미역양식)

	계	전체가 영 구지로 고 정	일정지역은 특정어가 의 영 구지로 고정, 이 외 부분은 균등 분배하여 영 구지로 고정	전체를 3~5년마다 추첨하여 교체
빈도 %	146 100.0	5 3.4	6 4.1	135 92.5

持分으로 할당된 漁場의 固定化 정도를 파악하였다(表 5-11), (表 5-12)。

海苔養殖漁業權을 행사하는 171 個 漁村契中 개인 持場을 私的 所有地라고도 할 수 있는 永久地로 固定해서 이용하고 있는 漁村契는 7 個로서 4.1%를 점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서 3~5 年으로 移替의 빈도를 크게 누그러뜨린 漁村契 10 個를 포함하면, 9.9%인 17 個 漁村契가 변질된 漁場利用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역養殖漁業權을 행사하는 146 個 漁村契中 전체 또는 일부 漁場을 固定的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11 個로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持場의 固定化는 私的所有관념의 발달으로서 持場의 自由處分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暗示하는 것이다.

持場에 대한 私占化관념의 진전도를 파악하기 위해 養殖漁業에 종사

表 5-13 転出時 持場의 處分形態(해태양식)

	계	유료매각	어촌계(또는 어촌공동체)에 귀속
빈도	171	25	146
%	100.0	14.6	85.4

表 5-14 転出時 持場의 處分形態(미역양식)

	계	유료매각	어촌계(또는 어촌공동체)에 귀속
빈도	146	13	133
%	100.0	8.9	91.1

하던 漁家가 他地로 이사할 경우 持場의 處分形態를 알아 보았다 <表 5-13>, <表 5-14>.

海苔 漁場의 경우 자기持分을 漁村契 또는 (部落共同體)에 귀속시키고 轉出하는 漁村契는 146 個로서 85.4 %를 점하고 있다. 반면에 有料賣却後 移居하는 漁村契는 25 個인 14.6 %로서 總有漁場의 公益的 기능이라는 屬性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다소 頻度는 떨어지지만 미역養殖에 있어서 轉出時 有料賣却을 협용하는 漁村契는 13個로서 8.9 %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總有漁場中 자신에게 할당된持分을 有料賣却할 수 있다는 것은 總有漁場의 속성인 私的處分權의 불인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共同體的經營樣式은 이미 지양되고 個別經營이 썩트고 있음을 의미한다.

個別化의 進展度와 관련하여 자신의持場을 완전히 私的 所有地로 인식하는 有料賣却행위의 전초적 사고로서 일시적 操業중단시持場의 處分形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5-15>.

지금까지의 慣行에 의하면 漁業에 계속 종사할 의향을 가진 漁家가

表 5-15 一時(一年)操業中斷時 持場의 讓渡形態

	계	유료임대	친척, 친지 등에게 빌려줌	어촌계(또는 어촌 공동체)에 귀속
빈도 %	195 100.0	28 14.4	33 16.9	134 68.7
어가평균 소득(천원)	5,489	5,871	5,559	5,392

당년에 한해서 養殖을 못할 경우 자신의 持分을 漁村契에 归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크게 變質되고 있다. 즉, 持場의 有料賃貸를 허용하고 있는 漁村契는 28個로서 14.4%에 이르며 친척, 친지 등에게 貸與를 허용하는 漁村契는 33個인 16.9%를 점하고 있다. 後者에 있어서도 그 貸價로 現金이나 現物 授受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31.3%에 이르는 漁村契가 持場에 대한 私的 所有權化인식 하에 賃貸行爲를 許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持場의 有料賃貸를 인정하는 漁村契의 平均漁家所得은 5,871 千원으로서 漁村契에 归屬시키는 경우의 5,392千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持場을 私的 所有로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漁家 및 漁場指標를 비교하면 前者が 漁家數, 養殖漁業 參與率 및 規模, 漁場規模 등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海苔養殖漁業에 참여하는 漁家の 平均比率은 持場의 有料賃貸 또는 親知들에 대한 貸與를 허용하는 漁村契의 경우 각각 81.5%, 84.0%로 나타난 반면, 持場을 漁村契에 归屬시키는 경우 69.4%에 불과하였다. 또한 施設規模에 있어서도 前자의 두 경우가 상당히 앞서 있다 (表 5-16). 이와 같은 현상은 미역養殖漁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持場의 讓渡를 인정하는 두 경우에 있어서 漁家の 養殖參與率은 각각 72.7%, 64.4%로 나타난 반면, 持場을 归屬시키는 경우의 參與率은 48.4%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施設規模에 있어서도 前자의 두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表 5-17).

表 5-16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해태양식)

單位 : 戶, %

규모 양도형태	어가 (A)	해태양식 어가 (B)						B/A
		계	100책 이상	100~ 50	50~ 20	20~ 10	10책 미만	
유료로 임대함	90.8	74.0 (100.0)	0.6 (0.8)	6.3 (8.5)	24.3 (32.8)	18.0 (24.3)	24.8 (33.5)	81.5
친척, 친지들에게 빌려줌	95.9	80.6 (100.0)	- (-)	- (-)	22.2 (27.5)	27.0 (33.5)	31.3 (38.8)	84.0
어촌계(또는 부락 공동체)에 귀속시킴	83.1	57.7 (100.0)	- (-)	0.2 (0.3)	12.0 (20.8)	15.5 (26.9)	30.0 (52.0)	69.4

* 漁村契 平均임.

表 5-17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미역양식)

單位 : 戶, %

규모 양도형태	어가 (A)	미역양식 어가 (B)						B/A
		계	100대 이상	100~ 50	50~ 20	20~ 10	10대 미만	
유료로 임대함	90.8	66.0 (100.0)	4.9 (7.4)	15.3 (23.2)	31.8 (48.2)	13.3 (20.2)	0.7 (1.1)	72.7
친척, 친지들에게 빌려줌	95.9	61.8 (100.0)	2.9 (4.7)	4.0 (6.5)	32.1 (51.9)	18.7 (30.3)	4.1 (6.6)	64.4
어촌계(또는 부락 공동체)에 귀속시킴	83.1	40.2 (100.0)	- (-)	1.8 (4.5)	17.0 (42.3)	10.9 (27.1)	10.5 (26.1)	48.4

* 漁村契 平均임.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漁場規模 및 構成을 보면, 有料賃貸 및 親知들에게 貸與하는 漁村契의 平均漁場規模는 각각 130.0 ha, 144.8 ha로서 部落에 歸屬시키는 경우의 90.9 ha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漁

場의 構成에 있어서 有料賃貸를 허용하는 漁村契의 養殖漁場規模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表 5-18>.

以上의 사실을 통해 단서적이긴 하지만 持場의 私占化 傾向과 漁村·漁家의 經濟的 誘因間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賃貸行爲의 進展은 이들 漁村契가 海苔나 미역값의 변동 즉, 對象生産物이 漁家經濟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比重의 변화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그 處分權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옮아갈 가능성의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總有漁場의 私的 處分權에 관한 인정여부는 漁村契定款과는 별도로 漁村契의 實體인 漁村共同體의 村規에 成文化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외에도 이들 規約에는 漁村契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入會와 入漁의 통제와 방법, 生產物의 分配와 費用의 分擔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慣行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規約은 당해 漁村契가 보유하고 있는 總有漁場內의 漁業形態와 地域的 특성, 構成員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다르며, 또한 일정한 形式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規約은 특히 總有漁場의 利用과 관련하여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으며, 그외의 社會的 제관

表 5-18 持場의 讓渡形態에 따른 漁場規模*

단위 : ha, %

처분형태 어장구분	총 유 어 장					어업권 %
	계	양식	1종	3종	정치	
유료로 임대함	130.0 (100.0)	82.2 (63.2)	35.9 (27.6)	11.9 (9.2)	- (-)	6.4
친척, 친지들에게 빌려줌	144.8 (100.0)	74.5 (51.5)	29.8 (20.6)	40.5 (28.0)	- (-)	6.6
어촌계(또는 부락) 공동체)에 귀속시킴	90.9 (100.0)	57.4 (63.1)	21.2 (23.3)	11.9 (13.1)	0.4 (0.4)	4.5

* 어촌계 평균임.

계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村規를 통해 總有漁場의 利用實態와 그類型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에 따른 네 가지 類型의 사례를 통해 總有漁場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漁村의 共同體的 屬性이 典型的으로 溫存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古今面 S 漁村契의 規約中 漁場利用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古今面 S漁村契 規約

(中略)

第 5 條 : 海苔養殖漁業(支柱式)은 戶當 8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新規는 4柵으로 하고 3년이 경과하면 6柵, 또 2년이 경과하면 기본 8柵을 부여한다.

第 6 條 : 新規行使權은 本洞 거주자 家孫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長男의 경우에는 家屋을 갖춘 자에 한하여 新規者로 정한다.

第 7 條 : 次男의 경우는 夾室分家하여도 行使權을 취득할 수 있다.

第 8 條 : 漁業權의 배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漁村契員에 가입되어야 하며, 장소추첨 이전에 入戶料를 불입하여야 한다.

第 9 條 : 何人을 막론하고 자기場所를 他人에게 賣渡, 讓渡할 수 없다.

第 10 條 : 부득이 자기場所를 교체코자 하는 자는 추첨 이전에 신고하여 本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中略)

第 15 條 : 배정된 자기 柵數라도 임의로 移動設置할 수 없다(浮流式).

(中略)

第 25 條 : 本洞 漁村契員중 고의 또는 과실로 漁場秩序를 문란시키고 本規約에 따르지 아니 한 者는 本審查委員會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처분, 과태료부담, 기본취득어장의 減養, 漁業行使의 時限付停止, 漁業行使權의 剝奪 등에 처한다.

第 26 條 : 本洞에 거주한 건전한 漁村契員으로서 勞動力이 없고 생활이 극빈한 者, 家患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고 破產이 우려되는 者는 漁業行

使權의 存續과 保護를 받을 수 있다.

第第 27 條 : 配定된 建築権數를 賣却하였을 때는 사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漁業權을 剝奪한다.

(中略)

第 31 條 本規約은 서기 1982 年 月 日부터 施行하고, 本 規約을 성실히 준수키 위하여 漁村契員은 전원 서명 날인한다 (以下 省略).

이상의 S 漁村契는 漁村共同體를 비교적 완벽하게 흡수한例에 속하며, 共同體的 經營樣式도 원형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즉, 모든 構成員에 대해 施設権數를 從事年限別로 配定하고 있으며, 行使契約者는 契員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持場의 賣渡 및 讓渡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하게 漁業權을 行使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자신의 持場을 部落에 歸屬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漁場秩序를 문란케 하는 者에 대한 제재조치도 매우 強力하다. 또한 弱者에 대한 保護規定을 별도로 둠으로써 共同體的 紐帶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전반적인 共同體的 屬性의 유지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持場의 讓渡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事例와 區分되는 金日邑 D 漁村의 事例를 보기로 한다.

金日邑 D里 規約

(中略)

第 10 條 : 本洞出身이라도 長男이 分家하였을 시는 各種 行使權을 취득할 수 없다.

第 11 條 : 他地出身이 本洞에 거주하고 番地內 戶主일지라도 各 行使權을 취득할 수 없다.

第 12 條 : 次男의 行使權 加入金은 當時價 白米 (上品) 3 가마 代金으로 정한다.

第 13 條 : 本洞出身이 行使權을 가진 자로서 일차 他地에 移居하였다가 본마을에 轉入하였을 시는 各種 行使權을 취득할 수 없다.

第 14 條 : 本洞出身이라도 1人 2世帶를 둘 때 단 1世帶만 各種 行

使權을 준다.

第 15 條 : 마을住民으로서 行使權을 가진 자가 他地에 移居時 白米(上品) 1 가마를 사례금으로 마을에서 지불한다.

(中略)

第 32 條 : 미역養殖場 分配는 본마을 漁村契에서 分配한 지정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는 本 漁村契의 방침에 따라 買入, 増設할 수 있다.

第 33 條 : 마을 行使權者로서 부득이 미역발 行使를 못하게 되더라도 만약 미역발을 販賣할 경우에는 마을住民외의 他部落民에게는 절대 판매할 수 매할 수 없으며 他部落民에 판매할 시에는 즉시 行使權을 박탈한다.

(中略)

第 37 條 : 上記 水產法은 86 年 9 月 14 日부터 91 年 9 月 13 日까지 5 年으로 한다 (以下 省略).

總有漁場의 利用과 관련하여 他地의 轉入者는 물론 分家者의 行使權취득에도 일정한 제재를 두고 있어 매우 排他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역養殖場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買入에 의한 增設이 가능하다. 또한 他部落民에 대한 賣渡는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部落內에서의 持場의 賣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賣渡라는 표현은 有料賃貸로 해석함이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추첨에 의해 배당받은 미역養殖場에 대한 持分을 勞動力의 부족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權限을 타인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持分의 所有權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漁場의 共同占有者的 일원인 同一部落民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입증된다. 따라서 讓渡者는 익년 또는 그 후의 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事前的인 제한 없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앞의 두 事例에 비하여 持場의 私占化 傾向이 보다 진전된 경

우로서 古今面 D漁村契의 規約을 보기로 한다.

古今面 D漁村契 規約

(中 略)

第4條：本委員會 會員은 既得權을 득하여 海苔建溪을 行使중에 있는 者와 建溪능력이 없어 일시 취업중에 있는 권리자를 회원으로 한다.

第5條：漁業權이 있는 家垈를 買受한 者는 新規加入이 허용된다.

第6條：家垈를 買入치 않고 漁業權만을 買入하는 경우와 他部落民이 家垈를 買入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白米 2斗를 本管理委員會에 納入하여야 하며, 漁業權을 販賣한 者에 대한 관리위원회 負債에 대해서는 후임 漁業權 引受者的 책임상환을 原則으로 한다.

(中 略)

第27條：漁業權者로서 추첨을 받아 직접 자기 가정에서 生產하지 않고 형제, 친족, 타인에게 讓渡하는 時 讓渡 및 讓受 兩家는 2年間 공히行使權을 박탈당한다. 단, 추첨 후 만부득이한 불행한 가정의 事故로行使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장소를 本委員會에서 販賣하여 期待錢중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金額을 관리위원회에서 收入키로 한다.

(中 略)

第32條：위 規約을 1979年 12月 28日 本管理委員會 후반기 總會의 의결로 확정 선언하고, 서명 날인 한다 (以下 省略).

위의 規約에서 주목할 사항은 海苔養殖漁業權의 賣買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漁業權의 買入은 家垈의 買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同部落民이 漁業權만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白米 2斗의 저렴한 費用을 마을에 지불케 함으로써 能力있는 家口에 의한 多數 漁業權의 확보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施設規模의 차이에 따른 階層分化의 소지를 示唆하고 있다. 특히, 共同體의 구성원이 아닌 他部落民에 대해서도 漁業權의 買入을 허용함으로써 이미 共同體的 經營樣式은 상당히 變質된 상태이다.

반면에 漁業權의 讓渡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持分을 親族 또는 他人에게 양도하는 者는 兩者 모두 일정기간 行使權을 박탈한다는 점이다. 漁業權의 複數買入을 가능케 하고, 賣買에 비해 私的 處分權의 정도가 약한 讓渡는 규제한다는 점에서 貨貸收入을 노린 不適格者의 經營참여를 방지하고 能力있는 者로 하여금 漁場을 보다 效率적으로 利用케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金塘面 S里 事例는 앞의 세 경우에 비해 持場에 대한 財產權의 인식이 보다 진전된 곳으로서 共同體的 經營樣式은 이미 形骸化된例에 속한다.

金塘面 S里 規約

(中略)

第6條：추첨은 매년 建會議時 추첨기로 한다.

第7條：개인의 建築権數를 固定기로 결의한다 (財產化). 그 方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定한다 (심의위원 명단 省略).

第8條：(権數基準 및 等級) 1等級 30年 이상의 永住者. 2等級 20~29年 까지의 永住者로 하되 移住자는 次等級에 속한다. 3等級 10~19년까지의 永住者로 하되 移住자는 차등급에 속한다. 4等級 9년 이하의 永住者로 하되 移住자는 차등급에 속한다. 5等級 9년 이하의 移住者.

(中略)

第12條：漁村契員이 他地方으로 移居할 때는 移居 당시의 建築権數 일절을 家屋 買受人에게 賣渡할 수 있되 買受人은 즉시 당부락에 入戶하여야 한다.

第13條：당부락에 入戶와 동시에 組合에 加入된 者는 개인으로부터 建築地를 買受 및 讓渡받아 建築行使를 할 수 있다.

第14條：入戶 가입된 組合員이라도 3個月 이상 居住치 않는 者는 行使權을 부여할 수 없다 (分散賣渡시를 말함).

第 15 條 : 本漁村契員이 建築樞數 전부를 賣渡할 때 그 行使權者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中 略)

第 19 條 : 總會의 결의에 따라 入戶한 者는 養殖地를 買入하여 建築行使權을 行使할 수 있다 (첨부: 1980.1.1 定期總會 規約 決議사항).

第 20 條 : 入戶 및 組合에 加入되지 않은 者에게 建築樞數를 讓渡 및 賣渡했을 시는 販賣樞數 전부를 當漁村契에서 接受 한다.

(中 略)

以上 規約은 서기 1969 年 9 月 1 日부터 시효를 발휘한다. (以下 省略)

우선 눈에 띠는 사항은 財產化라고 못박고 있듯이 建築樞數의 固定화이다 (7 條). 財產化된 建築樞數는 거주 년수에 따라 次等의로 固定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部落에 거주하고 있는 한 樞數 上限線의 확대와 더불어 個別行使가 가능하며 (8 條), 매년 추첨을 통해 持場의 位置를 변경한다 (6 條). 또한 持場의 賣渡와 讓渡가 모두 가능하며 (12 條, 13 條), 買受 및 譲受者는 同부락의 漁村契員 또는 入戶者로 규정되어 있다 (20 條). 그러나 이때 入戶者的 자격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며 (19 條), 3 個月 以上 本洞에 거주하는 入戶 加入된 組合員에 한하여 行使權을 부여한다고 (14 條) 함으로써 他部落民의 買受 또는 貸借를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S部落은 總有漁場의 전형적인 屬性인 私的 處分權의 不認定을 전면 否定하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즉, 個別化의 진전에 따라 이미 持場의 私占化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特性인 總有漁場의 排他的 利用 마저도 타부락민의 入戶를 허용함으로써 變質시키고 있는 것이다. S部落이 속해 있는 金塘面은 후술하듯이 莺島 管內에서 도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變質度가 가장 크게 진전되고 있는 곳이다. 즉, 金塘面을 구성하고 있는 10 個 漁村契중 8 個가 輕重의 차이는 있지만 持場의 私占化에 따른 變質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金塘面에 있어서 持場의 財產權化가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海苔

의 質이 우수하고 生產量 또한 많아 住民의 관심도도 그 만큼 높은 데에 기인한다. 즉, 고조된 주민의 이해 관계를 수용하고 經濟的誘因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持場에 대한 財產化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海苔生產現況을 代案의 으로 살펴 보면 1987 年말 현재 金塘面의 海苔綜合處理場의 1 日 生產能力은 16,000 束으로 管內 전체 1 日 生產能力 98,660 束의 16.2%에 해당한다. 이를 漁村契單位로 환산하면 金塘面에 속한 漁村契의 1 日 生產能力은 平均 1,600 束으로 莞島郡 전체 漁村契의 平均值인 498 束의 3.2 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漁村·漁家經濟의 誘因과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間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 脈絡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에서 각 漁村의 總有漁場에 대한 실제적 利用指針을 규정하고 있는 規約을 통해 類型別로 持場利用의 양태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유형이라 함은 共同體的 經營樣式을 溫存시키고 있는 漁村, 비교적 共同體的 성격은 강하나 경우에 따른 持場의 讓渡를 허용하는 漁村, 持場의 賣買 및 일부 讓渡를 허용함으로써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漁村, 그리고 持場의 賣買 및 賃貸는 물론 櫃數의 固定化를 통해 持場을 완전히 財產權으로 인식하고 있는 漁村 등을 일컫는다. 그런데 漁村契의 이러한 運營內規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契가 처해있는 社會經濟的 與件에 맞지 않을 때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改定될 수 있는 것이 漁村契 運營規約의 특성이다. 이는 곧 時代狀況의 변화 및 이에 대한 각 地域의 反映度에 따라 漁場의 利用·管理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漁場의 自然的 條件과 持場의 私占化

다음은 持場의 財產權의 인식의 진전도와 漁場의 自然環境的 位置間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양자의 관련성 유무를 통해同一品目에 있어서 지역간의 서로 상이한 漁場環境이 과연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을 촉진시키는 外延的 役割을 담당할 가능성의 있는지 類推해 볼

수 있다 <表 5-19>.

項目間에 다소 輕重의 차이는 있지만 個人 持場의 私占化 경향과 관련된 3개 항목중 1個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漁村契는 77個로서 전체의 39.5%를 점하고 있다. 관련항목에 대한 이들 漁村契의 邑·面別 분포를 보면 금당, 금일, 약산, 완도, 신지, 고금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산, 소안, 노화(보길)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前者の 지역들은 總有漁場의 利用과 관련하여 個別化의 진전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볼 수 있으며, 後者の 지역들은 여전히 共同體的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완도·군외를 제외하고 각각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이들 邑·面의 위치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각 地域이 위치한 灣別 특성을 볼 때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육지에 근접한 內灣性 海岸에 위치한 반면, 個別化의 진전도가 느린 지역들은 南端의 外灣性 海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일 地域內에서도 漁村契의 灣別 위치에 따라 個別化의 양상에

表 5-19 持場의 私占化 項目에 따른 漁村契 分布

단위: 個 (어촌계), %

구분 읍·면	어촌계수	지장고정	지장유료매각	지장임대	하나이상허용
완 도	15(100.0)	1(6.7)	4(26.7)	6(40.0)	7(46.7)
신 지	19(100.0)	1(5.3)	4(21.1)	5(26.3)	8(42.1)
고 금	25(100.0)	3(12.0)	3(12.0)	3(12.0)	9(36.0)
약 산	21(100.0)	10(47.6)	2(9.5)	10(47.6)	13(61.9)
금 일	25(100.0)	1(4.0)	1(4.0)	18(72.0)	18(72.0)
금 당	10(100.0)	4(40.0)	6(60.0)	8(80.0)	8(80.0)
청 산	17(100.0)	1(5.9)	-	-	1(5.9)
소 안*	14(100.0)	-	-	3(21.4)	3(21.4)
노 화	25(100.0)	1(4.0)	-	3(12.0)	4(16.0)
군 외	24(100.0)	-	6(25.0)	5(20.8)	6(25.0)
계	195(100.0)	22(11.3)	26(13.3)	61(31.3)	77(39.5)

* 보길면 포함.

는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노화의 경우 섬의 전체적인 위치는 外灣性 이지만 그 중에서도 內灣性 浦岸을 끼고 있는 이목, 내리, 방축漁村契의 個別化가 지역내의 나머지 漁村契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立證한다.

灣의 성격으로 볼 때 外灣性 海岸은 대체로 수심이 깊고 조수의 流速이 빨라 투하자본의 소요가 크다. 반면에 內灣性 海岸은 장기적으로 海藻類의 생육에는 불리하나 技術的 條件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조류 양식이 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해조류양식기반이 유리한 곳일수록 개별화의 진전도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는 일단 自然的으로 所與된 漁場環境에 따라 漁場의 利用과 관련된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변화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漁家의 變動要因과 持場의 私占化

이상에서 살펴본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變質은 漁村의 漁家構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漁家數의 變動類型에 따른 漁村·漁家の 經濟狀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總有漁場에 대한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變質度는 漁村·漁家の 經濟的 誘因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漁村·漁家の 經濟의 誘因과 漁家의 變動樣態間의 관련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共同體의 經營樣式의 變質과 漁家의 變動間의 關係를 類推해 볼 수 있다.

莞島管內의 195個 漁村契中 漁家數가 1980年 이후 매년 減少해 오고 있는 곳은 123個로서 63.1%를 차지하고 있다. 수년간 漁家數의 변동이 거의 없는 漁村契는 49個로서 25.1%에 이른다. 반면에 오히려 漁家數가 증가하는 漁村契는 23個로서 11.8%를 점하고 있다(表 5-20). 이 때 漁家數의 增加는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流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分家나 地域緣故를 갖는 일부 家口의 再流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漁家變動 類型에 따른 戶當 平均所得을 보면 漁家增加型이 6,071千원으로서 停滯型의 5,612千원, 減少型의 5,331千원에 비해 높은 수준에

表 5-20 漁家數의 變動類型

	계	어가수가 매년 증가함	어가수의 변동이 없음	어가수가 매년 감소함
빈도 %	195 100.0	23 11.8	49 25.1	123 63.1
어가평균소득 (천원)	5,489	6,071	5,612	5,331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漁村의 人口吸引力과 經濟的 誘因 간의 相關性을 시사하는 것이다.

漁家變動 類型과 經濟的 誘因間의 관관성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海苔養殖漁業에 있어서 漁家增加型 漁村契의 평균 漁家戶數는 減少型에 비해 約 30 戶 많으며, 養殖參與率에 있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다. 또한 施設規模에 있어서 增加型 漁村契의 漁家는 20 桩 이상의 中·大規模에 많이 分布하고 있으나 그 밖의 予유형에서는 10 桩 미만의 零細규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表 5-21)。

이러한 현상은 미역養殖漁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海苔養殖參與率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漁家增加型 漁村契의 미역養殖參與率은 68.2 %로서 나머지 유형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施設規模別 漁家分布에 있어서도 增加型 漁村契는 20臺이상의 中·大규모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 밖의 유형, 특히 減少型 漁村契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表 5-22)。

漁家變動 類型別 평균 漁場規模 및 構成을 보면 增加型의 總有漁場規模는 197.4 ha로서 停滯型의 104.7 ha, 減少型의 88.6 ha에 비하면 매우 큰 수준이다. 특히, 漁場構成에 있어서 前者의 養殖漁場構成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漁業權 保有件數에 있어서도 增加型은 漁村契當 8.6 件으로서 停滯型의 5.8 件 보다 많으며 특히, 減少型 漁村契의 그것에 비해 2 배에 이른다(表 5-23)。

漁家の 經營形態도 각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漁家數增加型 漁

表 5-21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 (해태양식)

단위 : 戶, %

규모 유형	어가 (A)	해 태 양 식 어 가 (B)						B/A
		계	100 채 이 상	100 ~ 50	50 ~ 20	20 ~ 10	10 채 미 만	
어가수가 매년증가함	105.9 (100.0)	92.0 (0.3)	0.3 (0.3)	1.6 (1.7)	40.3 (43.8)	27.4 (29.8)	22.4 (24.3)	86.9
어가수의 변동이 없음	105.1 (100.0)	71.8 (0.3)	0.2 (0.3)	2.8 (3.9)	20.3 (28.3)	10.2 (14.2)	38.3 (53.3)	68.3
어가수가 매년감소함	75.4 (100.0)	55.4 -	-	0.2 (0.4)	8.9 (16.0)	19.1 (34.5)	27.2 (49.1)	73.5

* 漁村契 平均임.

表 5-22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施設規模別 漁家分布 * (미역양식)

단위 : 戶, %

규모 유형	어가 (A)	미 역 양 식 어 가 (B)						B/A
		계	100대 이 상	100 ~ 50	50 ~ 20	20 ~ 10	10 대 미 만	
어가수가 매 년 증가함	105.9 (100.0)	72.2 (3.6)	2.6 (3.6)	14.9 (20.6)	42.8 (59.3)	11.5 (15.9)	0.4 (0.6)	68.2
어가수의 변 동이 없음	105.1 (100.0)	56.5 (4.6)	2.6 (4.6)	4.5 (8.0)	32.5 (57.5)	13.0 (23.0)	3.9 (6.9)	53.8
어가수가 매 년 감소함	75.4 (100.0)	39.6 (1.0)	0.4 (1.0)	1.9 (4.8)	13.6 (34.3)	12.6 (31.8)	11.1 (28.0)	52.5

* 어촌계 평균임.

村契의 평균적인 兼業漁家比率은 81.4 %로서 停滯型의 94.3 %나 減少型의 91.0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그만큼 漁業에 대한 專業度가前者에 있어서 더 높다는 의미이다. 兼業漁家の 耕地保有유무 및 그 性

表 5-23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漁場規模 및 構成 *

단위, ha, %.

유형 구분	총 유 어 장					어업권 (件)
	계	양식	1종	3종	정치	
어가수가 매년 증가함	197.4 (100.0)	137.3 (69.6)	33.4 (16.9)	26.8 (13.6)	- (-)	8.6
어가수의 변동이 없음	104.7 (100.0)	60.3 (57.6)	26.8 (25.6)	17.6 (16.8)	- (-)	5.8
어가수가 매년 감소함	88.6 (100.0)	51.3 (57.9)	22.3 (25.2)	14.5 (16.4)	0.4 (0.5)	4.3

* 어촌계 평균임.

格으로 볼 때 增加型 漁村契의 兼業漁家는 無耕地 漁家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耕地規模에 있어서도 零細한 수준에 있다(表 5-24)。

이상의 사실을 통해 漁村內의 漁家變動은 漁村·漁家經濟 狀況, 漁業의 성격의 強度 등과 상호 관련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도 이와 같은 經濟的 誘因과 相關의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漁家의 變動類型 역시 持場의 利用樣態와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前提下에 漁家의 變動類型에 따른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5-25)。

漁家增加型 漁村契중 다소 輕重의 차이는 있지만 持場의 私占化的 認識과 관련된 1個 이상의 項目을 허용하고 있는 漁村契는 17個로서 73.9%에 해당한다. 반면에 停滯型과 減少型 漁村契에 있어서 각각 40.8%, 32.5%가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度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는 漁家戶數가 增加하는 漁村이 그 밖의 漁村에 비해 總有漁場의 개인持分에 대한 財產權의 인식이 비교적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漁家の 增加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주로 分家形態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持場에 대한 私占化 인식이 일 단은 이들 漁村에 있어서의 移村可能性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表 5-24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漁家構成 *

단위 : 戶, %

구분 유형	어가 (A)	겸업 어가 (B)						B/A	
		계	경지 규모				기타		
			소계	1 ha 이상	1 ~ 0.5 ha	0.5 ha 미만			
어가수가 매년 증가함	105.9	86.2 (100.0)	76.1 (88.3)	4.6 (5.4)	11.7 (13.6)	59.7 (69.3)	10.1 (11.7)	81.4	
어가수의 변동이 없음	105.1	99.1 (100.0)	94.3 (95.2)	3.1 (3.1)	19.6 (19.8)	71.6 (72.3)	4.8 (4.8)	94.3	
어가수가 매년 감소함	75.4	68.6 (100.0)	67.0 (97.6)	4.6 (6.7)	21.1 (30.8)	41.2 (60.1)	1.6 (2.4)	91.0	

* 어촌계 평균임.

表 5-25 漁家變動類型에 따른 持場의 私占化

	계	어가수가 매년증가함	어가수의 변동이 없음	어가수가 매년 감소함
유형별 어촌계 (A)	195	23	49	123
사점화 항목 * (B)	77	17	20	40
B/A %	39.5	73.9	40.8	32.5

* 지장의 사점화경 향과 관련된 항목중 1 항목이상을 허용하고 있는 어촌계를 말함.

漁村家口數의 減少가 일반적인 現象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내부발생적인 것이기는 하나 漁家の 增加現象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漁家の 變動과 그 裏面에 내재하고 있는 漁場利用樣態의 變化간의 관련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은 初期的 段階로서 持場의 利用樣態와 漁家の 變動간의 관련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持場에 대한 私的 處分權의 強化는 持場의 流動化를 提高시킴으로써 階層分化를 초래한 가능성성이 높다. 이 경우 上層으로의 移動에서 탈락한 漁家가 排出됨으로써 漁村

의 漁家數는 불가피하게 減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以上에서 海藻類養殖漁村에서 漁村共同體의 존립기반인 공동양식어장의 이용실태를 漁場持分의 固定化여부 및 讓渡형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共同體經營樣式의 变질과 漁家·漁村經濟의 潛在力간의 상관성, 그리고 自然的으로 所與된 어장환경이 總有漁場의 利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共同養殖漁業權을 포함한 共同漁業權은 다수 地先漁民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일종의 社會保障의 기능의 管理型漁業이다. 따라서 그 漁場은 漁村契 總有로서 漁村契(또는 漁村共同體)는 漁業權의 享有 및 管理기능을 수행한다. 때문에 共同養殖漁場은 다음과 같은 屬性을 갖는다. 즉, 漁場의 일부가 각 구성원에게 持分으로 분할되나 영구적으로 固定되지 않은 채 平等原理에 입각하여 매년 추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移替된다. 또한 구성원의 持分에 대해 賣渡 또는 賃貸 등의 私的 處分權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共同養殖漁場의 이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완도地域의 事例에 의하면 共同養殖漁場持分의 永久地化, 持分의 賣渡 및 賃貸 등 개인 持場에 대한 財產權化 현상이 상당한 정도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持場을 有料로 賣却하거나 賃貸하는 경우에 있어서 漁業의 성격의 強度 및 漁家の 經濟的 誘因 등과 總有漁場의 財產權의 인식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對象海藻類의 價格변동 및 이에 따른 漁家經濟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비중의 변화여하에 따라 漁場의 私占化와 小作地化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外灣性 漁場이 개발됨으로써 이전 까지 共同體的 經營樣式을 유지해 왔던 漁村에 대해서도 과급될 수 있다.

4. 漁場紛糾의 類型 및 事例

가. 個人과 漁村共同體間의 漁場 紛糾

漁村共同體 存立의 가장 중요한 經濟的 基盤은 漁村에 의해 總有되는 漁場이다. 우리 나라의 漁業經濟는 構造的 취 약성으로 인해 漁民의 상당 수가 독자적인 再生產을 영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總有漁場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漁業權漁業에 대한 地先漁民의 依存度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既存漁場의 合理的 利用 뿐만 아니라 새로운 漁場의 擴張·開發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漁場은 耕地와는 달리 일체 不可分의 水界를 실체로 하고 있으며, 이 水界를 매개로 하여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位置와 面積에 의해 漁場을 區劃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漁場과 이웃 漁場은 상호 不可分의 일체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自然要素로서의 漁場을 구획하는 것은 어렵다(朴光淳, 1981, p. 40). 漁村契(또는 漁村契共同體) 단위로 慣行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區劃되어 있는 漁場은 이러한 점에서 끊임없이 이웃 漁場과 紛爭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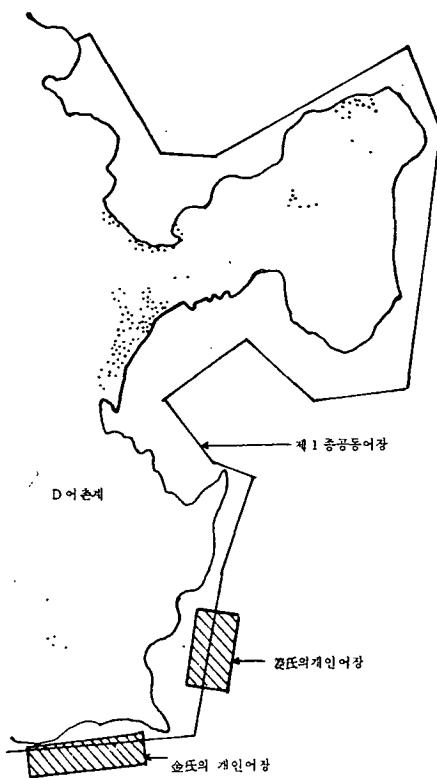
漁場의 紛糾類型은 個人漁業權者와 漁村契(漁村共同體) 간, 그리고 漁村契(漁村共同體) 간의 紛爭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漁村契와 個人漁業權者간의 漁場紛爭은 1981년의 水產業法 改定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漁業權漁業에 대한 계속면허의 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共同漁場內에 위치한 漁業權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地域住民의 共同利益을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漁村契에 우선적으로 免許하도록 한 것이다(水產業法 第 27 條 4 項).

紛爭의 발단이 된 第 1 種共同漁場內의 個人漁業權 免許의 法의 근거는 “漁業權行使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共同漁業의 漁場地域 내에서 養殖 및 定置漁業을 별도로 免許할 수 있다”는 規定(水產業法

施行令 第 12 條 2 項, 1976 年)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運營能力이 부족한 漁村契를 대신하여 資金이나 技術 등에서 앞선 個人에게도 免許를 취득케 함으로써 水面의 效率的 利用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漁村契의 事業擴張과 이에 따른 資本形成 및 技術習得 등에 의해 위의 입법취지는 制定 당시에 비해 그妥當性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漁·貝類에 비해 資本所要가 적으며 技術移轉이 용이한 海藻類養殖漁業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生產基盤을 잃을 위기에 처한 個人漁業權者와 마을 앞의 地先漁場은 部落民에 의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漁村契간의 利害對立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 實例를 薪知面 D漁村契 事例를 통해 보기로 한다 <圖 5-1>.

圖 5-1 D漁村契와 個人漁業權者 金氏間의 漁場紛糾事例



그림에서 빛금친 부분으로 표시된 두 개의 個人漁場 중 하단에 위치한 것이 현재 紛糾중인 漁場으로서 他地人인 個人漁業權者 金氏가 1970年 12月 免許취득 후 專用해 온 10.5 ha 규모의 미역養殖漁場이다. 이 漁場은 D部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第1種共同漁場과 중복 면허되어 있다. 면허취득 이후 15년이후 專用해온 이 漁場을 둘러싸고 免許期間이 만료될 때 까지 地先漁場을 돌려 받으려는 D漁村契와 金氏간의 行政粉糾는 계속되어 왔다. 일단 '85年 12月에 免許期間이 만료되자 水產業法 29條의 입법취지에 따라 競合申請에 의해 同漁場은 '86年 9月 D漁村契에 免許처분됨으로써 紛糾는 일단락 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金氏가 水產廳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여기에서 勝訴함에 따라 D漁村契의 免許는 취소되었으며 '87年 1月에 個人免許로 재차 환원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 D漁村契가 同漁場의 반환을 요구하며 道知事 면담 및 集團行動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87年末 현재 10次 公判에 까지 이른 行政訴訟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郡에서는 法院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事例에서 알 수 있듯이 個人 漁業權者와 漁村契간의 漁場紛爭은 자못 심각한 상태이다. 더우기 水產業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 漁村共同體間의 漁場紛糾

한편 漁村契(漁村共同體) 간의 경계선을 둘러싼 漁場紛爭은 그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地先漁民의 漁場需要가 증가함에 따라 항시 再燃의 소지를 안고 있다. 漁場粉糾의 防止를 위해 法規는 漁業權 취득후 해당 漁場에 대하여 境界標識을 하도록 규정(水產業法施行令 第61條)하고 있다. 그러나 標識設置에는 費用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치후 폭풍 등에 의한 流失의 가능성이 높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漁村(특히 西南海岸 地域)에서는 傳來의 慣行에 의해 部落間

의 操業水界를 區劃하여 왔다.

漁村共同體의 封鎖的 排他性은 구성원간의 강한 紐帶를 수반한다. 他部落과의 漁場紛爭時 共同體的 紐帶意識은 분쟁의 양상을 심각하게 전개시킬 소지를 갖는다. 예컨대 兩 紛爭마을이 同一氏族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일단 紛爭이 발생하면 血緣의 관계를 버리고 部落民의 일원으로서 血戰을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인다(崔在律, 1969, p.154). 따라서 漁場紛爭은 生產의 效率의 운영이라는 측면외에 社會的인 隊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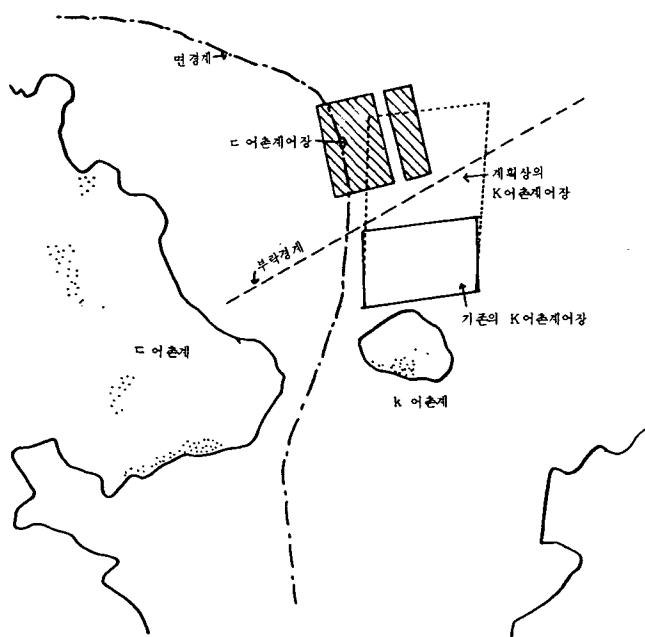
漁村契간 漁場紛爭事例를 莞島의 例를 통해 보면, 1988年 8月 현재 郡에 접수된 紛糾調整申請 件數는 10件이며, 여기에 관련된 漁村契는 18個에 이른다. 이들 紛糾는 地先의 침범 등과 관련하여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公權力에 호소한 경우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漁場紛爭을 잠정해결한 漁村契까지 고려하면 紛爭事件數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漁村契간 紛爭의 類型은 漁場擴張과 관련하여 面境界를 둘러싼 紛爭과 동일 邑·面內에서 地先침범에 따른 분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面境界와 관련된 漁場紛爭事例를 所安面 K漁村契와 蘆花邑 仁漁村契의 경우를 통해 보기로 한다. <圖 5-2>

紛糾의 發端은 K漁村契에서 郡의 '88年度 漁場利用 開發計劃에 따라 기존 漁場(실선부분)에 덧붙여 추가적인 漁場(점선부분)을 승인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87년부터 面境界를 무시하고 地先緣故에 의한 漁場(빗금침부분)에서 조업중이던 仁漁村契가 武力を 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部落家口數가 35戶에 불과한 K漁村契는 面境界를 기준으로 所安面 地先을 주장하는 반면, 家口數가 197戶인 仁漁村契는 면경계와 관계없이 部落의 戶數에 비례한 持分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事例는 부락간의 憤行에 의해 區劃된 漁場을 보유하고 있는 部落이 後에 刪定된 面境界에 의해 더 이상 漁場의 외연적 확대가 곤란할 경우 菲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면경계를 우선시 한다면 仁漁村契의 漁場은 不法的인 것이 된다. 반면

圖 5 - 2 □漁村契와 K漁村契間의 漁場紛糾事例



에 그동안 部落間에 慣行的으로 구분되어 왔던 漁場境界를 존중한다면 K 漁村契의 어장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漁場은 海苔養殖地로서 兩 部落 모두 海苔養殖漁業依存度가 매우 높아 兩面의 어장정리추진위원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紛爭의 해결전망은 불투명하다. 法에 의한 일시적 해결이 가능할 지라도 漁場與件 및 漁村地域의 經濟社會的 與件 變化에 의한 紛爭의 재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동일 邑·面에 위치한 部落간의 漁場紛爭으로서 古今面의 C漁村契와 ㄱ漁村契간의 事例를 보기로 한다. <圖 5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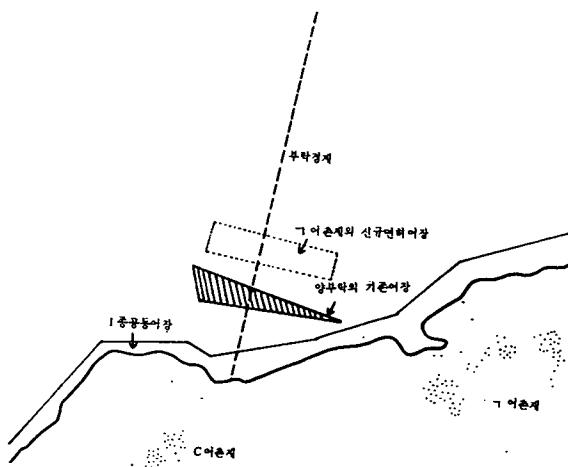
人的構成과 經濟力에서 劣勢에 있는 C漁村契는 ㄱ漁村契와 합동으로 海苔養殖漁場(빗금친 부분) 11.2 ha를 免許받아 部落간의 地先을 경계로 분할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勢力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ㄱ漁村契가 경계를 침범하여 同漁場에 建築함에 따라 잣은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러던중 ㄱ漁村契에서 海苔浮流式 養殖漁場(점선부분) 15 ha를 신규로 免許취득하면서 兩部落간의 漁場紛爭은 實力行使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즉, ㄱ

漁村契의 新漁場은 부락간의 境界線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漁場의 位
置도 기존漁場과 5 ~ 60 m 상의 거리에 있어 C漁村契 建築地의 조류소
통을 둔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漁村契 역시 漁業從事人口가 많아 이전의 漁場規模로는 密
殖이 불가피하여 生產性이 저하되기에 이르렀으며, 신규免許漁場의의 遷
地開發도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慣行地先을 경계로 兩部落이 분할이용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그漁村契에서 既存漁場도 이와 유사한 경우
였다는 점을 내세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類型의
紛爭은 慣行的으로 지켜온 漁場境界線일 지라도 부락간의 人的構成이
나 經濟力의 차이에 따라 可變的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흔한 事例중의
하나이다.

以上에서 漁場紛糾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각각의 事例를 통해 살펴보았
다. 漁場紛糾는 그 발생원인에서 보았듯이 漁場의 不可分의 속성과 部落
間 規模의 차이, 制度와 慣行의 不一致, 共同體 存立의 가장 중요한 物質
的 基盤이 漁場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항상 再燃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
다. 더욱이 紛糾의 양상 또한 武力行使가 일반적이므로 地域的으로도 커
다란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圖 5 - 3 C漁村契와 그漁村契間의 漁場紛糾事例



第 6 章

要約 및 結論

本研究에서 다루어진 沿岸漁場이란 다수 零細漁民의 保護라는 관점에서 排他·獨占的 利用의 필요성을 특징으로 하는 漁場을 말한다. 이는 곧 漁場形態別로 볼 때 漁業權漁業의 操業水界를 일컫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수의 地先漁民이 과거부터 자기의 田·畠처럼 日常 이용하여 왔고, 共同占有·共同利用·共同管理해 온 漁場이라고 할 수 있다. 漁業權漁業이란 免許에 의해 權利를 인정받는 漁業으로서 養殖, 定置, 第1, 2, 3種共同漁業 등이 있다. 이 중 養殖漁業은 전체 漁業經營者家口의 約 41%가 참여하는 沿岸漁業의 대표적인 漁業形態이다. 또한 共同漁業은 地先漁民에 대한 社會保障의 機能의 管理型漁業으로서 특이한 制度와 内容을 가지고 展開되어 왔다.

因子分析結果에 의해 沿岸漁村을 漁場利用의 特性과 관련하여 크게 5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1) 海藻類養殖漁業發達度, 2) 貝類 및 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 3) 捕貝採藻型 共同漁業發達度, 4) 沿近海漁船漁業發達度, 5) 小型漁船漁業發達度. 이들 特성을 종합하여 그反映度로서 地域을 구분하면 8個로 類型化할 수 있다: 1) 西南海域에 집중분포된 海藻類養殖發達度, 2) 西海 및 西南海域에 넓게 분포된 漁船漁業未發達型 3) 濟州中心의 第1種共同漁業依存型, 4), 5) 東南海域中心의 貝類 및 沿近海漁船漁業發達型, 6) 東海域 일부의 定置網中心型 漁船漁業發

達型。7) 東南海域 일부 및 東海域中心의 沿近海漁船漁業發達型, 8) 西南海域을 제외한 비교적 고른 分布의 漁船漁業發達型。

沿岸漁場의 利用과 관련된 최초의 法制는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漁業法에 기원을 둔다. 그 후 1953年の 水產業法制定 이후 12 차례의 改正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法制는 변화된 漁村社會構造, 漁業生產構造를 수용하지 못해 漁業階層間, 漁業間, 地域間의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주로 水產法制와 慣行의 不一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를 漁場의 利用·管理와 관련하여 유형별로 보면, 法律上擬制로서 經濟圈 單位로 정비된 漁村契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漁村共同體간의 不一致, 漁村契間, 構成員間 또는 人口漁業權者와 漁村契(또는 漁村共同體)間에 있어서 漁場利用의 摩擦 및 無秩序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또한 大單位化된 漁村契와 地區別水協間의 업무상 충복에 따른 組織의 弱化, 漁業調整機能의 不在化 등도 중요한 漁業紛糾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沿岸漁場에서 행해지는 漁業活動은同一 漁業資源에 대하여 利用競合度가 높고 漁業그룹間, 그룹內 구성원간의 協同調整機能이 취약하다는 이른바 “非協同的 内쉬(Nash)行爲”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내쉬漁業行爲로 인해 다음과 같은 否定的 外部效果가 발생한다: 1) 個別漁家の 生產函數와 費用函數의 相互關聯性으로 인해 한 漁家の 漁業強度는 他漁家の 生產·費用에 영향을 미친다. 2) 協同調整機能의 취약으로 인해 그룹間, 그룹內 구성원간의 漁場紛爭의 소지가 많다. 3) 資源利用의 偏倚性을 과생시킴으로써 漁場與件을 더욱 惡化시킨다.

漁場의 利用·管理實態를 파악하기 위해 漁場의 總有와 經營의 個別化를 生產構造의 특징으로 하는 海藻類養殖漁業 地域을 事例分析하였다. 結果에 따르면, 共同漁場의 利用·管理 主體는 民法上 權利能力 없이 慣行에 의한 入戶制度에 근거하는 漁村共同體라고 할 수 있다. 漁村契는 아직도 漁村共同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漁業權 享有·管理機能이나 漁場管理機能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總有漁場(共同養殖漁場)의 일반적 屬性인 漁場持分의 定期

移替制, 私的處分權의 不認定 등에도 불구하고 事例調查에 의하면 持分의 永久地化, 賣買 및 賃貸현상 등 財產權化 경향이 상당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漁業의 성격의 強度 및 漁家의 經濟的 誘因 등과 持分漁場의 私占化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對象生產物의 價格變動 및 이에 따른 漁家經濟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比重의 변화여하에 따라 共同體的 經營樣式의 變質可能性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以上의 分析結果에서 나타났듯이 오늘날 沿岸漁場의 利用・管理의 問題點은 實定法과 慎行間의 마찰로부터 비롯된 것들로서 구체적으로 漁村契와 構成 漁村共同體間의 不一致, 構成員間, 漁村契(漁村共同體)間, 또는 個人漁業權者와 漁村契(漁村共同體)間에 있어서 調整機能의 不在화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 복합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總有漁場에서 행해지는 漁業權漁業은 多數 地先漁民의 生存權 保障을 위한 일종의 管理型 漁業임을 고려할 때 漁場의 利用은 다수 漁民에 대해 平等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在村漁民에 의하여 門前玉砲과 같이 利用되어야 한다.

특히, 總有漁場에 대한 資源造成 및 管理가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漁村契의 機能이 강화되어야 하며, 漁村契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漁村共同體가 一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漁村契의 機能強化는 漁村契가 法律的 摘制로서의 總有漁場의 利用・管理主體라는 점에서 그 構成員間의 마찰뿐만 아니라 漁村契(漁村共同體)間 漁場紛爭의 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附 錄〉

附錄 :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1. 어촌계내 마을(어촌) 공동체수

어 촌 계 명 (A)	실제 마을공동체수 (B)	마을(어촌)명 (C)

예) A : 예송어촌계 , B : 2 , C : 예송리 , 예작리

2. 어촌공동체별 어가분석(1)

총 호 수	어 가 호 수 (D)			기타호수	비 고
	소 계	조합원	비조합원		
계					

* 어촌공동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계를 넣것 .

D : 입호제도에 의해 부락총유어장에서 어업(양식포함)을 하는 어가 .

3. 어촌공동체별 어가분석 (2)

어 가 호 수						
계	전 업	겸			업	
		소 계	농지 1헥타 이	농지 0.5헥타 이	농지 0.5헥타 미	기타 만
계						

4. 어촌공동체별 어가분석 (3 - 1)

김 양 식 어 가 호 수						
계	200 책 이	100 책 이	50 책 이	20 책 이	10 책 이	10 책 미
	상	상	상	상	상	만
계						

5. 어촌공동체별 어가분석 (3 - 2)

미 역 양 식 어 가 호 수					
계	100대이상	50대이상	20 대이상	10 대이상	10 대미만
계					

6. 어촌공동체별 공동(총유)재산 보유실태

	리사무소	공동창고	관리선 . (도선, 통학선포함)	전 , 담 (평)	산 림 (헥타)	사 당	기 타
계							

주) 어업권 및 선착장 물양장 등 수산관련 재산은 제외

7. 어장관리 운영실태분석

- 어촌계(부락)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주요방침 결정은 ?
 - (1) 수협법 규정에 의거 총대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 (2) 종래의 관행대로 부락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 (3) 수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어촌계보다는 종래의 관행에 의거 부락(어촌공동체) 단위로 개발위원회 및 총회를 구성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 ()

- 공동(양식어업권 포함) 어장관리 과정에서 얻어진 공동수익금은 ?
 - (1) 수협관계법령에 의거 부락운영 재원으로 활용치 않고 어촌계 수익으로 하여 어장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다. ()
 - (2) 종래의 관행에 의거 부락(공동체)수익으로 이관하여 부락(공동체)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
 - (3) 수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어촌계와는 무관하게 종래의 관행에 의거 부락공동체 단위로 전(2)항과 같은 요령으로 활용하고 있다. ()

8. 타지역 이사로 인하여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될시 지분 청구권은?

○ 해태양식업

- (1) 자기 지분(전통지)를 유료로 팔고 간다. ()
 (2) 어촌계 또는 부락(공동체)에 귀속시키고 그냥간다. ()

○ 미역양식업

- (1) 자기지분(양식시설지)를 유료로 팔고 간다. ()
 (2) 어촌계 또는 부락(공동체)에 귀속시키고 그냥간다. ()

9. 한해만 사정이 있어 어업을 못할 경우

- (1) 돈을 받고 빌려준다. ()
 (2)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려준다. ()
 (3) 어촌계 또는 부락(공동체)에 귀속시킨다. ()

10. 각호의 양식시설 위치는?

○ 해태양식

- (1) 전체가 영구지로 고정되어 있다. ()
 (2) 좋은곳 나쁜곳만 영구지로 고정하고 일부는 매년 추첨을 하여 교체한다. ()
 (3) 3년(혹은 5년)마다 추첨을 하여 교체한다. ()
 (4) 매년 전체를 추첨하여 교체한다. ()

○ 미역양식

- (1) 전체가 평등원리에 의거 영구지로 고정되어 있다. ()
 (2) 일정지역(선진어민)은 특정어가의 영구지로 고정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평등원리에 의거 영구지로 고정되어 있다.
 (3) 전체를 평등원리에 의거 3년내지 5년마다 제비를 뽑아 교체한다
 ()

11. 어촌(부락) 공동체 어가변동 추이

- (1) 어가수가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
- (2) 어가수가 과거수년간 변동이 없다. ()
- (3) 어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참고자료)

	어 가 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參 考 文 獻

- 金 昇, “水協指導事業의 役割과 今後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水產經營論輯」 韓國水產經營學會, 제 18 권 제 2 호, 1987.
- 朴光淳, “韓國漁業共同體의 成立와 存立樣態에 관한 調查研究,” 「經濟學研究」 韓國經濟學會, 제 19 집, 1967.
- _____, “韓國漁業共同體의 存立基盤 分析,” 「地域開發研究」, 제 14 집 全南大, 1979
- _____, 「韓國漁業經濟史 研究」, 裕豐出版社, 1984.
- 水友會, 「現代 韓國水產史」, 1987.
- _____, 「水產關係法令集」, 1985.
- 水產廳, 「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88.
- 楊世植, 「韓國水產業法(上)」, 第一文化社, 1987.
- 吳澤燮, 「社會科學데이터 分析法」, 나남出版社, 1985.
- 吳浩成, “漁業共同體의 共有資源管理에 대한 經濟的 研究,” 「農村經濟」 제 9 권 2 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6.
- 李東鎬, “主成分分析의 理論과 應用,” 「農大論文輯」, 제 13 집 全北大, 1982.
- 朱尤一, 玉永秀, 「共同漁場利用 合理化 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崔在律, “漁村의 社會構造와 漁民의 生活態度에 關한 研究,” 「全南大論文輯」 제 15 집 全南大, 1969.
- 岡本清造, 「水產經營學」 水產學全集 18, 恒星社厚生閣, 1966.
- 大塚久雄, 「共同體의 基礎理論」, 李榮薰譯 둘째개, 1982.
- 劉忠烈, “藻類養殖の 選擇性に関する研究” 「日韓合同 學術調查報告」 第

- 四輯，日韓漁村 社會・經濟共同研究會，1985.
- Corns, Richard and Todd Sandler, "On Commons and Tragedies," *The Amer. Econ. Rev.*, 1983.9.
- Dorfman, Robert, "The Technical Bases for Decision Making," in E.T. Haetele, ed., *The Government of Common Property Resourc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4.
- Gordon H. Scott, "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 the Fisher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54.4.
- Jae On Kim and Charles W. Mueller, *Factor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Pratical Issues* Sage Publications, Bererly Hills, London , 1981.

빈

면

研究報告 177
沿岸漁場의 利用·管理에 관한 基礎研究

1988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